

세계인권선언 70년

불온한 세상을 향해 인권을 외칩시다

12월 8일(토) 10시~18시
여의도 이룸센터

시간	교육실1	교육실2
오전10시	<p>[세션1] 알 권리는 무엇과 싸우나? 신상공개를 넘어선 알 권리 이야기</p> <p>사회 김조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p> <p>발제 알 권리와 인권 강성국(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p> <p>라운드테이블 조승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방혜린 (군인권센터)</p> <p>플로어 토론</p>	<p>[세션2] 가짜/진짜 프레임을 넘어서 대항적 말하기로 반차별 운동의 힘 찾기</p> <p>사회 박한희(희망을만드는법)</p> <p>발제 1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방안과 국가의 책무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p> <p>발제 2 가짜뉴스 대응 사례와 대항적 발화의 의미 2-1. 퀴어 퍼레이드 폭력 사태와 KBS심야토론 대응 중심으로 이종걸(무지개행동) 2-2. 난민 혐오 대응 운동을 중심으로 고은지(난민인권센터) 2-3. 피해자의 위치를 이탈하는 발달장애여성의 발화 운동 중심으로 이진희(장애여성공감)</p> <p>토론 소수자 혐오 대응과 국가의 역할 한필훈(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팀)</p>
12시~1시	점심시간	
오후1시	<p>[세션 3] “인권을 시험 쳐서 만나요?” 시험과 능력주의를 넘어 평등을 넓히자</p> <p>사회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p> <p>발제 인권을 바라다면 자격·능력을 증명하라고? 공현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꾼)</p> <p>토론 1 보편성과 차이 : 능력주의에 반대하는 페미니즘 장귀연 (불안정노동철폐연대)</p> <p>토론 2 능력주의를 넘어 평등세상을 만들자 - 장애운동이 차별에 맞서온 담론을 중심으로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p>	<p>[세션 4] 누가 인간인가, 누가 여성인가 주체의 언어가 배제의 언어가 되지 않기 위해</p> <p>사회 조한진희 (반다, 다른 몸들(준))</p> <p>발제 1 생물학적 여성? 코라로서의 여성의 몸! - 여성의 몸과 성차에 대한 개념적 숙고 이현재 (서울시립대학교)</p> <p>발제 2 교차성과 페미니즘의 실천 김보명 (여성학연구자)</p> <p>발제 3 평등의 언어를 버리기 위한 실천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p>
오후3시	<p>[세션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온 사람들의 인권</p> <p>사회 강근(인권저널)</p> <p>발제 1 탈북민이 생각하는 탈북민의 정체성과 한국 사회의 문제점 김윤희 (서울대학교)</p> <p>발제 2 탈북민 정책은 지금 왜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한가? 김화순(한신대 통일평화정책연구원)</p> <p>발제 3 북한출신주민,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가기 - 남북시민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실천의 재구성 이민영(고려사이버대학교)</p>	<p>[세션6] 섹슈얼리티는 어떻게 인권이 되는가</p> <p>사회 및 기초발제 섹슈얼리티 다양성은 정말 사회를 망칠까? 심기용 (섹슈얼리티활성화연구소)</p> <p>토론 1 성소수자운동에서 주체는 어떤 사람인가? 도균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의 모임 여행자)</p> <p>토론 2 인간 존엄으로서 바라본 성적 시민권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p> <p>토론 3 HIV감염인, 섹스를 말하다 소리 (한국청소년년감염인커뮤니티 '알')</p> <p>토론 4 청소년의 성적 권리와 인권 주리(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p>
오후5시	전체 참여자 공유 및 마무리 시간	

여는 글

세션 1 알권리는 무엇과 싸우나? 신상공개를 넘어선 알권리 이야기

발제 알 권리와 인권 06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라운드테이블

조승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방혜린 (군인권센터)

플로어 토론

세션 2 가짜/진짜 프레임을 넘어서 대항적 말하기로 반차별 운동의 힘 찾기

발제 1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방안과 국가의 책무 14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발제 2 가짜뉴스 대응 사례와 대항적 발화의 의미

2-1. 퀴어 퍼레이드 폭력 사태와 KBS심야토론 대응 중심으로 29

이종걸 (무지개행동)

2-2. 난민 혐오 대응 운동을 중심으로 35

고은지 (난민인권센터)

2-3. 피해자의 위치를 이탈하는 발달장애여성의 발화 운동 중심으로 41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토론 소수자 혐오 대응과 국가의 역할 48

한필훈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팀)

세션 3 인권을 시험 쳐서 받나요? 시험과 능력주의를 넘어 평등을 넓히자

발제 인권을 바란다면 자격/능력을 증명하라고? 51

공현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토론 1 보편성과 차이: 능력주의에 반대하는 페미니즘 55

장귀연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

토론 2 능력주의를 넘어 평등세상을 만들자 - 장애운동이 차별에 맞서온 담론을 중심으로 58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조직실장)

세션 4 누가 인간인가, 누가 여성인가 주체의 언어가 배제의 언어가 되지 않기 위해

발제 1 생물학적 여성? 코라로서의 여성의 몸! -여성의 몸과 성차에 대한 개념적 숙고 62

이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발제 2 교차성과 페미니스트 실천 74

김보명 (여성학 연구자)

발제 3 평등의 언어를 버리기 위한 실천 76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세션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온 사람들의 인권

발제 1 탈북민이 생각하는 탈북민의 정체성과 한국 사회의 문제점 83

김윤희 (서울대학교)

발제 2 탈북민 정책은 지금 왜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한가? 84

김화순 (한신대 통일평화정책연구원)

발제 3 북한출신주민,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가기 - 남북시민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실천의 재구성 90

이민영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세션 6 섹슈얼리티는 어떻게 인권이 되는가?

사회 및 기초발제 섹슈얼리티 다양성은 정말 사회를 망칠까? 102

심기용 (섹슈얼리티활성화연구소)

토론 1 성소수자운동에서 주체는 어떤 사람인가? 114

도균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의 모임 여행자)

토론 2 인간 존엄으로서 바라본 성적 시민권 117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토론 3 HIV감염인, 섹스를 말하다 122

소리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토론 4 청소년의 성적 권리와 인권 126

쥬리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세계인권선언 70년

불온한 세상을 향해 인권을 외치다

최근 다양한 인권의 현장에서 인권의 목소리를 왜곡되게 해석하는 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는 양심팔이를 운운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관련해서는 가짜 인권팔이라고 합니다. 이권단체, 인권팔이, 매국단체, 양심팔이, 종북... 등 좀 더 나은 세상을 모색하는 움직임과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누군가의 인권을 옹호하는 행동과 언어가 곡해되어, 그것이 또 하나의 의견과 목소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현실입니다.

환대와 존중의 언어가 되어야 할 인권이 어느 순간부터 니편/내편을 가르는 경계가 되고 타인을 배제하는 언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짜인권/가짜인권의 프레임은 이분법으로 인권을 나눠 그로 인한 차별과 배제를 손쉽게 취사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경쟁과 서열화가 정당화 되고, 누군가는 거리로 나왔고 있습니다. 더욱 빈곤해지고, 노동의 권리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기 있는 말하기는 피해자다움을 강요당하고, 나이와 신분, 성적지향, 장애 등 서로의 차이는 존중이 아니라 차별과 배제가 당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전쟁의 야만과 참극에서 인간 존엄을 이야기하며 세계인권 선언이 만들어졌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총성은 멎었지만 타인에 대한 외면과 낙인, 인간을 존엄 등한시하는 현실은 모습만 바뀐 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존엄, 자유, 평등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세계인권선언 70년이 되는 올해. 70년 전 이야기했던 인권의 가치들을 다시금 새기고, 좀 더 살만한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인권선언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이 시대 인권의 목소리를 담아 살아 숨 쉬는 인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받는 세상, 경쟁과 이윤보다 사람이 중요한 세상, 난민이 환대받는 세상, 누구나 평등한 세상, 노동의 권리가 인정받는 세상, 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불온하다면 우리는 불온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더욱 인권을 외칠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 70년을 맞이하여, 인권단체들은 <세계인권선언 70년, 인권주간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사회 인권현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인권운동포럼은 인권의 문제이지만, 인권의 문제로 해석되지 않는 이야기들에 대해 토론하고, 공동의 지혜를 모으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문제의식이 이 시대의 인권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토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권은 강자와 약자를 가르는,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니편 내편을 나누는 언어가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평등하고, 좀 더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말과 행동입니다. 세계인권선언 70년, 인권의 가치가 확장되고 존엄, 자유, 평등이 이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하고, 지혜를 모아갑시다.

불온한 세상을 향해 인권을 외치다.
세계인권선언 70년, 인권주간조직위원회 드림

■

세션 1 알권리는 무엇과 싸우나?
신상공개를 넘어선 알권리 이야기

사회 김조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발제 알 권리와 인권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라운드테이블

조승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방혜린 (군인권센터)

플로어 토론

알 권리와 인권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안녕하세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강성국 활동가입니다. 우선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70주년을 맞은 인권주간에 인권으로서 알 권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마련해 주신 인권운동포럼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권이 우리사회 곳곳에 보다 넓고 깊게 스며들도록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 활동가님들, 이웃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우정의 마음을 전하며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세계인권선언과 알 권리

오늘 저는 ‘알 권리’라는 권리 개념 인권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고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점차 널리 쓰이고는 있지만 ‘알 권리’라는 개념은 여전히 여러 인권의 권리 개념들 중에서 우리에게 아직까지 조금 낯선 개념일지 모릅니다. 생명권, 노동권, 사회권, 자유권과 같은 널리 알려진 포괄적인 개념들에 비하면 딱히 익숙한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알 권리는 현대적인 인권의 탄생에서부터 모든 인권 인권의 개념들과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회 변화의 맥락과 함께 최근에 가장 중요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례로 이미 70년 전에 선포된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주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국경에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달할 자유를 포함한다

- 세계인권선언 제19조

그리고 그로부터 약 18년 후에 유엔(United Nations)에서 채택된 1966년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역시 유사한 수준으로 ‘알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비록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이라는 ‘알 권리’ 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권에 대해 가장 널리 알려진 이 두 개의 문서는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달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함으로써 실질적인 의미상으로 알 권리가 매우 중요한 인권 개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권리가 실상 다른 인권 개념들보다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낯선 이유는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의 제19조가 지금까지 단순히 ‘표현의 자유’라는 인권 개념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까지 당시 2차세계대전 직후 인권이 처참하게 무너진 혼돈기에 유엔인권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엘리너 루스벨트(Eleanor Roosevelt)의 노력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알 권리에 대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 사람은 미국의 저널리스트 켄트 쿠퍼(Kent Cooper)였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기 몇 해 전인 1945년 켄트 쿠퍼는 국민에게는 알 권리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가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는 주장을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를 통해 기고했고 이 글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좀 더 명확한 맥락은 당시 켄트 쿠퍼가 목도한 상황들, 그러니까 전후정리를 위해 오늘날 초강대국으로 존재하는 당시 승전국 간의 계속된 밀실회담들, 미국 군산복합체의 등장들 속에서 켄트 쿠퍼는 이런 역사적인 과정들 속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국민의 알 권리가 지켜져야 하며 이는 정부의 투명성과 언론의 활동을 통해 가능하다는 맥락의 주장이었습니다. 이후 미국은 50년대 냉전 시기와 매카시즘(McCarthyism)의 시기를 거쳐 정부의 비밀주의가 더 만연해지고 정보접근이 열악해지자 언론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알 권리 운동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1966년에 비로소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2. 한국에서 알 권리의 제도화

모두 주지하시다시피 한 국가에서 인권이라는 법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헌법을 통해서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그 밑의 모든 법률들은 최대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정당성과 효력을 발휘하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들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알 권리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알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1980년 12월에 제정된 언론기본법입니다. 언론기본법의 제6조는 언론에게 정보의 청구권을 명시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는 신문, 통신의 발행인 또는 방송국의 장이나 그 대리인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

익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진행 중인 직무의 합리적 수행이 좌절 또는 위태롭게 될 때
2. 비밀보호에 관한 법령규정에 위배될 때
3. 더 중한 공익 또는 보호할 사익이 명백히 침해될 때

- 언론기본법 제6조(언론의 정보청구권) [1987.11.28. 폐지]

언론기본법의 특이한 점은 오늘날 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핵심적인 행위권리인 정보공개청구권을 언론에게 부여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익히 알려졌듯이 언론기본법 제정 직전인 1980년 11월에 전두환의 신군부 계엄하에 언론기관통폐합이 이뤄졌으며, 1985년부터 1986년까지는 각 언론사에 보도지침이 뿌려지는 등 이 시기는 한국 역사상 국민의 알 권리가 가장 참혹하게 파괴된 시기에 속하며 언론에 대한 통제도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역시나 언론기본법 제6조에 의한 정보공개는 단 한 차례도 발동된 적이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언론기본법은 1987년 소위 민주화동시에 곧장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한국 사회에는 비로소 알 권리라는 것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마련됩니다. 한 청구인이 행정청에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했는데 이에 관해 행정청이 불응하자 청구인이 공공기관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한 것입니다. 헌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문제가 재산권보다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서 파생된 정보접근권인 알 권리 침해로 판단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1조에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수용 또는 접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알 권리”의 생성기반을 살펴볼 때 이 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청구권적 기본권)라고 할 것이며,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전문과 제1조 및 제4조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전원재판부 위헌확인 · 기각

민주화 이후 인권과 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담론들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1961년

이후로 지방의회가 군사혁명위원회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고 완전히 중지되었던 지방자치가 1991년 6월에 다시 시작되며 오히려 국회가 아닌 지방의회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먼저 제정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의회는 지방자치 부활 당년인 1991년 청주시의회는 최초의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되려 청주시장이 정보공개 조례가 법적근거가 없고, 사무관리규정, 행정심판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대법원까지 가서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적법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대법원 1992.6.23. 선고 92추17 판결). 그리고 청주시의 조례 제정과 판결 이후로 한국사회의 알 권리에 관한 논의는 더욱 급격하게 진전하게 됩니다.

이제 알 권리에 대해서 시민사회는 보다 적극적인 요구와 제안을 적극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또 알 권리가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알 권리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들어간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공공의 요구들은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대통령후보들이 정보공개법 제정을 공약으로 채택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선된 김영삼 대통령은 공약에 따라 정보공개법의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관료중심 세력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1996년 12월 31일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1년의 유예를 거쳐 1998년 1월 1일부터 정보공개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13번째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국가가 됩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정보공개법은 제1조에 국민의 알 권리를 명시하고 이의 보장을 위한 법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은 1996년 제정 이후로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쳤지만 큰 기초의 변화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알 권리라는 인권은 1987년 이후 헌법재판소 판례, 지방의회의 조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제도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민주화 이후 인권과 시민의 권리에 대한 담론들이 역동적으로 확장되고 비교적 폭넓게 수용되면서 동시에 안정적으로 제도화 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알 권리의 현재

끝으로 저는 알 권리의 현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개의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세 개의 사례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알 권리가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알 권리에 대해서 학습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 번은 찾아보실 만한 사례들이니 중요하게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는 인천녹색연합과 환경부의 사례입니다. 인천녹색연합은 2016년 환경부에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결과 및 위해성평가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환경부가 이를 비공개하자 소송을 제기해 올해 3월 조사

목적과 범위, 환경오염조사 방법과 그 결과는 공개하되, 위해성 평가 부분은 비공개를 유지한다는 일부 승소-부분 공개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용하며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와 관련한 '조사의 목적과 범위'와 '환경오염조사의 방법과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현재까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하위 법령(절차 부속서)의 '미군 측과 합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조사결과의 일부만 공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가 공개한 일부결과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각종 기름들, 중금속 등이 검출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부평미군기지 부지는 반환 후 시민공원으로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부평미군기지 사례의 경우, 주변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이 침해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부평미군기지가 무엇에 의해 얼마나, 어떻게 오염되었는지 응당 알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국가 간, 특히 한미관계, 더 나아가 한미군사동맹에 관한 층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그로 인해 건강하게 살아갈 인권들을 위협과 불안 속에 방치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와 교육부의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명단 공개에 관한 사건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5년 11월 20일 교육부에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던 국정역사교과서에 대해 대부분의 역사학자들, 교사들, 학생들까지 나서서 국정역사교과서를 통해 역사왜곡이 발생할 것이라며 전국적인 반대여론이 강하게 조직되던 시기였습니다. 즉 정보공개센터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에 대해 알 권리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집필진 명단이 공개될 경우에 집필 및 연구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이유와 명단이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한다는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 재판부는 다소 황당한 판결을 내놓습니다. "명단이 공개될 경우 해당 집필진과 심의 위원에 대해 가정과 직장 등에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집필진 명단 공개를 11월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알 권리는 수개월 내로 충족될 것으로 보이고, 그때 가서 집필진 구성이나 역사교과서 내용에 대해 공개 논의할 기회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판결 결과가 법리나 공익적 판단에 근거하지 않고 재판부는 집필진이 받을 심리적 압박을 걱정하거나 몇 달 정도는 알 권리가 침해되어도 상관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즉각 항소했고 고등재판부는 11일 1심을 취소하고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청소년의 역사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볼 때 그 구성이 편향되거나 요구되는 수준에 못 미치는지 등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공개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 국민에 의한 기본적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협의과정의 투명성·공정성·정당성 확보를 위해 편찬심의위원회에 누가 참석했는지 그 명단과 소속을 밝혀 건전한 국가의식 및 역사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됐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명단이 공개되면 편찬위원들에게 다소 심리적 부담 등이 있게 되더라도 공개를 통해 편찬심의위원회 구성의 정당성을 검증하고 역사교과서 편찬이라는 중대한 작업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도록 할 이익이 더 크다

- 서울고등법원 2017.1.11. 선고 2016누65987 판결

비록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판례를 남긴 사건이지만 당시 시민사회와 여론 전반이 사안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 국정역사교과서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던 시기였고 정부는 이에 대해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오로지 정치적 목적과 판단에 의해 정당한 명분이 없음에도 알 권리를 제한하고 의도적으로 정보 접근에 대한 지연을 발생시킨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반올림과 삼성전자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대신해서 쓰인 두 이름에 담겨진 10년이 넘는 시간들, 농성들, 절규와 눈물들, 그리고 죽음들에 대해서 굳이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도 알 권리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재해라는 비극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것을 정리하는 방식은 전말의 입증, 책임의 판단, 인정, 사과, 보상, 재발방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과 절차들이 모두 중요하지만 알 권리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전말의 입증과 재발방지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노동자의 많은 발병 피해자들이 담당했던 업무, 처한 작업환경과 떠안게 된 질병의 합리적인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해당 작업장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사용범위와 양, 배치, 관리방법들 등이 먼저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그것들을 토대로 합리적인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와 같은 공공기관들은 모든 절차들에서 피해자와 그 대변인들의 최소한의 알 권리조차도 존중하지 않았고 거의 모든 정보들을 영업비밀이라며 산업재해인지의 판단절차와 관련 정보들이 모두 은폐되었습니다. 이렇게 알 권리는 없고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형국입니다.

지난 23일 반올림과 삼성전자의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이 있었고 여기서 삼성전자 김기남 대표이사는 머리를 숙이고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과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는 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을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이것이 결국 받아들여져 지금까지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공익'에 한정해서만 제한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에서 제9조는 이 공익을 위해 비공개 될 수 있는 정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부분은 소위 영업비밀에 관해 할애되고 있습니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제1항제7호

자본주의사회에서 기업은 노동자들이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노동을 바탕으로 자본을 축적하고 실제로 축적된 자본은 사회적인 부를 창출하며 넓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공적 기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실제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같이 재벌·대기업이 기형적으로 거대화 되어 경제 전반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에서는 그 영향력이 더욱 극대화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추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할 때 기업들의 모든 정보들이 단지 사유재로 간주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이라는 간편한 말로 모든 정보공개에 대한 책임과 알 권리의 요구에 대해 면죄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기업들은 앞으로 사람들의 건강, 환경, 프라이버시 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들을 신중하게 다루고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는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시대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저는 알 권리가 인권에 어떻게 포함되고 있는지,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제도화되고 현재의 상황들은 어떠한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보다 압축적으로 요약하자면 알 권리는 결국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합리적인 사유와 의견의 형성,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그리고 그 표현의 자유로부터 부여되는 집회와 결사, 정치적 결정의 자유와 같은 중요한 시민권적 인권을 가능하도록 존재하는 인권에 대한 인권, 즉 일종의 메타적 인권, 플랫폼적 인권 개념으로 잠정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의 사례들에서 들어난 것과 같이 알 권리는 아직까지도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도적인 모순, 악의적인 밀실행정과 기밀주의의 정보은폐, 기업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정보독점 등등 지금까지의 알 권리에 관한 투쟁들이 안정적인 제도화에 있었다면 앞으로의 투쟁들은 당면한 제도적 모순들을 해결하고 알 권리의 새로운 버전들을 정립해 나가는 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더 많은 공익의 대변자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

세션 2 가짜/진짜 프레임을 넘어서 대항적 말하기로 반차별 운동의 힘 찾기

사회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발제 1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방안과 국가의 책무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발제 2 가짜뉴스 대응 사례와 대항적 발화의 의미

2-1. 퀴어 퍼레이드 폭력 사태와 KBS심야토론 대응 중심으로

이종걸 (무지개행동)

2-2. 난민 혐오 대응 운동을 중심으로

고은지 (난민인권센터)

2-3. 피해자의 위치를 이탈하는 발달장애여성의 발화 운동 중심으로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토론

소수자 혐오 대응과 국가의 역할

한필훈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방안과 국가의 책무⁰¹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I. 혐오표현 무대응 국가?

한국사회에서 혐오표현에 관한 문제가 불거진 것은 대략 2013년 경이다. 일간 베스트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유럽에서 이를 혐오표현이라고 간주하여 처벌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그 이후 몇 가지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방송에서의 혐오표현 규제를 규정한「방송법」개정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2013.6.18.), 형법상 범죄행위의 하나로 혐오표현을 규정한「형법」개정안(안호대의원 대표발의, 2013.6.20.), 공직선거에서의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개정안 (진영의원 대표발의, 2015.6.9.), 혐오표현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규제하는 단일법인 「혐오표현 규제법」제정안 및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안 (김부겸의원 대표발의, 2018.2.13.),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018.) 등이 발의되었다. 하지만 이들 법안들은 모두 임기만으로 폐기되거나 심지어 반대세력의 로비를 버티지 못하고 자진철회하는 일까지 있었다.

성과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7년에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혐오표현을 인권 침해로 간주하여 금지하는 조항이 최초로 삽입되었다.⁰² 서울시도 인권기본계획에 혐오표현 관련 대응을 포함시킨 바 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⁰³, <방송심의규정>⁰⁴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⁰⁵에도 부족하나마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혐오표현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은 실망스럽다. 혐오표현은 최근 5년 동안 한국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고, 언론지상에서도 빈번하게 다뤄져왔다. 그에 비하면 정부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혐오표현 대응을 ** 과제로 선정했고, 국가인권위원장도 여러 차례 혐오문제에 적극대응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희망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아래에서는 혐오표현에 관한 규제방법을 일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법들을 차례로 논의하면서 특히 국가와 범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해보도록 하겠다.

II.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방법

혐오표현 규제방법을 일별해 보면 대략 표1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01 이 발표문은 홍성수, 법과사회, 언론중재위, 『말이 칼이 될 때』, 어크로스 2018 등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임.

02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3항).

03 제8조 제3호 바목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04 제29조(사회통합) 방송은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인종간, 종교간 차별·편견·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양성평등) ① 방송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은 특정 성(性)을 부정적,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은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05 제10조의2(차별 금지) ① 언론은 개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②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개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하는 규제	형사규제	형사처벌	
	민사규제	손해배상	
	행정규제	차별규제, 방송심의	
지지하는 규제 (형성적 조치)	국가·법적 규제	교육	공무원인권교육과 시민인권교육
		홍보	국가적 차원의 홍보·캠페인, 영화·영상물 제작을 통한 인식제고 활동
		정책	공공(교육)기관에서의 반차별정책 시행
		지원	소수자(집단)에 대한 각종 지원
	연구	차별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자율적 규제	스포츠·온라인 영역에서의 자율규제, 사기업·대학에서의 자율규제, 인권·시민단체의 반차별운동		

<표 1> 혐오표현의 규제 방법

1. 형사규제

혐오표현에 대한 대책 중 가장 강력한 것은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발화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혐오표현에 대해, <자유권규약> 20조 2항은 “금지”, <인종차별철폐협약> 4조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이사회의 <컴퓨터를 통한 인종주의, 외국인 증오적 행위의 형사처벌에 관한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의 추가의정서>⁰⁶도 ‘형사처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유럽연합 국가들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들도 혐오표현을 형사범죄화하고 있기도 하다.

형사범죄화한다면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정해야 하는데, 자유권규약 등의 국제규범과 각국의 입법례에서는 대개 ‘증오선동’(incitement to hatred)에 해당하는 혐오표현을 형사범죄화하고 있다. 예컨대 독일 형법(Strafgesetzbuch, 130조 1항, 2항)의 “증오의 선동”, “폭력의 선동”, 캐나다 형법(Canada Criminal Code 1985, 318조 4항, 319조 2항)의 “공공연한 증오의 선동”(public incitement of hatred), “혐오를 고의로 조장(promote)하는 표현”, 영국 공공질서법·인종종교혐오법(Public Order Act 1986; Racial and Religious Hatred Act 2006)의 “혐오를 유발할(stir up) 의도로 위협하는 표현” 같은 구성요건은 모두 증오선동을 염두에 둔 규정이다.

2. 민사구제

민사구제는 혐오표현을 민사상 ‘불법행위법’ 구제절차에 따라 다루는 것이다.⁰⁷ 형사범죄화가 발화자 처벌에 초점이 있다면, 민사구제는 손해의 원상회복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소수자 ‘집단’에 대한 손해발생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특정된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해서만 민사구제가 유효하다. 좀 더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서는 입증책임의 전환, 시민단체의 소송제기권 부여, 반론권 부여 등의 제도개선책이 적절하게 보완되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⁰⁸ 한편, 혐오표현을 포함한 차별문제에 대해서는 보통 민사구제와 아래에서 설명하는 차별시정이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3. 차별시정기구에 의한 규제

차별시정기구에 의한 구제는 차별행위의 일종인 혐오표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차별구제는 민사구제 시 입증의 어

06 Council of Europe, Addi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concerning the Criminalisation of Acts of a Racist and Xenophobic Nature Committed through Computer Systems, ETS No. 189, 2003.1.28.

07 일본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민사구제 사례에 대해서는 문연주, “일본의 혐오표현과 규제 : 교토지방법원의 ‘가두선전금지 등 청구사건’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39, 2014, 89-124면; 코타니 준코, “일본의 증오표현(헤이트스피치) 규제에 대한 고찰”, 이승현 역, 『연세 공공거버넌스학』, 6(1), 2015, 97-123면 참조.

08 Article 19, 앞의 글(“Prohibiting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41-42면; Council Directive 2000/43/EC of 29 June 2000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between persons irrespective of racial or ethnic origin, 8조 참조.

려움과 재판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피해자친화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기 도입되었다.⁰⁹ 한편으로 민사구제로 넘어가기 전에 1차적인 관문역할을 하고, 다른 한편 민사상 불법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직접 구제를 제공하기도 한다. 차별시정기구는 고용, 서비스, 교육 영역에서의 혐오표현을 괴롭힘(harassment)으로 간주하여 구제를 제공할 수 있다. 여러 차별금지법안들은 이 역할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맡기고 있다. 현행법상 괴롭힘은 성적 괴롭힘(성희롱)에만 한정되어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차별조항을 넓게 해석하거나 차별금지법에 괴롭힘 금지를 명시해야 구제가 가능하다.

차별시정기구의 3대 기능은 권고·자문, 교육·홍보, 구제이다. ‘권고·자문’은 정부나 관련 기관에 차별시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자문을 하는 것이다. 강제집행력은 없지만, 차별시정기구의 법적, 정치적 권위, 그리고 철저한 조사와 정당한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피권고기관을 견인한다. ‘교육·홍보’는 반차별교육을 직접 수행하거나, 관계기관에서의 교육을 지원하거나, 대국민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다. ‘구제’는 차별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제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 절차는 보통 ‘비사법적 구제(non-judicial remedies)’이다. 차별시정기구는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되면,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임시조치, 조정, 시정권고(차별행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교육이수 등), 시정권고 불이행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방식이 여의치 않을 때는 법률구조를 요청하거나 소송을 지원함으로써, 당사자의 법적 구제를 돕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구제수단을 동원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차별시정기구에 의한 구제의 큰 장점이다.

차별시정기구가 반차별정책이라는 큰 틀 안에서 혐오표현을 다룬다는 점도 중요하다. 혐오표현은 다른 차별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차별문제를 전담하는 차별시정기구에 의한 차별구제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차별시정기구는 비교적 넓은 범위의 혐오표현을 다룰 수 있다. 형사처벌에 비해 유연한 접근과 비강제적 조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호주 인종차별금지법(Racial Discrimination Act 1975, 18C)은 “불쾌하게 하거나, 모욕하거나, 굴욕감을 주거나, 위협하는”이라는 규정을, 캐나다 인권법(Canadian Human Rights Act 1985, 12-a)은 “차별이나 차별의도를 암시하거나 표현하는 것”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증오선동에 대한 형사구성요건과 비교할 때, 더욱 넓은 의미의 혐오표현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4. 지지하는 규제 (형성적 조치)

형사처벌, 민사구제, 차별시정은 모두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방식인 반면에, 형성적(formative), 촉진적(facilitative), 적극적(affirmative), 사전예방적인 방식의 규제도 있다. 혐오표현의 금지·처벌을 통한 문제해결이 사후적, 소극적, 부정적(negative)인 조치라고 한다면, 형성적 조치는 혐오표현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여건을 만들어가는’ 긍정적(positive)인 조치들을 말한다.¹⁰ 여기에는 국가가 관여하는 규제와 순수한 시민사회의 자율적 조치가 있다. 먼저, 국가는 홍보·캠페인, 영화·영상물 제작 지원, 언론을 통한 인식제고, 소수자집단에 대한 각종 지원, 공공기관과 공공교육기관에서의 반차별정책 시행, 차별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조사·연구, 반차별 시민교육, 공직자·정치인에 대한 인권교

09 민사구제와 차별구제(비사법적 구제)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는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6, 3부 인권의 구제 참조.

10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Report on Hate Speech and Incitement to Hatred, 7 Sep 2012, 1/67/357, 57단락에서는 이를 “비법적 조치”(non-legal measures)라고 부르는데, 국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절한 표현인지 의문이다. 금지·처벌과 대비하여 “자기침해가 덜한 방법”(less self-intrusive ways)이라는 표현이 형성적 조치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Braun, 앞의 책, 216면).

육, 방송심의 등의 정책을 시행할 할 수 있다.¹¹ 규제반대론자들도 국가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¹² 그리고 국가가 관여하는 형성적 조치의 상당 부분은 권고·자문기능, 교육·홍보기능을 갖고 있는 차별시정기구가 담당하는 경우도 많다.

형성적 조치의 또 다른 형태는 순수한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조치들이다.¹³ 스포츠·온라인 영역에서의 자율규제, 기업에서의 자율규제, 대학에서의 자율규제, 시민사회에서의 각종 반차별 캠페인 등이 대표적이다. 규제반대론에서는 이러한 방식이야말로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시민권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과 같은 시민사회단체가 “더 적은 표현이 아니라 더 많은 표현이 최고의 복수”¹⁴라고 말하는 것은 혐오 표현을 내버려둔다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혐오표현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¹⁵ 다만, 이들 영역에서의 규제가 혐오표현에 대한 ‘금지’조치인 경우, 예컨대 대학에서 표현강령을 통해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본래 의미의 형성적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규제반대론에서도 이러한 조치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다.¹⁶

III. 혐오표현 규제의 기본 구상

1. 혐오표현에 대한 개입 필요성

혐오표현이 갖는 심각성을 고려할 때, 국가가 아무런 개입을 취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정당화되기 어렵다. 혐오표현의 여러 가지 심각한 해악은 엄연한 현실이다. 실제로, 소수자들이 겪는 다양한 형태의 고통, 혐오표현이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지는 과정 등에 대해서는 여러 경험적 연구들이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해왔다.¹⁷ 물론 사상의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혐오표현을 퇴출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소수자의 ‘맞받아치기’(speaking back)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¹⁸ 또한 국가가 불개입으로 일관하는 것은 혐오표현을 ‘허용’하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줌으로써 혐오표현의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기도 한다.¹⁹ 이런 상황이 시민사회에서 ‘저절로’ 개선되지 않는 한 ‘불개입’은 선택지가 될 수 없을 것이다.

혐오표현에 대한 조치는 국제법상 요구되는 것이기도 하고,²⁰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하

11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Report on Hate Speech and Incitement to Hatred, 7 Sep 2012, 1/67/357, 56-74단락; Article 19, 앞의 글(“Responding to Hate Speech Against LGBTI People”), 21-24면 참조; 문화정책과 미디어규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M. Malik, “Extreme Speech and Liberalism”, in Hare and Weinstein, 앞의 책, 105-107면 참조.

12 K. Gelber, “Reconceptualizing Counterspeech in Hate Speech Policy”, in Herz and Molnar, 앞의 책, 214-215면; A. Harel, 앞의 글, 326면; Strossen, 앞의 글(“Interview with Nadine Strossen”), 382, 388-389면; T. Shaw, “Interview with Theodore Shaw”, in Herz and Molnar, 앞의 책, 412-413면 등 참조.

13 이것을 ‘형성적 조치’에 포함시킨 것은 ‘규제’(regulation)라는 개념에 법규제는 물론이고 대상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예: 문화, 사회규범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홍성수, “규제학: 개념, 역사, 전망”, 『안암법학』, 26, 2008, 3-4면 참조.

14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Hate Speech on Campus” (<https://www.aclu.org/hate-speech-campus>).

15 유럽이 “국가주도형 대응모델”(state-driven countermodel)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노력에 기대를 거는 모델에 해당한다는 지적으로 A. Jacobson and B. Schlink, “Hate Speech and Self-Restraint”, in Herz and Molnar, 앞의 책, 239면 참조.

16 미국 대학의 사례에 대해서는 T. C. Shiell, Campus Hate Speech on Trial, University Press of Kansas, 2nd ed, 2009; J. B. Gould, Speak No Evil: The Triumph of Hate Speech Regul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5; M. Heumann and T. W. Curch, Hate Speech on Campus: Cases, Case Studies, and Commentary,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1997; 조소영,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방법론에 대한 헌법적 평가: 대학 내에서의 적의적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학칙을 중심으로”, 『헌법판례연구』, 6, 2004, 91-111면 참조.

17 앞의 III.1.1)의 여러 참고문헌 참조. 같은 취지에서, 수정헌법 1조에 대한 ‘형식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법현실주의’(the new first amendment legal realism)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R. Delgado and J. Stefancic, Must We Defend Nazis?: Hate Speech, Pornography, and the New First Amendment, NYU Press, 1999, 3장 참조.

18 실제로 소수자들의 맞받아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경험적 연구로 입증하는 Nielsen, 앞의 글, 155-167면 참조.

19 M. J. Matsuda, “Public Response to Racist Speech: Considering the Victim's Story” in Matsuda, 앞의 책, 49-50면.

20 김지혜, 앞의 글, 61-65면, 조소영, 앞의 글, 133면.

고 있다. 규제반대론이 지배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혐오표현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²¹ 실제로 상당수의 미국의 대학과 기업 등 여러 기관들에서는 ‘차별금지 정책’ 또는 ‘다양성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특히 비권력적 관계, 예컨대, 교수-학생, 상급자-하급자 사이의 혐오표현은 괴롭힘(harassment)으로 간주되어 민사구제의 대상이 되고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감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²² 혐오표현이 ‘폭력’(혐오범죄)으로 이어졌을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법이 집행된다. 방송에서의 혐오표현에 대해서 규제장치를 두고 있고,²³ 국가적 차원에서도 다양한 반차별정책을 시행 중이다. 혐오표현을 ‘금지’하지 않을 뿐 다양한 방식의 ‘개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논점은 개입이나 불개입이냐가 아니라 - 규제반대론이 지적하는 여러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되 - 여러 가지 규제장치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되어야 한다.²⁴

2.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 규제

규제를 하더라도 혐오표현에 관한 대책은 여전히 “더 많은 표현(more speech)”²⁵, “더 좋은 사상으로 맞서는 것”²⁶이 중심에 놓여야 한다. 혐오표현 금지가 도리어 소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평등을 증진하는 것이라는 지적 역시 여전히 유의미하다.²⁷ 문제는 ‘(혐오)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소수자의) 혐오표현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충돌하는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²⁸ 이 딜레마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혐오표현을 표현의 자유의 ‘예외’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즉,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어쩔 수 없이’, ‘예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요청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야 부작용을 최소화한 적절한 규제대안이 도출될 수 있고, ‘더 많은 표현’이 더 좋은 해법이라는 원칙도 고수될 수 있다.

사상의 시장에서 소수자들이 혐오표현에 맞설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인정된다면, 가장 좋은 해법은 소수자들이 스스로 시장에 나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희생자와 그 지지자들에게 혐오표현행위에 대응하게 하는 실질적, 제도적, 교육적 지원’을 함으로써, ‘희생자들로 하여금 혐오표현행위의 ‘침묵하게 만드는 효과’에 도전하게 하고, 혐오표현 화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²⁹ 이런 목적을 위해서는 혐오표현을 금지·처벌하기 보다는 시민사회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는 ‘형성적’ 조치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21 R. Post, “Interview with Robert Post”, in Herz and Molnar, 앞의 책, 11-12면 참조.

22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혐오표현은 차별행위의 일종인 ‘괴롭힘’에 해당하지만, 혐오표현 금지가 교수, 학생, 직원, ‘구성원’ 전체에게 적용되도록 규정을 둔 경우에는 문제양상이 달라진다. 실제로 이런 표현강령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되기도 했고, 실제로 규제반대론에서는 기업이나 대학에서의 자율적인 혐오표현 금지정책, 특히 구성원 전체에 적용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다. 앞의 주72의 문헌 참조. 현재 미국 대학의 표현 강령 현황에 대해서는 대학생권리옹호단체인 Fire의 보고서 참조. “Spotlight: Speech Codes 2015: The State of Free Speech on Our Nation’s Campuses” (<https://www.thefire.org/spotlight-speech-codes-2015>).

23 미국에서의 방송심의에 대해서는 Jacobson and Schlink, 앞의 글, 227-232면.

24 같은 의견으로 이주영, 앞의 글, 211면 참조.

25 *Whitney v. California*, 274 U.S. 357, 377 (1927). (Brandeis, J. and Holmes, J., concurring)

26 이재승, 앞의 책, 579면.

27 Strossen, 앞의 글(“Hate Speech and Pornography”), 462면 이하 참조.

28 같은 취지에서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려면, 수정헌법 1조의 권리중심개념(rights-based conception)으로 돌아가야 하며, 혐오표현이 타인의 권리와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Heyman, 앞의 글, 160-164면 참조.

29 Gelber, 앞의 책, 10, 89면; 또한 K. Gelber, “Hate Speech and the Australian Legal and Political Landscape”, K. Gelber and A. Stone (ed), *Hate Speech and Freedom of Speech in Australia*, The Federation Press, 2007, 16면; K. Gelber, “Speaking Back: The Likely Fate of Hate Speech Policy i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in I. Maitra and M. K. McGowan (ed), *Speech and Harm: Controversies Over Free Speech*, OUP, 2012, 53-56면 참조.

이것은 ‘형식적 평등’³⁰이 아닌,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기도 하다.³¹ 형식적인 자유가 주어져도 소수자가 실제로 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진정으로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³² 여기서 국가의 개입의 목표는 바로 이 ‘진정한 자유’와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소수자의 ‘자력화’(empowerment)를 지원하고 시민사회의 대항담론을 활성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³³ 이 때 개입은 금지와 처벌을 위한 개입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empowering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³⁴이며, “지원을 받은 대항표현”(supported counterspeech)을 위한 개입이다.³⁵ 이를 통해 소수자와 그와 연대한 시민사회 전체가 혐오표현에 맞서 싸우는 것이야말로 혐오표현을 다루는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³⁶

이 때 혐오표현에 대한 ‘금지’가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혐오표현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더 ‘증진’한다는 조건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혐오표현이 소수자들이 스스로 표현하고 사회에 참여하는데 있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정한 금지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³⁷ 혐오표현 금지 외에는 소수자의 자력화와 반격을 지원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을 때 비로소 법적 개입이 발동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혐오표현을 할 자유는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정당화 논리는 혐오표현 금지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주고, 금지조치의 남용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제어장치로서도 기능한다.³⁸

3.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기본 구상

앞에서 언급했듯이 혐오표현 규제는 필요하지만,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 규제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표현 자체를 제약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작동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 하에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기본 구상을 제시해보면 표2와 같다.

<표 2> 혐오표현 규제의 기본 구상

	내용	필요한 법적 조치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 개입	교육, 홍보, 정책, 지원, 연구	차별금지법 제정
차별적 괴롭힘 규제	괴롭힘 금지	차별금지법 제정
공공영역에서의 규제	공공서비스, 방송, 광고에서의 규제	차별금지법 제정
증오선동 규제	증오선동 형사처벌	증오선동금지법 또는 차별금지법이나 형법(개정)에 포함
차별금지, 증오범죄 처벌	차별금지 증오범죄 가시화/가중처벌	차별금지법 제정, 증오범죄법 제정

30 반면 규제반대론에서는 국가와 법은 실질적인 가치에 개입하면 안되고 오로지 ‘형식적 자율성’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Baker, 앞의 글 (“Hate Speech”), 63-67면 참조.

31 Mengistu, 앞의 글, 356-359면 참조.

32 Gelber, 앞의 글(“Reconceptualizing Conterspeech in Hate Speech Policy”), 208-209면.

33 O. Fiss, The Irony of Free Speech,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17면.

34 D. A. J. Richards, Free Speech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OUP, 1999, 136면; 이 책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정체성의 정치’를 실현하는 핵심이며, 차별이라는 ‘구조적 부정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원칙적이고 강력한 해법임을 주장한다. 특히 같은 책, 제4장 참조.

35 누스바움(Matha Nussbaum)의 능력이론(capability theory)을 활용하여 이러한 지원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하는 K. Gelber, Speaking Back: The Free Speech versus Hate Speech Debate,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002, 3장 참조.

36 M. Herz and P. Molnar, “Introduction”, in M. Herz and P. Molnar (ed), The Content and Context of Hate Speech: Rethinking Regulation and Respons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4면; Joint Submission by the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he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Expert Workshop on the Prohibition of National, Racial or Religious Hatred”, Vienna, 9-10 February 2011, 15면.

37 비슷한 논지로 K. Gelber, “Freedom of Political Speech, Hate Speech and the Argument from Democracy: The Transformative Contribution of Capabilities Theory”, Contemporary Political Theory 9, 2010, 320-321면 참조.

38 이런 관점에서는 혐오표현금지가 소수자를 수동적인 피해자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비판이 더욱 중요해진다. J. Weinstein, Hate Speech, Pornography, And Radical Attacks On Free Speech Doctrine, Westview Press 1999, 154-155면. 비슷한 맥락에서 성희롱 규제가 여성을 오히려 수동적인 피해자의 이미지로 고착시킨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홍성수,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와 여성주체의 문제: 하버마스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판”, 「법철학연구」, 12(2), 2009, 215-217면 참조.

1)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 개입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없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지지하는 규제’(형성적 조치)다. 편견과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소수자를 지원함으로써 혐오표현에 대한 내성이 길러지도록 개입하는 것이다.

2) 차별적 괴롭힘 규제

사상의 자유시장에 의한 자정이 작동할 수 없다면, 표현의 자유의 원칙이 우선시될 수 없다. 자유주의적 관점에 따르면이라도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곳에 규제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대표적인 영역은 고용, 서비스, 교육 영역이다. 여기에서는 상급자와 하급자, 교사·교수와 학생의 ‘위계적’ 관계에서 자율적 해결을 기대할 수는 없다. 직장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동성애자라는 이유에서 괴롭히거나,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를 두고, ‘자율에 맡기자’, ‘그들이 맞서 싸우게 하자’고 하는 것은 순진한 것이 아니라 무책임한 것이다.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혐오표현은 우선적인 규제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실제로 이러한 영역에서의 혐오표현은 차별로 직결된다. 여성 혐오발언이 만연한 회사의 여성들이 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을리 만무하다. 교수가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제지 없이 내뱉는 대학에서 성소수자 학생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차별금지법안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괴롭힘’(harassment)로 규제하고 있다.

“괴롭힘”이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존엄성을 해치거나, 수치심·모욕감·두려움을 야기하거나 적대적·위협적·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차별금지법안, 김재연의원 대표발의, 2012)

괴롭힘이 표현행위를 통해서 수행된다면 그것이 곧 혐오표현에 해당한다. 차별금지법상 괴롭힘은 고용, 서비스, 교육영역으로 그 적용이 제한되며,³⁹ 반드시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인종, 종교 등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하는 행위여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보장되는 미국에서도 이러한 괴롭힘은 규제대상이다.⁴⁰ 길거리에서 ‘흑인은 아프리카로 가라’고 외치는 것은 처벌되지 않지만, 회사 사장이 흑인 직원들에게 “너희들은 아프리카로 가라”라고 말했다면 그건 ‘차별행위’로서 규제되는 것이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차별행위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법리를 활용하여 더욱 강력히 규제하기도 한다. 제 아무리 미국이라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을 방치하고 자유를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

3) 공공영역에서의 규제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더라도 공공성이 강한 영역에서의 규제는 필요하다. 이 때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공공서비스, 방송, 광고 등이다. 공공서비스에서 혐오표현이 발화되지 않도록 하려면, 공무원 인권교육이나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혐오표현의 문제가 적극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39 사실 현재 차별금지법안에서는 적용범위가 모호하고 되어 있는데, 고용, 서비스, 교육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맞고, 해외의 차별금지법의 괴롭힘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

40 다만, 미국의 자유주의자 중 일부는 이러한 괴롭힘, 특히 환경형 괴롭힘에 대한 규제정책이 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국내 차별금지법안 중 인권위 법안, 법무부 법안, 권영길 법안, 김재연 법안, 김한길 법안, 최원식 법안, 박은수 법안, 김재연 법안 등은 공통적으로 ‘광고’에 의하여 차별을 표시·조장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최원식 법안은 “성별·학력·지역·종교 등” 4가지 사유에 의해서만 광고에 의한 차별이 성립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러 가지 차별/혐오표현 중 ‘광고’를 통한 차별 표시·조장행위만을 규율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매체 중 광고가 가지고 있는 큰 영향력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인권위 차별금지법안 공청회 자료집에는 광고 규정에 대해 “미디어 영역의 광범위한 적용 필요/「법안」에 포함 부적절 의견이 있었음. 차별시정의 극대화과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하여 광고에 한정하여 적용함”이라는 설명이 있다.⁴¹ 또한, 일반적인 혐오표현을 모두 규율하는 것은 지나치게 범위가 넓어질 우려가 있어, 극단적인 형태의 혐오표현(예: 증오선동)만 규율하던가 아니면 매체를 한정해야 하는데, 광고가 비교적 법으로 그 범위를 정하기 용이하다는 점도 고려가 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김한길 법안과 최원식 법안에서는 법에서 ‘광고’는 2조 용어에 <표시·광고화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광고를 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⁴²

광고 이외에 검토해볼만한 것으로는 출판, 방송, 신문을 통한 차별 표시·조장이다. 현대사회에서 이들 매체의 영향력이 결코 적지 않고, 특히 방송은 공공성이 강한 영역이라 적절한 규제가 요청된다. 기존의 <방송심의규정>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미 방송이나 언론에서의 차별 표시·조장은 규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차별금지법에 이에 관련한 일반 규정을 두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4) 증오선동 형사범죄화

형사범죄화를 한다면 실제 차별이나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의도적인 선동행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차별·폭력의 실현이 임박한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자율적 힘으로 선동을 퇴출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보안법제와 관련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처럼 차별과 폭력에 대해서 그러한 위험이 있다면 형사처벌이 필요할 수 있다.

5) 차별규제, 폭력 규제

편견은 혐오표현으로 발화되고 차별이나 폭력(증오범죄)로 이어진다. 편견은 어차피 규제대상이 될 수 없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혐오표현 규제가 쉽지 않다면, 차별과 증오범죄를 엄단함으로써 혐오표현을 최대한 위축시킬 수 있다. 표현 자체는 규율하지 않되, 표현이라는 선을 넘어가는 순간 강력히 대처한다는 전략이다. 차별시정기구를 통해 차별행위를 규제하고, 증오범죄법을 통해 증오범죄에 대처하는 것은 이미 민주주의의 국가의 보편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았다. 혐오표현금지법처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도 없다. 차별행위와 증오범죄는 비교적 그 실체가 분명하고 규제의 어려움이나 부작용이 거의 없으면서, 혐오표현이 더 큰 해악으로 번지지 않게 하고, 혐오표현을 적절한 수준에서 위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41 박찬운,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차별금지법안」의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안 공청회 자료집, 2006, 14쪽 참조.

42 장애인차별금지법 4조 1항 4항에서도 차별 표시·조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IV. 형사범죄화의 한계와 차별시정기구 주도의 규제

혐오표현 규제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규제를 결국 ‘차별시정기구’가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형사범죄화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중요한 전제를 형성한다.

1. 형사범죄화의 한계와 의의

혐오표현 형사범죄화가 혐오표현을 근절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가 혐오주의자들의 준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거나 편견과 혐오를 몰아낼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다는 것이다.⁴³ 이미 형사범죄화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가 제대로 검증된 바는 없다.⁴⁴ 집행실적도 미미하고,⁴⁵ 법이 적용된 사례들을 보면 과연 일관된 기준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⁴⁶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규율범위를 좁힌다면 형사처벌의 실제 효과는 더욱 줄어든다. 규율범위를 벗어나는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형사범죄화가 소수자의 자력화와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 오히려 형사범죄화의 ‘상징적 기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금지·처벌이 한편으로 소수자를 향해 국가가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그들을 안심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시민사회를 향해 혐오표현을 관용하지 않는다는 도덕적 정체성과 사회적 가치를 확인시켜 주기 때문이다.⁴⁷ 이 때, 혐오표현 금지법은 “공적 선언”⁴⁸으로서 “상징적 가치”⁴⁹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집행실적이 별로 없다거나 혐오표현 근절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은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다.⁵⁰ 좁은 범위의 중한 혐오표현만 규율한다고 해도 문제될게 없다. 혐오표현이 ‘범죄’로 공인을 받은 것만으로도 ‘국가의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⁵¹ 반드시 강한 처벌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징역형 대신 벌금형만으로도 상징적 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⁵²

하지만 이러한 ‘상징기능’이 형사범죄화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⁵³ 국가의 ‘의지’를 보여주는 방법은 형사범죄화 말고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⁵⁴ 예컨대 혐오표현이 폭력이나 실제 차별로 이어지는 순간부터 가차 없이 처벌하거나, 정치지도자가 수시로 분명한 의지를 천명하거나, 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반혐오표현정책을 시행하는 것만으

43 J. Mchangama, “The Problems with Hate Speech Laws”, *The Review of Faith & International Affairs* 13(1), 2015, 80-81면; P. B. Coleman, *Censored: How European “Hate Speech” Laws are Threatening Freedom of Speech*, Kairos Publications, 2012, 78-79면 참조.

44 Bacquet, 앞의 책, 41-42면 참조.

45 혐오표현 처벌 사례가 영국은 매년 3-4건, 독일이나 프랑스도 100여건에서 200여건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E. Bleich, *The Freedom to be Racist: The Freedom to Be Racist?: How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Struggle to Preserve Freedom and Combat Racism*, OUP, 2011, 142-143면 참조. 이 책에서는 이러한 통계가 혐오표현 규제법의 ‘효과’를 가능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혐오표현 처벌이 매우 심각한 사례에만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영국에서의 (인종)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비판(표현의 자유 축소, 차별금지 효과 없음, 남용 등)이 과장되었다는 반론은 P. N. S. Rumney, P. N. S. “The British Experience of Racist Hate Speech Regulation: A Lesson for First Amendment Absolutists?”, *Common Law World Review* 117, 2003, 136면 이하 참조.

46 세계 각국의 혐오표현 규제 사례들의 불명확성, 비밀관성 문제를 지적하는 Coleman, 앞의 책, 33면 이하 참조.

47 Parekh, 앞의 글, 46면; A. Tsesis, *Destructive Messages: How Hate Speech Paves the Way for Harmful Social Movements*,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2, 196면; K. Gelber, *Speech Matters: Getting Free Speech Right*, UQP, 2011, 101-102면; M. Jones, “Empowering Victims of Racial Hatred by Outlawing Spirit-Murder”, *Australian Journal of Human Rights* 19, 1994, 10면; D. O. Brink, “Millian Principles, Freedom of Expression, and Hate Speech”, *Legal Theory* 7(2), 2001, 154-155면 참조.

48 Jones, 앞의 글, 10면.

49 Brink, 앞의 글, 155면.

50 Jones, 앞의 글, 10면; Brink, 앞의 글, 154면.

51 박해영, “혐오표현(Hate 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16(3), 2015, 162면.

52 혐오표현에 대한 형량 문제에 대해서는 Farrior, 앞의 글, 92-93면 참조.

53 상징형법이 초래할 법치국가적 문제는 별개다. 상징형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빈프리트 하세머, 『형법정책 : 법치국가와 형법』, 배종대·이상돈 역, 세창출판사, 1998, [13] 상징적인 형법과 법익보호 참조.

54 Weinstein, 앞의 책, 185-186면.

로도 ‘국가의 의지’를 과시할 수 있다. 형사범죄화는 그저 ‘조금 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 뿐이다.

형사범죄화의 효과가 이렇게 제한적인데 반해 오남용의 소지는 결코 적지 않으며, 혐오표현의 형사범죄화가 기껏해야 상징적 기능 정도에 그친다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어차피 다른 형성적 조치들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 이 때 형사범죄화가 형성적 조치들을 질식시키거나 정치적 에너지가 형사처벌에 과도하게 집중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형사처벌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만큼 형사처벌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혐오표현 규제의 오남용이 주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의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나타났다는 점을 주의깊게 봐야 한다.⁵⁵ 한국처럼 표현의 자유의 보장 수준이 낮은 경우라면 혐오표현 규제법의 도입이 양날의 칼이 될 여지가 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가 추가된다면,⁵⁶ 국가규제의 총량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으며,⁵⁷ 본래 의도와는 달리 ‘국가가 나쁜 표현을 금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⁵⁸ 실제로 혐오표현 규제가 도입된다면, 그보다 더 위험한(!) ‘중복세력’ 등 반국가행위자들의 표현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고, 이것이 정치적 반대자들의 목소리를 억누르는데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혐오표현을 형사범죄화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주의깊게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그 규율범위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증오선동’에 해당하는 표현만을 형사처벌로 삼는 것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최근 국제 시민사회가 혐오표현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시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⁵⁹ 구체적으로 보면, 맥락(폭력, 차별에 관련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 화자(지위와 영향력 등), 의도(고의성, 확장성), 내용(대상, 자극성, 예술·학술적·종교적 맥락, 공격 담론에 기여, 허위·사실 등), 표현의 범위와 크기(청중, 전파 수단, 반복성, 전파 범위), 해악발생 가능성(차별·폭력·적대에 대한 직접적인 요청인지 여부, 청자의 성격)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적용범위를 좁히자는 의견이 제시되어왔다.⁶⁰ 특히 화자의 ‘의도성’이나 해악을 일으킬 ‘위

55 에티오피아와 르완다에서 혐오표현 규제가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하는데 남용되었다는 사례연구로는 Mengistu, 앞의 글, 370-374면 참조. 국제앰네스티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의 남용 사례에 대한 보고는 Amnesty International, “Freedom Limited: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EUR 46/008/2008; “Uzbek Journalist Must be Released: Ulugbek Abdusalomov”, UA: 144/10 Index: EUR 58/006/2010; “Indonesia: Atheist Imprisonment a Setback for Freedom of Expression”, ASA 21/021/2012 등 참조.

56 비슷한 취지에서, 표현의 자유의 단계를, 권위주의, 자유주의, 포스트자유주의로 나누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던) 권위주의 단계에서 바로 (평화·인권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포스트자유주의로 이행한 한국의 위험한 현실을 지적하는 이재승, “선동죄의 기원과 본질”, 『민주법학』, 57, 2015, 154-157면 참조.

57 이런 맥락에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혐오표현금지법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박경신, 『표현·통신의 자유: 이론과 실제』, 논형, 2013, 4장 참조.

58 <세계인권선언>, <자유권규약> 등 국제규범에 혐오표현 금지조항 삽입을 주도한 국가들이 주로 전체주의 국가들이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점에 대해서는 Coleman, 앞의 책, 15면 이하 참조.

59 이러한 고민이 시작된 최초의 의미있는 성과로는 S. Coliver (ed), Striking a Balance: Hate Speech, Freedom of Expression and Non-discrimination, Article19 and Human Rights Centre, University of Essex, 1992 참조. 본격적인 고민은 2000년대 들어 시작되었다.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he OSCE Representative on Freedom of the Media and the OAS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Joint Statement on Racism and the Media”, 27 February 2001;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Venice Commission), Re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Religion: the issue of regulation and prosecution of Blasphemy, Religious Insult and Incitement to Religious Hatred adopted by the Venice Commission at its 76th Plenary Session (Venice, 17-18 October 2008); Amnesty International, “Written Contribution to the Thematic Discussion on Racist Hate Speech and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Organized by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28 August 2012; Article 19, 앞의 글(“Prohibiting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김지혜, 앞의 글, 41-43면, 68-73면; 이준일,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방식”, 『고려법학』, 72, 2014, 79-80면; ; 김민정, “일베식 ‘욕’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온라인상에서의 혐오표현에 대한 개념적 고찰”, 『언론과 법』, 13(2), 2014, 157-158면 참조.

60 Article 19, 앞의 글(“Prohibiting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29-40면에서 제시한 선동 테스트(Incitement Test)를 기본틀로 삼아 다음 문헌으로 보충한 것이다. “Rabat Plan of Action on the prohibition of advocacy of national, racial or religious hatred that constitutes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emanating from the four regional expert workshops organised by OHCHR, in 2011, and adopted by experts in Rabat, Morocco on 5 October 2012, 22단락;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General Recommendations No. 35: Combating Racist Hate Speech, 26 September 2013, Fortieth Session, Supplement No. 18 (A/40/18), 15단락; E. D. Guyton, “Tweeting ‘fire’ in a Crowded Theater: Distinguishing between Advocacy and Incitement in the Social Media World”, Mississippi Law Journal 82(3), 2013, 725-728면; T. Mendel, “Study on International Standards Relating to Incitement to Genocide or Racial Hatred, For the UN Special Advisor on the Prevention of Genocide”, 2006, 44-61면; 김지혜, 앞의 글, 69-71면 참조.

혐의 실제 가능성'에 관한 요건을 강화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⁶¹ 만약 “청자로 하여금 신념, 의견, 입장에 근거한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요건으로 삼는다면, 부주의하거나 진지한 의도·의지가 없는 혐오표현은 규율 범위에서 제외될 것이다.⁶² 독일 형법에서처럼 국민계몽이나 예술, 학문 등의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혐오표현 형사범죄화의 지나친 확장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 위협의 가능성이 높은 ‘폭력선동’만 규율하자는 제안도 있다.⁶³ 미국에서 표현에 대한 국가개입의 척도로 활용되어온 ‘브란덴버그 심사’(Brandenburg Test)에 따르면, “어떤 고취가 즉각적인 불법행동을 자극하고 만들어내는 것을 지향하고 있고, 그러한 행동을 선동하거나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을 때”⁶⁴에만 국가 개입이 정당화되고, 이 때 불법행동은 폭력이나 공공질서의 문란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⁶⁵ 이 기준을 적용하면, 차별·적의에 대한 선동은 법규제에서 제외되고, 폭력에 대한 선동만 범죄화된다.⁶⁶ 이렇게 되면 규제범위가 상당히 좁아지고 더욱 명료해지며, 폭력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사상의 시장을 통한 해결을 시도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국가 개입의 정당화도 한결 쉬워진다.⁶⁷ 이러한 요소들은 형법 구성요건에 가능한 한 자세히 포함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법적용과정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을 적용하면, 청중의 행위를 촉발하는 직접적인 선동,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반복적이고 노골적인 혐오표현,⁶⁸ 혐오표현 구제신청에 대한 보복 등에 대한 형사범죄화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⁶⁹

61 이주영, 앞의 글, 218-222면 참조.

62 Article 19, 앞의 글(“Prohibiting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21-22면. 비슷한 취지로 Amnesty International, 앞의 글(“Written Contribution to the Thematic Discussion on Racist Hate Speech and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3-4면; T. Mendel, “Study on International Standards Relating to Incitement to Genocide or Racial Hatred, For the UN Special Advisor on the Prevention of Genocide”, 2006, 45-49면 참조.

63 비슷한 취지에서, ‘세계관선동’과 ‘행위선동’을 구분하는 이재승, “선동죄의 기원과 본질”, 『민주법학』, 57, 2015, 152-153면 참조. 세계관선동이 어떤 태도나 사고체계를 갖도록 선동하는 거라면, 행위선동은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선동하는 것을 뜻한다. 혐오표현을 차별표현, 혐오표현, 증오선동, 테러리즘선동, 제노사이드 선동 등으로 구분하자고 제안으로는 N. Ghanaee, “The Concept of Racist Hate Speech and its Evolution over time”, Paper presented at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s day of thematic discussion on Racist Hate Speech 81st session, 28 August 2012, Geneva, 5면 참조.

64 Brandenburg v. Ohio, 395 U.S. 444, 447 (1969).

65 S. G. Gey, “The Brandenburg Paradigm and other First Amendments”,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12(4), 2010, 983면; 이부하, 앞의 글, 198-199면 참조.

66 사실 <자유권규약> 제정 당시에도 초안은 ‘폭력선동’에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었다. 같은 취지의 의견으로 Coleman, 앞의 책, 75-80면; Mendel, 앞의 글9“Does International Law Provide for Consistent Rules on Hate Speech”), 428면; P. Molnar, “Responding to Hate Speech with Art, Education, and the Imminent Danger Test”, in Herz and Molnar, 앞의 책, 193-196면 참조.

67 Molnar, 위의 글, 193-196면 참조.

68 유럽에서는 사이버상의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왔다. Council of Europe, Addi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concerning the Criminalisation of Acts of a Racist and Xenophobic Nature Committed through Computer Systems, ETS No. 189, 2003.1.28.; ECRI General Policy Recommendation No.6: Combating the dissemination of racist, xenophobic and antisemitic material via the Internet, Adopted by ECRI on 15 December 2000; C. D. Van Blaricum, “Internet Hate Speech: The European Framework and the Emerging American Haven”, Washington and Lee Law Review 62(2), 2005, 781-808면 등 참조.

69 이준일, 앞의 글, 79-80면 참조.

테스트 1: 맥락 (폭력, 차별에 관련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

- 폭력 등 사회적 충돌이 있었는지 여부
- 제도화된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
- 청중과 소수자집단이 서로 충돌한 역사가 있는지 여부
- 차별금지법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이 있는지 여부
- 미디어가 얼마나 다원적이고 공정한지 여부

테스트 2: 발화자

- 발화자의 공식적 지위
- 발화자의 권위와 영향력
- 특히 정치인, 공직자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다뤄져야 함

테스트 3: 의도

- 혐오를 고취하는 데 관여하려는 의도적인 노력
- 소수자집단을 특정하려는 의도적인 노력
- 자신의 발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인지 여부
- 표현의 확대범위와 반복성

테스트 4: 내용

- 무엇을 고취하고 있는지 여부: 폭력 선동 여부 등
- 청중은 누구인가?
- 차별선동의 대상(소수자집단)은 누구인가?
- 표현의 자극성, 도발성, 직접성의 정도
- 배제사유: 예술적 표현, 종교적 표현, 학술적 의견, 공적 담론에 기여하는 의견인 경우
- 명백한 허위인지, 가치판단의 문제인지 여부

테스트 5: 표현의 범위와 크기

- 제한된 청중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
- 표현의 전파 수단
- 표현의 강도와 규모: 반복성, 전파 범위 등

테스트 6: 해악 발생의 가능성

- 차별, 폭력, 적대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요청인지 여부
- 화자가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
- 청자가 실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
- 소수자집단이 실제로 차별을 겪고 있는지 여부

<표 3> 선동 테스트(Incitement Test)⁷⁰

70 Article 19, "Prohibiting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Policy Brief)", 2012, 29-40면; "Rabat Plan of Action on the prohibition of advocacy of national, racial or religious hatred that constitutes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emanating from the four regional expert workshops organised by OHCHR, in 2011, and adopted by experts in Rabat, Morocco on 5 October 2012, 22 단락;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General Recommendations No. 35: Combating Racist Hate Speech, 26 September 2013, Fortieth Session, Supplement No. 18 (A/40/18), 15단락; Guyton (2013). Tweeting 'Fire' in a Crowded Theater: Distinguishing between Advocacy and Incitement in the Social Media World. Mississippi Law Journal 82(3). 725-728면; Mendel (2006). Study on International Standards Relating to Incitement to Genocide or Racial Hatred, for the UN Special Advisor on the Prevention of Genocide. 44-61면; 김지혜 (2015). 앞의 글, 69-71면 등 참조.

위의 표는 혐오표현 중 형사처벌이 가능한 증오선동을 판단하는 기준을 예시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형사범죄화로 인한 남용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범위를 좁히면 좁힐수록 형사범죄화로 해결가능한 혐오표현의 범위도 줄어들고, 이 범주에 들어오지 않는 나머지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 되어버린다는 딜레마가 있다.

한편, 형사처벌의 범위를 적절하게 한정하려면 혐오표현의 근거가 되는 차별금지사유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차별받고 억압받아왔기 때문에 적대와 폭력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고 특별한 보호가 요청되는 소수자집단에 대한 혐오표현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영국 평등법(Equality Act 2010, 4조)의 차별금지사유는 연령, 장애, 성전환, 혼인 및 동성결혼,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성별, 성적 지향 등 8개지만,⁷¹ 형사처벌되는 혐오표현은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 3개 사유에 근거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차별금지사유가 19가지에 달하는 한국의 경우⁷²에도 적용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형성적 조치의 중요성과 국가의 책무

혐오표현에 관한 여러 보고서들은 혐오표현 근절을 위해서는 포괄적(holistic, comprehensive)이고 다층적인(multi-layered)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⁷³ 형사범죄화, 차별구제, 민사구제, 형성적 조치 등의 여러 규제방법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범죄화 또는 차별구제가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해도, 형성적 조치는 여전히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조치다.⁷⁴ 형사범죄화는 어차피 혐오표현의 일부에만 적용되며, 그나마도 혐오표현을 근절하는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사실상 어렵다. 차별구제나 민사구제가 좀 더 유연하고 넓은 범위를 포괄하겠지만,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형사범죄화와 마찬가지로다. 따라서 형사범죄화나 차별구제가 있더라도, 뿌리박힌 차별관념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형성적인 방법들을 통해 “사회적 관행”을 만들어 혐오표현의 물질적 기반 자체를 없애야 한다.⁷⁵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표4와 같이, 입법부, 정부, 지자체, 사법부, 공공기관, 교육기관, 사기업, 정보통신심의기관, 인터넷 서비스사업자들이 각각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들 기관들이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며 청와대/국무총리실에서 총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부처 간 조정 업무에 나서야 한다. 범 정부 차원의 ‘혐오표현 기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혐오표현의 문제는 차별 문제의 일종이고, 편견 해소, 차별금지, 증오범죄 대책 등과 긴밀히 연동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혐오표현 대책은 곧 ‘차별금지 기본정책’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다.

71 예서는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속성으로 age, disability, gender reassignment, marriage and civil partnership, pregnancy and maternity, race, religion or belief, sex, sexual orientation 등이 제시되어 있다.

72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의 3).

73 “Rabat Plan of Action on the prohibition of advocacy of national, racial or religious hatred that constitutes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emanating from the four regional expert workshops organised by OHCHR, in 2011, and adopted by experts in Rabat, Morocco on 5 October 2012, 24-29단락; Amnesty International, 앞의 글(“Written Contribution to the Thematic Discussion on Racist Hate Speech and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8-9면; 이주영, 앞의 글, 212-213면 등 참조.

74 같은 취지로 Cortese, 앞의 책, 156-159면 참조.

75 Baker, 앞의 글(“Hate Speech”), 73, 75면; Baker, 앞의 글(“Autonomy and Hate Speech”), 151면; Braum, 앞의 책, 9장; A. Harel, “Hate Speech and Comprehensive Forms of Life”, in M. Herz and P. Molnar (ed), The Content and Context of Hate Speech: Rethinking Regulation and Respons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322-324면 등 참조. 규제반대론에서는 대학 등에서의 혐오표현 규제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한다. 대표적으로 N. Strossen, “Regulating Racist Speech on Campus: A Modest Proposal”, Duke Law Journal, 1990, 562면 이하 참조.

<p>I. 국가인권위원회</p> <p>1. 인권정책</p> <p>- 정책 권고, 기관별 자문 및 대책 지원, 연구 및 정책 대응</p> <p>2. 인권침해 구제</p> <p>3. 인권교육·홍보·협력</p> <p>- 인식제고 교육 및 캠페인, 교육, 시민·인권단체와의 협력, 언론사, 기업 등과의 협력, 심의기관과의 협력</p> <p>II. 입법부</p> <p>1. 관련 입법 추진</p> <p>2. 정책 및 교육</p> <p>III. 정부·지방자치단체</p> <p>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p> <p>2. 혐오표현 관련 정책 수립</p> <p>3. 혐오표현 관련 교육</p> <p>4. 조례 제정을 통한 혐오표현 예방</p> <p>IV. 사법부</p> <p>1. 법률 해석·적용에 있어서 혐오표현에 대한 이해 증진</p> <p>2. 국제법규범의 적극적인 수용 추진</p> <p>V. 공공·교육기관</p> <p>1. 학생인권증진기본계획</p> <p>2. 법·제도 및 정책</p> <p>3. 지원 및 구제 방안</p> <p>VI. 사기업</p> <p>1. 직장의 자율적 조치</p> <p>2. 직장 내 지원 정책</p> <p>VII. 정보통신 심의기관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p> <p>1. 방송통신위원회</p> <p>2. 방송통신심의위원회</p> <p>3. 언론중재위원회</p> <p>4. 자율규제기구</p> <p>5. 인터넷서비스사업자</p>
--

<표 4> 혐오표현에 대한 기관별 대응정책⁷⁶

이 때 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인권위는 직접적인 집행기구는 아니지만, 혐오표현에 관한 문제의식을 고취시키고 국가, 지자체 등 관련기관들을 지원하고 압박하여 혐오표현 정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 지자체 등과 마찬가지로 ‘차별금지정책’의 일환으로 혐오표현 정책에 접근해야 함은 물론이다.

76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홍성수),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2016, 261-284쪽.

V. 나아가며

다시 강조하지만, 혐오표현 정책은 혐오표현 형사범죄화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혐오표현금지법안만 몇 차례 발의하고 철회되었던 것은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관점과 전략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형성적 조치가 혐오표현 규제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형사범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입법이 필요하지만, 형성적 조치는 새로운 법 제정이나 개정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더욱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혐오표현금지정책이 혐오표현금지법으로 수렴되어서도 안되겠지만, 차별금지법 제정 자체에 매몰되어도 안되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혐오표현금지법이나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을 일소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전략적 선택지이거나 그 결과일 뿐인지,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닌 것이다.

마지막으로, 형성적 조치는 특정한 누구의 책무라기보다는 국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추진하여 사회 곳곳에서 스며들도록 해야 하는 것들이다. 다소 진부한 얘기지만, 범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대책 수립은 제대로 수립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가짜뉴스 대응 사례와 대항적 발화의 의미

퀴어 퍼레이드 폭력 사태와 KBS심야토론 대응 중심으로

이종걸 (무지개행동)

0. 들어가며

올 한해 전국적으로 7차례 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4월 전주를 시작으로 6월 대구, 7월 서울, 9월 인천, 제주 그리고 10월 부산, 광주였다. 서울은 19회째. 대구는 10회째. 제주와 부산은 2회째. 전주, 인천, 광주는 올해가 첫 번째 축제였다. 지난 2000년 이후로 열린 횟수만 따지면 총 36번의 퀴어문화축제가 한국에서 열렸다. 성소수자들의 향연이 지난 18년간 총 36회가 열렸지만, 주류 언론과 방송에서의 퀴어문화축제 관련 보도는 여전히 축제에 대한 찬반 논쟁위주로 조명한다. 언론은 대구에서 축제의 행진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세력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보도 보다는, 인천에서 조직위를 비롯한 축제 참가자들이 12시간 넘게 겪은 혐오폭력과 혐오범죄에 대한 분석 보다는 행진 무산, 강행 등으로 인한 폭력 사태에 집중한다.

10월 27일 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의 주제는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이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제1회 광주퀴어문화축제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2018 차별금지법제정촉구 평등행진 '우리가 간다'가 끝난 지 1주일 된 주말 밤의 토론 주제로 시기적으로만 본다면 활동가 입장에서는 참 고맙고 반가운 기획이었다. 그렇지만 결과만 놓고 본다면 KBS의 공영방송으로서 성소수자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은 고마우나, 주제와 관련한 부실한 기획과 준비로 인해 토론은 공영방송의 이름값을 못했다고 평할 수밖에 없다.

오늘은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내 폭력사태와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방송 토론 등 쏟아지는 수많은 증오 섞인 혐오 발언들, 혐오폭력에 노출된 성소수자들, 기울어진 언론보도의 현실 속에서 그 동안 어떻게 이 과정을 정리하고, 견뎌냈고, 그리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왔는지 그 순간 순간의 기록과 대응을 통해 알아보자.

1. 2018년 퀴어문화축제 집회 방해 및 혐오폭력 사례 및 대응 정리 - 대구, 인천, 제주, 광주 사례를 중심으로.

'보수의 땅' 고소 사태로 번진 대구퀴어축제. 6월 10일 경향신문의 한 기사 제목이다. 대구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단체가 시위 및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동성로 음란 퀴어는 청소년 에이즈 폭증의 원흉이다' '동성애 축제 웬 말이나. 대구청년 다 죽인다' 등의 팻말을 사용하자, 대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차별적·혐오적 표현과 왜곡된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조직위 관계자는 "(반대 단체 측의) 표현 방식이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악의적이고 반인권적인 혐오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6월 23일 축제 중

로 후 7월 6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23일 퍼레이드를 1시간가량 방해한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모 목사 등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집회 방해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집회 시위 방해 금지')로 다음 주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열린 10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현장은 대구에서 지난 몇 해 동안 경험했던 현장과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당일 서울 경기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조직된 '레알 러브(진짜 사랑)'라는 이름을 버스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행사 전부터 알려졌고, 이들은 5시에 예정된 행진을 막기 위해 행진이 지나는 거리에 집단적으로 앉아 기도하며 결국 행진을 방해했다. 조직위는 예정된 행진로를 변경하여 행진을 마쳤고, 이는 결국 이후 소송으로 이어졌다.

9월 8일 인천 퀴어문화축제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다. 당일 현장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오롯이 담아 정리된 언어로 말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힘들다. 참가자들의 증언, 기사, 성명 등에서는 '집단적 린치', '일방적 테러', '혐오범죄', '폭력사태' 라는 표현들이 주를 이루었다. 당일 축제를 방해하기 위해 현장에 오전 7시부터 도착한 세력들은 행사 진행을 위해 설치하는 무대 세팅 등을 집단적으로 물리력 등을 발휘하여 행사 진행 자체를 막았고, 이후 행사 주변 경로를 모두 막은 뒤, 행진을 진행하기로 한 오후 4시 30분부터 행진로 앞을 가로 막았다. 5시간 동안의 대치 속에 집회 신고 기한인 오후 8시가 넘자 경찰은 깃발을 내리고, 인도로 행진 하는 조건을 행진 협상의 조건으로 내걸었고, 조직위원회는 혐오세력의 도를 넘은 불법행위와 폭력, 폭언, 행진 방해에 집회 참가자들을 계속해서 노출할 것인가 이들의 요구에 굴복할 것인가 선택해야 했다고 한다. 조직위원회는 경찰을 믿고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경찰은 "도로를 통제해 퍼레이드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마지막 약속까지 저버렸고, 참가자 행렬은 마지막 행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악다구니와 욕설, 물리적 폭력에 그대로 노출됐다. 조직위는 결국에 9시 20분경에 애초 목적지가 아닌 수정된 목적지에 도착한 후 축제 폐회를 선언했다.

조직위는 9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자에 대한 대규모 혐오범죄 방조·조장한 인천 경찰청과 동구청을 규탄했다. 조직위는 이후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뒤 10월 3일 인천퀴어문화축제 혐오범죄 규탄집회를 열었고, 10월 10일 인천퀴어축제 당시 반대 세력으로 기독교단체인 인기총·예수재단·성시화운동본부·인천퀴어축제반대대책본부를 지목하고, 폭력·모욕·집회방해 등 혐의로 이 단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또한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김승섭 교수(보건정책관리학과) 연구팀은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당일 현장에 있었던 이들의 경험을 온라인으로 조사했다. 총 응답자수 305명 중 피해사례 가운데 '비하발언'이 298명(98%), '길 가로막힘'(290명, 95%), 욕설·조롱·비하(262명, 86%) 등으로 나타났다. 축제 참가 이후 심리상태에 대한 질문에 우울증상에 215명(70%), 급성스트레스장애 257명(84%),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예측 202명 (66%) 으로 나타났다. 둘 다 중복 응답이 가능한 질문이었다. 또한 성소수자 관련 심리상담 전문기관에서는 축제 참가자들의 신청을 받아 트라우마 대처 심리 상담을 진행했다.

제주 퀴어문화축제와 광주 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도 행진 방해 시도와 축제 참가자들에 대한 혐오발언 등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제주 퀴어문화축제에서는 행진 진행 차량에 반동성에 목회자가 의도적으로 차량 밑으로 들어가 차량의 진행을 방해했으나, 혐오세력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GMW연합 블로그는 오히려 축제 당일 29일 오후 6시께 '제주 퀴어문화축제 차량 목회자 밀고 지나가 119 출동, 의식 불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제주퀴어문화축제 차량이 사람

을 덮쳤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광주퀴어문화축제는 오후 3시에 행진을 시작했고, 행진을 진행하는 구간 내내 행진 선두 차량 앞에 행진을 방해하고자 하는 반동성에 세력들이 수십 차례 차량 앞을 가로 막거나, 차량 위를 올라서는 등의 행동이 이어졌다. 이러한 행동으로 행진은 예정된 행진로를 변경하여 행진을 마쳐야 했다. 이외에도 서울, 부산 내 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도 반동성에 혐오선동 세력 등의 축제 방해 행동들이 있었지만, 우선 현재 잘 알려져 있거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했다.

2. KBS 엄경철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방송 대응 정리

10월 27일의 KBS 엄경철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편이 토요일 밤에 방송된 직후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28일(일), 29(월) 각각 규탄 성명을 발한다. 두 단위 공통적으로 비판한 것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찾아나가야 할지 고민하자는 취지의 토론 속에서 ‘성소수자의 존재에 대한 찬/반토론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르는 논의 흐름이었다.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성소수자 존재를 부정하는 패널을 불러 혐오발언을 전시하게 한 것을 보더라도 해법에 대해 토론하고자 하는 취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구성으로 인해 보편적 인권을 부정하는 발언과 가짜뉴스가 여과 없이 송출되면서 토론회 방송의 목적이 정말 무엇인지, 제작진의 기획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토론 하자는 자리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오가는, 차별금지법의 법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채 차별금지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가짜 뉴스의 내용들이 전파되었다.

이후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1월 초에 이 방송과 관련한 공개 질의서를 KBS 제작진과 시청자위원회, 성평등센터에 발송했고 지난 22일 제작진과 성평등센터로부터 답변을 받아 27일 언론에 공개했다. 제작진은 언론연대에 "부적절한 패널에 대해서는 기획단계부터 검증을 강화하고, 사실 확인 과정을 개선하는 데 대한 연구를 하겠다"며 "소수자 인권 보호를 고려해 토론 접근 방식과 기준에 대해서도 더 깊은 고민을 하겠다"고 답했다. 제작진은 그러면서도 "동성애 찬반이라고 지적한 부분들은 차별금지법 토론 중 양측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차원이었지 존재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토론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언론연대는 제작진의 해명을 수용한다면서도 "동성애 찬반에 대한 토론이 예상되는 의제들이 3개 중 2개였던 건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계몽이 아닌 방송의 공적 책무다"고 지적했다.

방송 이후 무지개행동과 차제연은 이후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노조, 미디어 오늘 등 언론 관련 단체 및 언론사 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언론과 방송에서 성소수자 인권문제와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다뤄야할지, 혐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실 속에서 미디어는 어떻게 다뤄야 할지 등에 대해서 고민을 나누고 대응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의 중심은 언론이 소수자 인권 문제, 혐오 문제에 대해서 언론 조직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존재하고, 이해가 부족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을지, 기계적 중립이 아닌 인권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였다. 사전 공부와 충분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한 내용들이 나왔고, 이후 같이 대응을 모색할 수 있는 토론회 등을 준비하자고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3. 퀴어문화축제를 정치적 논란, 이슈화 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대항적 전략

퀴어문화축제는 이제 수도 서울의 축제가 아닌, 전국 주요 광역시에서 개최하는 성소수자 대중들의 큰 축제의 날이다.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 투쟁, 2011년 서울학생인권조례 과정 등 이후로 성소수자 혐오/차별 선동 세력이 주요 보수 기독교 세력 등을 배경으로 삼아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 행동을 조직적으로 진행해왔다. 퀴어문화축제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2014년 신촌에서 개최된 서울퀴어문화축제 이후 지속적으로 조직적, 집단적 방해 행위와 반대 집회 등의 개최 등으로 축제 자체가 문제이며 논란의 중심이라는 반대세력의 주장들이 있어왔고, 언론의 보도 역시 이러한 찬반 구도가 논쟁의 중심으로 보도했다.

그렇지만 이후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서울광장에서 4년 연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는 동성애자만의 운동이 아닌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성소수자 운동의 결이 드러나야 하는 시대적인 요구들, 다양한 세대, 다양한 지역에서의 살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운동으로서 보여야 한다는 욕구들이 드러났고, 이는 전국 광역 도시 중심의 퀴어문화축제 개최 운동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부 보수 기독교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성소수자 혐오/차별선동 세력은 전국 각지에서 준비되는 퀴어문화축제 개최 및 확산을 막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아 각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 세력들과 연결하여 각종 방해 행위 및 집단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집회 전이나 현장에서 가짜 뉴스를 활용한 시위 및 캠페인이 이뤄지고 있고, 퍼레이드를 막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버스 및 참가자 조직 (청소년 등 봉사 활동 명목) 하여 대구와 인천과 같은 행진 방해 및 폭력 사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축제를 조직하고 개최하는 각 지역 단위의 조직위에서는 축제 개최를 위한 장소 사용 승인 및 축제 개최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기 위한 사전 준비 및 현장 대응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퀴어문화축제의 참가자들에게 축제는 성소수자 등 다양한 소수자들이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현장이기에 혐오 세력 등의 사전 동의 없는 촬영과 혐오성 짙은 온라인 게시물 행위 등에 가장 민감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혐오 발언, 혐오폭력에 대해 위축되는 것이 현실이다. 축제 개최 자체가 운동이고, 축제 참여 자체가 활동이 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이에 맞서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기도 할 것이다.

현재 각 축제 조직위가 집회 시위 방해 행위 및 폭력 행위 등에서는 법적 대응으로 진행하고 있고, 인천의 경우는 참가자들의 정신적 외상에 대해 심리 상담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조직위, 축제를 참여하고 있는 여러 성소수자 인권 단체, 각종 시민 사회단체, 인권 관련 기관 및 모임이나 각각 개인 부스 참가자들, 다양한 축제 참가자들과 관련 하여 현실적인 업무를 담당 하는 관련 공무원이나 경찰 등 까지를 볼 때 각각의 역할들 마다 축제를 위해 기여하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통의 기억, 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이후 그것을 기억하는 과정까지 충분히 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축제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SNS 상 등으로 개별적으로 후기 등을 올리고 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좋았거나 힘들었거나 아쉬웠거나 어려웠던

다양한 이야기들, 순간들을 서로 나누는 자리들이 기존의 커뮤니티 조직에서도 쉽지 않고, 축제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들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2000년도 초반에서 축제가 우리나라에서 기획된 배경, 그리고 내년이면 20년이 되는 역사를 갖고 있는 축제가 정치적으로 지속적으로 논란의 중심으로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전체적인 목표를 공통으로 갖는 것이 우선 더 중요해 보인다. 그러한 목표 속에서 축제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이거나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가들을 각각의 단위가 서로 나누고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운동진영 만이 아니라도 참여하는 참가자등 성소수자 전반에서 축제에 대한 공통의 전체의 목표 속에서 지금의 혐오와 차별 선동의 세력에 대한 대응, 대항적인 움직임을 주체적으로 만들고 관련 주요 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화롭고 안전한 축제를 요구할 권리는 축제를 참여하고, 준비하는 축제를 원하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은 우리 사회의 주요 기관, 언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올해 축제가 종료된 이후 이러한 맥락을 짚고자 했던 <19년째 이어진 ‘편견·갈등’...퀴어문화축제 과제는?> (2018년 10월 21일, KBS뉴스)의 기사는 주요했다. 혐오/차별 선동 세력들이 기독 언론을 통해 흘리고 있는 체육관에서 축제를 개최하라는 식의 주장들을 잘 막기 위해서라도 전반적인 현재의 축제에 대한 각 조직위별, 그리고 이를 참여하는 성소수자 인권단체들부터 우선 각 단위 안에서라도 축제 관련 폭넓은 평가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4. 개인들에게 미치는 혐오발언, 폭력에 맞서기 위해서 - 지극히 사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

인천 사태를 경험한 후 이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았다. 축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장소를 떠나지 않는 혐오/차별 선동 세력들과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참가자들 사이에서 서로 악수하고, 어깨를 치며 격려하는 사람들은 경찰들뿐이었다. 어찌됐든 현장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 되도록 서로의 감정선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현장을 벗어나고 싶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던지고픈 입에 담기 힘든 표현들은 마음 속 한 구석에 숨겨 놓을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부분은 사실 며칠 째 이어지다가 인천 쿼퍼가 있는 후 바로 다음 주에 1박2일 동안의 여행(대체휴무)을 다녀오면서 조금 숨을 돌려 문제에 직면하기보다는 외면하고픈 마음을 가지기도 했고, 돌아오는 길에는 그래도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것으로 마음을 정리하며 일상을 보내기도 했다.

그 순간에 도움이 되었던 활동 중에 하나가 인천 쿼퍼 다음 날 일요일에 참여했던 지보이스 연습이었다. 토요일 하루 힘들었던 일상이 바로 다음 어떤 일상으로 이어졌는지, 그 힘들었던 순간을 충분히 이야기하거나, 잊어버릴 수 있는 순간들이었는지를 볼 때 나에게 지보이스 연습은 나에게 돌아갈 곳이 있는 행복한 일상이 존재했던 것이다. 오롯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꾸미거나 위협받거나 걱정할 것이 없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나에게 존중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일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자존감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닌 세상 상황들로 인해 무시되고, 모욕을 당했던 경험이었는데 법과 제도의 규율로 구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감정을 다스리고 정리하는 것은 어떻게 풀어야 하는 것일까요도 중요 했다. 물론 현재 규범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는 그러한 혐오표현의 수위나 목적 등 세부 피해 상황 등을 판단하여 정리하여 그 내용에 따라 규제의 방식도 달라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해결하기 복잡한 감정 등을 스스로 회복하고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없거나, 힘을 가지기에 부족한 환경일 때는 무엇이 필요할 것인지? 기본적으로 운동에서 고민해야 할 조건들은 무엇일지 다시금 생

각해보게 된다. 우리 소수자 그룹들은 이러한 감정에서 충분히 자신을 객관화 할 수 있는 힘들이 존재하는 것인가 고민해봐야 한다. 그것을 결국 개인의 몫으로 놔두지 않도록 고민하는 것이 운동의 역할일 것이다.

5. 나가며

가짜뉴스, 혐오표현, 혐오발언 등에 대한 관심과 규제에 대한 고민들이 올해 들이 더욱 회자되고 있다. 실제 대응을 해야 하는 단위나 이를 경험하는 당사자들의 사이에서 혐오표현 및 범죄 방지를 위한 제도 수립은 현실의 문제다. 그러한 지점에서 놓치지 않거나 함께 고려해야 할 것들은 그러한 표현들이 쏟아져 나오는 정치적인 배경,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고 이를 운동의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그러한 순간을 견디고 살아가고 있는 개인에 대한 감정적 정서적 유대가 가능한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너무나도 개별적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안에서, 커뮤니티가 정말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 다만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룹들은 존재하고, 그것도 서서히 그 조직안에서도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로 머리가 아프기도 하다. 그렇지만 그것이 있고 없음의 차이는 정말 크다. 혐오/차별 선동 세력들은 이러한 커뮤니티의 붕괴를 정말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 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가짜뉴스 대응 사례와 대항적 발화의 의미

가짜/진짜 프레임을 넘어서, 대항적 말하기로 반차별 운동의 힘 찾기 난민 혐오 대응 운동을 중심으로

고은지 (난민인권센터)

한국이 난민제도를 시행한지 스물다섯 해 째가 되는 2018년, 이른바 ‘제주예멘’ 이슈를 통해 난민에 대한 혐오(정치)가 수면 위로 올랐다. 제주예멘이슈 이전의 ‘난민’은 한국적 맥락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로 고정되어 있거나 미디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시혜적이고 수동적인 대상으로 대중에 각인되어 있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예멘 사람들의 상황이 가짜 뉴스와 함께 언론, 청원, 온라인 짤 등을 통해 확산되자, 난민은 일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까지도 전화되었다. 제주예멘이슈가 논란이 된 무렵 SNS에서 “나는 유엔난민기구에 후원하지만, 한국에 난민은 반대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며 길거리모금 등으로 난민을 소비할 수는 있지만, 도저히 함께 살기엔 어려운, 즉 난민과 비난민의 뒤들린 관계를 확인하게 된 것이다.

1. 대항적 말하기의 문제적 예들

제주예멘 이슈가 불거지기 전까지 한국에서 소위 ‘난민 지원’을 하고 있는 일부 단체에서는 비참의 이미지를 뛰어넘고자 “난민은 자신의 신념을 지킨 이들이기 때문에 용감한 사람들이다”라거나, “김대중과 아인슈타인도 난민 이었다” 또는 “난민은 대부분 변호사나, 교수, 의사 등 사회적 계급이 높은 엘리트다” 따위의 메시지를 확산했다. 이는 난민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수식하거나, 특정한 가치판단의 기준에 부합하는 존재로 고정 시킨다는 면에서 ‘비참한 존재나 시혜적 존재’로 고정되어 있던 기존의 수식을 뛰어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메시지는 또 다른 ‘난민다움’을 재생산한다는 측면에서 해롭다.

제주예멘 이슈 이후 불거진 난민에 대한 가짜뉴스와 혐오의 확산에 있어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메시지는 “우리도 난민이었고, 위기 상황에 큰 도움을 받았다” 또는 “우리도 언제든지 난민이 될 수 있다”, “한국이 국제적 위상을 생각하여 난민을 보호해야한다”등 이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여전히 ‘우리’에 난민은 배제되고 ‘타자’로 분리되어 있다거나, 도덕적 책임을 쉽게 강조한다는 점에 있어 문제적이다. 이러한 도덕적 수식은 인권의 불온성을 잠식할 위험이 있다. 인권의 도덕화는 정치적 권력관계의 문제를 삭제함으로써 인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 시킨다.⁰¹ 도덕의 이데올로기는 난민에 대한 사회의 집단적 부끄러움을 감추는 파시즘적 기제이다.⁰² 책임의 단어를 차용한 메시지에는 난민과 비난민의 관계가 결여되어 있고, ‘보호’가 포함된 메시지는 시혜적 의미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난민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말하기로서는 ‘대항적’ 의미를 상실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01 정정훈, 인권과 인권들, p68

02 김형수, 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 p169 중 ‘장애인’ 주어를 ‘난민’으로 변경하여 인용

2. 난민의 인권을 향한 대항적 말하기에 있어 '정부'의 의미와 위치

법무부는 한국사회에서 난민에 대한 '가짜의 낙인'을 꾸준히 남용해 온 발상지이자, 에스더기도운동 등이 만든 가짜 뉴스의 수혜자이다. 지난 5월 2일 예멘난민과 관련한 대대적인 언론보도 이후 확산된 정부의 가짜난민 논거는 이미 법무부가 계획하고 있었던 예멘 국적에 대한 무사증폐지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좋은 디딤돌이 되었다. 난민법 시행 이후 매년 1만 여 건에 가까운 심사 적체와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린 공무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법무부는 전문적 심사 이행에 대한 대안 마련 보다, 일단 난민을 '남용적신청자'로 구분하며 행정절차를 축소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법무부는 미등록체류를 양산하는 이주정책 운용의 근본적 결함은 간과한 채, 난민신청자 중 미등록체류자가 있다는 통계를 근거로 2016년부터 '난민 중 불법체류자 때려잡기'를 강화했다. 난민에 대한 낙인을 노골적으로 앞세운 결과 난민은 더 자주 구금되었고 추방되었으며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었다.

무엇보다 가짜 낙인이 극명히 드러나는 것은 지위 심사 과정이다. 난민은 심사 과정에서 관련법에 따라 난민 사유 진술에 대해 신뢰성 평가를 받고 난민지위를 확인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은 진술보다는 사람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하는지'가 전제가 되어 심사가 진행된다. 특정 국적이나 종교, 성적체성 및 본국에서의 사회적 지위나 학력, 한국에서의 체류 및 출입국 정황 등에 따라 심사관의 개인적 가치 판단이 접합하며 한 인간이 평가 된다. 최근 불거진 아랍권 출신 난민에 대한 허위면접조사 조작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심사관은 자신의 심증에 따라 난민의 목숨을 좌지우지 할 수 있으므로 이미 인간이 아닌 신의 위치에 있다.

정부가 자행하는 혐오에 대항한 말하기를 모색함에 있어 현실의 난민이 봉착한 아포리아는, 인권은 시민의 권리에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것임에도, 실제로는 어떤 개인이 이러한 인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특정한 나라의 시민 내지 국민의 자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⁰³ 이미 자국으로부터 퇴출되어 사실상 무국적의 상황에 처한 이들은 자신의 생명과 자유를 다시 담보 받기 위해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심사절차를 유일한 길로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수감이나 채워진 채로 구타당하며 추방되거나, 영원히 유령인 채로 살아가는 것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이미 한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국가권력이 절대적으로 심판하는 시스템에서 우리는 어떤 대항적 말하기를 고민해야 하는가? 어떻게 대항적 말하기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

3. 대항적 말하기의 시도

(1) '안전한' 장소의 점유

인권의 근본적인 박탈은 무엇보다 세상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장소, 자신의 견해를 의미있는 견해로, 행위를 효과적 행위로 만드는 그런 장소의 박탈로 표현되고 있다.⁰⁴ 그러므로 난민인권을 향한 대항적 말하기에는 필연적으로 안전한 장소의 점유에 대한 고민을 수반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국가권력에 의해 전적으로 자신의 인권을 확인받아야하는 아이러니와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인정자 어느 체류지위를 막론하고 인간이 살기위해 최소한의 전제가 되어야할 생존권마저도 가로막혀 있는 현재의 상황은 이들의 목소리를 더욱 삭제하는 토대가 된다. 정착을 위한 언어교육 하나

03 James Ingram, "What is a 'Right to Have Rights'?", 2008 / Arendt,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04 Arendt,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p.296 [전체주의의 기원1, 532쪽]

제대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항적 말하기가 불가능한 토대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는 것은 중요하다. 어떤 장소를 점유할 것인가? 어떻게 장소를 점유할 것인가? 또 안전한 장소의 점유 목적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은 거듭 필요할 것이다.

- 안전한 장소를 위한 구성요소: 익명성(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난민다움 등 ~다움이 없는, 난민과 비난민을 구분하지 않는, 비계획, 비의무, 자발성, 상시적, 경험의 공유, 위로-즐거움 또는 유익함, 존중의 관계, 듣고-말하기, 번역-언어적 제약이 없는, 접근의 제약이 없는, 서로 힘을 합치기, 모였다 흩어지고 흩어졌다 모이는, 갈등과 중재-또는 대안이 있는

- 실제 시도들: 에세이 프로젝트, 25명 참여작가 40여 편 기고, 500여권 시민 배포

한계: 에세이프로젝트 목적의 한계로 결국 난민의 목소리를 전시하는 방향으로 왜곡됨. 단체와 개인의 권력관계 속에서 애초에 살아있는 목소리 기고는 불가능한 지점이 있음. 상시성이 확보되지 않고, 관계가 단절 되어 있음.

- 이후 시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 - 익명의 게시판 / 지역사회 거점공간들 등을 통해 일상의 차별을 공유하고 공통의 과제를 만들기

(2) 거리로 나온 목소리와 연대의 확산

한국정부의 문제와 제주 예멘 이슈 이후 확산된 논란에 분개하여 지난 8월 4명의 난민이 거리로 나와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법무부와 본국대사관 또는 커뮤니티 등에 의해 박해받거나 보복당할 가능성과 반대세력의 집중적인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최장 29일의 단식농성을 통해 한국사회에 자신의 목소리를 알렸다. 이들은 자신의 난민인정과, 공정한 심사, 출입국의 모욕적 태도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였다. 당사자와 10여 회의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기획하였고 폭넓은 시민사회 연대를 모색하였다. 정부협상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발언의 기회가 차단되었으나 당사자가 직접 관련부처와 만나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았다. 단식 마지막날 국가인권위원장 면담 등을 성립시켜 국가인권위원회가 난민의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 7월에는 인천 송파구의 한 중학교에서 난민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중학생들의 호소가 있었다. 과정에서 전교조, 염수정 추기경, 조희연 교육감 등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난민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이후 9~10월 등에는 집회를 통해 당사자들이 난민법개악 저지나 문화제 등의 이슈에 목소리를 함께 높였다.

한계: 단식농성과 중학교의 사례는 교육감과 인권위원장 등의 동원을 통해 법무부가 예외적인 심사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전체 정책의 개선의 모색은 없이 심사의 공정성을 위배한 점. 단식농성, 집회 등의 가시화된 요구 이후에 출입국 또는 신원불명의 사람들에 의한 신원과 소재 파악. 법무부의 보복성 심사에 대한 우려 등이 현실화.

(3) 혐오/차별의 양상과 원인, 혐오범죄 및 정치의 구체적 상황과 효과, 사회적 의미의 해석

소위 제주예멘난민이슈로 정의되는 일련의 사건들과 난민혐오의 양상 그리고 한국사회 소수자혐오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또는 잠재해 온 모든 위기의 측면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한국적 맥락에서 난민 혐오가 확산되었는지 등을 낱낱이 밝힌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고발하며, 법무부가 왜 난민을 가짜로

낙인찍기 시작했는지, 가짜뉴스가 왜, 생성, 확산이 되는지 등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고 직/간접적 원인을 밝힌다. 또한 난민의 혐오는 여러 소수자의 혐오 의제와 교차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예: 트랜스젠더, HIV에이즈 등) 난민에 대한 두려움 등이 어떻게 난민반대의 논리로 연결되는지를 톺아보고, 사회적으로 호소되는 불안을 두텁게 해석해낼 필요가 있다. 현재 조직적으로 추동되고 있는 혐오 정치의 양상과 이러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난민의 삶과 우리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부의 이주정책 분리통치방식이 어떻게 우리안의 인종주의를 강화하고, 선주민과 이주민의 갈등을 확장시키는지 등에 대한 언급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최근 피스모모는 이명박정권부터 박근혜정권까지 전국적,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던 나라사랑교육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평가하며,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된 안보교육이 우리사회에 어떻게 적대와 혐오에 기여해왔는지를 교육적 맥락에서 분석하였다. 교육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혐오가 발생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여러 요인들을 분석하는 시도들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4) 난민과 비난민의 연결고리, 접점의 확장

비난민의 일상적 차별이 어떻게 난민의 차별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예: 일자리문제) 차별의 공통분모를 찾기. 차별의 공통분모가 없다면 다른 결의 연결고리를 고려해볼 수 있다. 예컨대 핸드폰 소비에 양산되는 콩고난민의 이야기 등을 통해 비난민의 일상이 어떻게 난민의 일상을 침해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5) 혐오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법적 제재

상반기 이후 난민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 범죄 등이 확산되며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 이를 위한 법적제재와 경고 조치 등을 진행. 난민을 대상으로 혐오범죄를 저지를 경우 좌시하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6) 난민정책 운용의 의미와 현실, 난민법 개악의 의미와 문제 등의 논의

한국사회의 난민정책 운용의 역사적 계기 및 의미와 한계, 난민법의 의미와 난민법 개별 조항이 어떻게 난민의 일상적 권리를 침해하는지 공유. 난민정책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측면의 사회적 의미를 해설예: 문재인대통령의 유엔연설) 난민법 개악의 문제와 개악 시도가 낳는 사회적 효과 등의 교육.

(7) speaker의 확장

대항하는 말하기에 다양한 주인공을 초대했다. 난민당사자와 활동가를 제외하고도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에 글을 청탁하였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악플이, '그렇거면 너네 집에 데려가라'는 악플이어서 집에서 함께 사는 사람의 글도 싶고자 했다. 말하기의 내용과 말하기를 담을 그릇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었다. 프란 등을 통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거나, 카드뉴스, 전단지, 기사, 에세이 기고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의 목소리가 다양한 주제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페이스북에서는 몇몇 페미니스트가 모여, '경계없는 페미니즘'이라는 페이지를 개설하였다. 난민과 관련한 일상적 경험과 견해를 담은 31개의 다양한 글이 기고되며 시민의 자발적인 활동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8) 자원의 거점을 찾기

한 번에 우리의 메시지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서는 넉넉한 자원이 필요하다. 거의 상시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인권단체에서 이를 고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가장 많은 자원이 모인 거점을 찾아보았다. 결과적으로 국가인권위와 함께 협업을 했고 난민관련전단지를 전국에 약 4만 여장 공유하고, 콘텐츠를 홍보하여 10만 뷰를 달성할 수 있었다. 자원의 거점을 찾는 과정에서는 결국 정부기관과 협력을 하게 되는 지점이 발생했다. 정부기관과의 협력은 자원의 확보 뿐만 아니라, 메시지 확산의 다른 측면에서도 필요한 점이 있다. 다만, 정부는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여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역할 확대에 대한 설득 등의 절차가 지난하기도 하다. 향후에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영역내의 다양한 자원의 정보가 활발히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9) 권리의 언어 확장하기

난민신청 앞에 ‘가짜’와 ‘불법’의 수식이 붙을 때 ‘권리’가 수식이 되거나, 권리를 수식할 다양한 언어를 발굴한다. 예컨대 아렌트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에 유럽의 많은 국적 없는 사람들, 권리 없는 사람들이 겪은 인권의 박탈 경험에 입각하여 인권의 역설을 제기하고, 인권 속에 ‘권리들을 가질 권리’라는 새로운 범주가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⁰⁵ 권리들을 가질 권리는 현재 난민의 무정부적 상황을 정확히 짚어주는 언어이다. 또 권리의 언어를 확장함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헌정이다. 인권선언 등은 단순한 문장들이 아니라, 문장의 의미를 넘어 역사의 과정이 담긴 기록들이다. 예를 들어 인권선언에 명시된 권리를 주장하며, 인류가 역사에 남긴 인권의 의미를 다시 짚어볼 수 있다. 한편 이 권리를 생성하고 확인하는 중요한 행위자는 정부이기 전에 사람이다. 권리들을 가질 권리 또는 인류에 속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의 권리는 인류자체로부터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0) 비틀거나 거부하거나 다시 질문하거나

정체성이 아닌 상황으로 비틀기. ‘난민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결론을 자꾸만 비집고 들어가 틈 내기 전략. 피교육자가 계속해서 난민을 하나의 집단으로 형상화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하기. 난민은 하나의 정체성으로 환원될 수 없고, 어떠한 특성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이야기. 한편 질문을 거부하기 전략도 있음. ‘난민은 왜 한국에 왔는지’ ‘난민은 누구인지’ 등에 대해 맥락에 따라 직접적으로 답을 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이미 질문 안에 배제 되어 있는 난민의 자리와 권리를 되묻고, 질문에 서린 권력위계를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이를 위해 과감하게 질문을 거부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었다.

‘나쁜 사람들’에 대항하는 말하기는 ‘좋은 사람들’이 아니다. ‘나쁜 사람들’에 대항하는 말하기는 오히려 ‘그래! 나쁜 사람일 수도 있다’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난민인권을 향한 대항적 말하기의 목표는 가치판단을 넘어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느냐에 있다. 개인은 다른 개인의 서로장소가 되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에, ‘권리’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 중요하다. 난민을 친구나 이웃으로 호명하고자 하는 시도에도 마찬가지다. 난민을 굳이 친구나 이웃으로 호명하지 않아도, 난민을 굳이 환대하지 않아도, 난민을 굳이 직접 만나지 않아도, 난민에 굳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난민의 권리는 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05 진태원, *을의 민주주의*, 173쪽

4. 과제

(1) 출신국, 지역, 언어와 문화, 정체성 등을 뛰어넘는 연대의 가능성

: 단식농성의 한계는 특정 지역 출신의 이슈가 배타적으로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개인의 경험은 전체적인 것이지만, 어떻게 함께 힘을 보탬 것인가?라는 측면에 있어서 난민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교육은 생존권 해결의 과제와도 연결되므로 현재의 토대에서는 즉각적 연대의 가능성이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

(2)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혐오세력의 활동을 저지시킬 것인가?

: 최근 한겨레보도와 같은 작업이 지속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직적으로 난민당사자에 혐오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법사위에 난민법 폐지를 주장,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주예멘사람들을 추방하도록 움직이는 이들을 실제로 어떻게 저지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체시킬 수 있을까? 이에는 동성애/여성혐오사이트 폐쇄 운동 등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여전히 인력의 한계를 느낀다.

(3) 조직적인 혐오선동에 대해서 매번 대응 할 수 없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예: 최근 양주도서관의 이슬람 강연 무산 건 등)

(4) 거리로 나온 난민에 대한 정부의 보복성 활동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5) 생존권의 확보, 정부를 경유하지 않은 커먼즈의 영역을 어떻게 확장해나갈 것인가? 모든 장소와 기회로부터 차단된 난민이 '난민'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한국사회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6) 가짜낙인을 주도하는 법무부를 어떻게 실제로 변화시킬 것인가?

‘국경은 민주주의의 반민주적 조건이다’- 발리바르

‘투쟁하는 자, 패배할 수도 있다. 투쟁하지 않는 자, 이미 패배했다’ -women-in-exile

실패를 함께하는 대항적 말하기, 다음을 만드는 공간과 관계

- 피해자의 위치를 이탈하는 발달장애여성의 발화 운동 중심으로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1. 말할 자격⁰¹

“잠시만요. 이제 내가 말할게요.”⁰² 발달장애여성이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한다. 말을 제지당하며 해석당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말의 권력에서 힘을 가져보기 어려웠던 발달장애여성이 통제하는 상황과 관계를 제지하고 첫 마디를 떼기 시작한다. 과연 주변사람들은 어떤 표정을 지으며 반응할까? 어쩌면 끝까지 말을 이어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 한마디. 시작의 경험을 갖기 위해 100번의 심호흡을 내쉬었거나, 결국은 대화에 실패하여 친구와 실패담을 나눌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 대화는 성공이 목표라기보다 100번의 심호흡과 실패담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지도 모른다. 이 하나의 사건으로 권력관계가 바뀌진 않겠지만, 말을 시작한 장애여성은 말이 가로막혔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할지도 모른다. 변화는 긴 시간 작지만 크게, 천천히 빠르게 일어났다. 발달장애 여성이 주어진/허락된/배제된/규정된 자리를 이탈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그렇다면 이제 대화의 맞은편에 선 이들이 다른 대답과 관계 맺기를 준비할 차례다.

발달장애여성의 어떤 말은 공적 공간에서 과도하게 노출되며 해석 당한다. ‘아프다’ ‘성폭력 이다’ ‘폭력이다’와 같이 피해를 드러내는 말들은 비교적 사회에 쉽게 수용된다. 발달장애여성의 정체성을 취약하다고 규정하는 사회에서, 피해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말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한 말에만 마이크를 허락하는 것. 화자의 자격을 물었던 정체성은 마이크를 허락하는 조건으로 변화한다. 나이가 어려서, 장애가 있어서, 난민이라서, 학력 때문에, 성소수자니까... 정체성으로 소수자를 차별하는 사회적 구분은 말할 자격을 의심하고 통제하는 정당한 근거로 작동한다. 또 어떤 말을 해도 ‘나이가 어려서, 장애가 있어서, 난민이라서, 학력 때문에, 성소수자니까’라는 손쉬운 대답이 메아리로 돌아오기 일쑤다.

많은 장애인 성폭력예방교육과 인권교육 매뉴얼엔 “이럴땐 이렇게 말해요” “싫다고 얘기해요.” “크게 소리쳐요” “내 감정을 표현해요”라고 쓰여져 있다. 그러나 이때의 발화는 약자로서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 가해자에 맞서는 상황에 국한된 것이지 일상적이며 평등한 관계를 상상하고 있지 않다. 피해를 이야기할 때도 침묵하거나 비발달장애인의 이

01 2018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4번의 대중강좌를 진행했다. 1강 <차별하면 안된다는 쉬운 말 대신>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미류 차제연 공동집행위원장은 ‘차별을 말할 때에도 자격을 묻는것이 차별받는 사람의 목소리는 더 들리기 어렵게 된다고 이야기 했다. 소수자의 발화를 통제하는 방식으로서의 자격문기와 제도적 자격 박탈이란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며, 공론의 장에 등장하기에 자격을 검증받아야 하는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언론과 논쟁의 프레임을 변화 시키는 한계를 고민하게 된다.

02 장애여성공감이 2005년에 만든 정신지체장애여성을 위한 성교육 매뉴얼의 제목이다.

해하기 어려운 표현으로 발화하는 발달장애여성의 언어는 이해받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발달장애 여성 피해자는 온전히 ‘사실’을 논리적이고 ‘신빙성 있게’ 진술 해야만 한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동안 지속되는 수사·재판 기간 동안 낯선 사람들의 어색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에 지속적으로 대답해야 한다. ‘장애특성, 피해자 다음, 취약성, 폭행과 협박, 항거불능’을 갖춘 일관된 진술로 과정을 통과해야⁰³ 하는 것이다.

말의 자격을 의심받을수록, 특정한 발언만 허락될수록, 당사자를 규정하는 말이 강화될수록,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이고, 이때의 말하기는 더욱 중요해진다. 사라 아메드는 책 <시스터 아웃사이드> 추천사에서 로드의 말하기가 가진 중요성을 ‘누군가로서 말하기 speaking as, 공개적으로 말하기 speaking out, 토해내는 말하기 speaking from, 누구의 편에 선 말하기 speaking with, 누군가에게 말하기 speaking to⁰⁴’로 설명한다. 로드는 ‘어떤 자격 speaking as-혹인 여성으로서 말하기-가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보여주며 ‘자격’as이란 제약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으며, 제약이 열림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말의 자격을 의심받고, 검열 당하고, 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지독한 사회적 차별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위치에 놓여진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차별을 설명하는 말들은 커지고 더욱 힘을 가진다. 들어야 하는 위치에 놓여졌던 사람들이 입을 열 때, 말할 자격을 보장받았던 이들은 당황할 것이다. 발달장애여성이 주어진 자리를 이탈하는 것은 말하기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2. 장애여성 언론과 제도에 등장할 때

1) 교육, 치료의 대상으로만 등장하는 제도

열심히 외친 말들은 어떻게 법과 제도 안에 반영되어 갔을까? 대안을 만들어 갈 때 사회복지, 의료전문가들의 참여는 필요하지만,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남겨지지 않기 위한 긴장은 계속된다. 전문가주의에 맞서서 경험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참여하도록 만들라고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기도 한다. 투쟁으로 일군 언어와 제도들이 권력에 의해서 전유되지 않도록 제도에 참여하며 비판하는 미션을 운동은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정책에서 장애여성은 여전히 취약한, 이중차별이라고 피해의 강도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등장한다. 교육현장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관심학생, 더봄학생으로 장애학생을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인권은 안전과 보호담론에 갇히게 되고, 더봄학생으로 분류된 장애청소년은 가/피해자로만 공적 공간으로 소환되는 경험을 주로 하게 된다.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선 사회적 취약성을 강조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방식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2) 강력사건과 미담소재로만 등장하는 언론

미디어에 등장하는 장애인의 이미지는 어떠한가? 장애여성공감은 2016년부터 미디어가 장애와 성폭력을 다루는 방식으로 모니터하고 비판하는 시민감시단 활동을 해오고 있다. 시민감시단 활동은 언론을 비판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장애여성 인권운동의 지지자로서 함께 서고 말하는 운동을 지향하고 있다. 올해 모니터한 결과를 쟁점별로 정리하였

03 배복주(2011), 칼럼 ‘도가니를 넘어 변화될 세상을 꿈꾸며’ 참조

04 오드리로드, <시스터 아웃사이드>, 17쪽

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⁰⁵ 1)장애인을 무능력, 취약한 존재로 극대화하여 표현하는 문제, 2)○○ 사건, 도가니, 노예 등 자극적 네이밍 사용, 3)피해 상황에 대한 자극적인 묘사 및 신상공개, 4)장애인 학대기사에서 당사자의 관점으로 사건을 구성하고 언어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들의 언어로 구성하는 문제, 5)비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을 의인화하는 문제, 6) 미담 기사를 통해 장애를 극복/부정해야하는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 7)장애인의 삶을 감동의 도구, 특수화하는 시각, 8)권리의 주체가 아닌 특별한 혜택이나 시혜의 대상화하는 문제, 9)장애인에 대한 공포감을 조장하는 표현, 10)잘못된 통계 분석과 활용의 위험성을 문제적인 내용으로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표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1> 장애인을 무능력, 취약한 존재로 표현한 기사의 예

날짜	언론사	기사내용
2017.3.3	SBS	B씨는 사리 분별력과 인지 능력이 현저히 낮아 신고할 생각을 못 했고
2017.4.7	매일신문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점 을 이용해
2017.4.19	파이낸셜 뉴스	발달장애인들은 판단력 부족에 의사표현 능력이 떨어져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 의사소통이 문제, 대처능력이 떨어져
2017.6.13	뉴시스	발달장애인은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지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범죄 피해 또는 인권침해에 취약한 편
2018.6.22	KBS	제 나이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발달장애 3급입니다. 발달 장애 여성은 본인이 성폭력을 당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 힘듭니다.
2017.4.23	YTN	상대적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계속되고 있지만,
2017.5.4	헤럴드 경제	신 씨는 통장 관리가 어려운 장애인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점을 범죄에 악용했다.

<표 2> 장애인 미담 기사의 예

날짜	언론사	기사내용
2017.2.22	헤드라인 제주	불굴의 의지 보여준 '올해의 장한 장애인' 찾습니다
2017.3.7	국민일보	휠체어와 의족에 의지 해야 하는 처지에 낙망할
2017.3.7	국민일보	1급 장애 극복 하고 대학 강단에 선 박경순씨
2017.4.20	KBS뉴스	도전으로 신체의 한계를 극복 하고 지금은 희망의 전도사 가 된 불굴의 장애인
2017.6.7	영남일보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주상희씨는 '똑바로 보고 싶은데 내 눈이 옆으로... 상처받지만 똑바로 걸어가고 싶어요'
2017.7.4	자유아시아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2018.3.13	연합뉴스	'위대한 엄마' 이도연의 아름다운 완주 "포기란 없다", 몸이 망가지더라도 절대~
2018.3.13	중앙일보	그에겐 팔 대신 날개 가 있다
2018.3.19	채널A	장애 없는 장애인 올림픽
2018.3.19	서울경제	패럴림픽이 보여준 인간승리 드라마
2018.4.20	동아일보	장애를 이겨낸 패럴림픽의 영웅
2018.4.26일자	OBS	행복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애 라고 하는 것은 저한테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8.4.26일자	OBS	장애를 딛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2018.8.6일자	스포츠 서울	장애는 극복만 하면 사라져요





05 아래의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여 정리 하였습니다. 변은희(2018), '언론보도 및 일상생활 모니터링 쟁점 분석 및 제언', <장애와 반성폭력 시민감시단 「새로고침」토론회>. 2018.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대단해요’라는 말 이면에는 ‘장애=무능’이란 편견이 깔려 있다.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이나 해냈다’라는 관점은 장애극복 서사에 가깝다. 극복서사를 강조할수록 개인의 노력과 극복이 강조되어 장애인인 처한 인권현실과 차별을 보지 못하게 한다. 미담은 장애인의 삶을 감동을 주는 소재로 전락시켜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다시 강화시킬 수도 있다.⁰⁶ 무능화, 치료, 극복 등의 관점 모두 다 장애인을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라 부르긴 어렵다. 그러나 장애를 부정적인 조건으로 보고 문제의 원인으로 귀결시켜, 문제의 원인을 장애인을 차별하는 구조에서 찾아야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잊게 만든다. 그리고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화를 통해 가짜뉴스가 발생하고 자라게 하는 환경을 형성한다. 따라서 제도와 언론을 비판하는 것과 동시에 대항적 말하기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소수자들이 구축하고 있는 서사와 문화를 드러내는 것, 그것을 사회의 언어가 아닌 커뮤니티 언어로 말하는 것,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며 연대하는 활동은 비판을 넘어 다음 세상을 상상하게 하는 힘이다.

3. 장애여성공감 대항적 말하기 활동 사례로 고민해 보는 전략들

[사례] 발달장애여성인권투쟁단 <반가워만세>

구분	주요 활동	
목표	발달장애여성인권운동이란 무엇일까. 발달장애여성이 활동에 대해 새롭게 쓰기 자기표현 언어, 구체적인 대응 방법 만들기 공동의 활동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기 피하기, 무시하기, 싸우기 등 타겟과 목표에 따라 맞서는 활동 만들기	
2018년 상반기 활동	일상적인 몸의 차별을 이야기 하기 (월경, 속옷, 몸에 대한 이야기)	
	나의 권리를 말하기	
	퀴어퍼레이드 참여 준비와 진행 -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담은 물건(굿즈)를 제작하기 -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공부하기, 만날 준비	
2018년 하반기 활동	우리가 해온 말, 새로운 말 찾기	  
	다양한 말하기 방법	
	활동 1. 투쟁의 방식 : 침묵하기 (반응하지 않는 것) 의 의미와 중요성 알기	
	활동 2. 캠페인 장소(천호공원) 에 있는 사람들 관찰하기 (모니터링)	
	① 어떤 차별의 말을 하는지 ② 어떤 차별적인 시선/표정 짓는지 ③ 어떤 차별의 행동 하는지	
	천호공원 1인 시위 준비	
	천호공원 1인 시위 진행	
	천호공원 1인 시위 평가, 굿즈 제작 논의 (एको백, 배지 등)	
반차별 운동의 다른 사례 보기, 변화라는 것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 생각해보기 다양한 방식의 반차별 운동 - 베네시티 건물(장공감 입주 건물)내 방법 고민하기, 엘리베이터 광고, 베네시티 건물 내 상가 방문, 건물 근처 지역 내 현수막 게시		

06 이진희. 2018. “장애여성 문화예술의 정치성과 인권: 실패하는 연습실, 삶을 살아보는 리허설, 세상을 바꾸는 투쟁” 『인권연구』 1(1): 201-240면.

1) 전략 1, 말할 수 있는 장소와 관계

발달장애여성의 자기표현은 주변인의 인정을 통해 비/가시화 되기⁰⁷때문에 대화를 할 때 눈치를 자주 살핀다. 장애 여성공감에선 경험적으로 발달장애여성이 전생애적으로 자주 듣게 되는 말을 3마이론 이라 하는데 하지마, 가지마, 먹지마가 그것이다. 하지마는 행동을, 가지마는 이동을, 먹지마는 욕망을 통제한다. 통제 중심의 소통은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와 같은 실패하지 않는 의사소통에 익숙해지기 쉽고, 관계와 공간에 대한 자기 통제력을 가지기 어렵게 한다.

그래서 발달장애여성에게 실패하면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근거로 다음을 만들 수 있는 장소와 관계가 필요하다. 발달장애여성이 장소를 가진다는 것은 제한적인 공간에서 이탈할 수 있는 관계를 넓히는 과정이기도 하다. 아래는 지체장애여성과 발달장애여성이 함께 활동하는 춤추는 허리 배우들의 이야기다.

“(공연창작 워크숍을 하면서) 상황에 맞게 생각해 보라고 하고 울고 싶으면 울고, 웃고 싶으면 웃고 그렇게 했었어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해요. 재할원 선생님들은 내가 똑똑해 졌다고 하고.. 밖에 나가면 대부분 뭔가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 해요. 옛날에는 말도 잘 못하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도 잘 못 걸고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먼저 말을 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옛날하고 달라진 모습이에요.”
(장애여성극단 춤추는 허리 배우 A 인터뷰)

“아 이상하게 몸이 여기 와 있어. 약을 먹어서 너무 힘든데, 이상하게 몸이 여기 와 있어. 나도 모르겠어.”
(장애여성극단 춤추는 허리 배우 B 인터뷰)

실패할 권리가 보장되는 공간, 그 실패의 타를 장애여성이란 정체성으로 돌리지 않는 공간. 불화하는 일상이지만 실패를 지지하는 안전한 커뮤니티다. 기존 사회의 역할을 답습하기도 하고, 역할 나눔과 약속 등의 새롭게 필요한 규칙을 만들어 나가기도 한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시간이다. 나 다운 내가, 우리를 만드는 시간이다. 자신으로서 존재하고, 환대받을 수 있는 공간을 아는 것, 존중받고 실패를 통해 다음을 약속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 그저 취미나 시간때우기로 보이는 이 작업에 참여하는 것은 진지한 정치적 선택이다.⁰⁸

<반가워만세>팀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 배우고, 협력하고, 종종 포기하고, 갈등하며 한 해 활동을 일궈왔다. 긴 시간을 두고 함께 해결해 가는 과정이야 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적 관계 맺기다. 함께 싸워 줄 동료와의 말하기를 통해 나의 경험도 새롭게 구성될 수 있다. 나의 어려움에 대한 해법을 말하긴 곤란했지만, 동료의 어려움엔 훈수 두며 참견도 해본다. 천호공원에 나가는 날 함께했던 활동가는 회원방에서 연습했던 호기로우미 긴장으로 주춤하기도 하고, 천호공원 행동을 마친 후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날카롭게 서로를 대하는 모습도 있었다고 한다. 그래도 천호공원에서 <반가워만세>팀은 행동했다.

우리의 상처는 고통을 지나 서로를 만날 때 자원과 힘이 된다. 차별하지 말라고 배웠던 말은 자기말로 풍성해졌다. “안전한 공원을 만들어라. 나이를 묻지 마라. 지나가는 사람 몸 뚫어져라 쳐다보지 마라. 임신했냐고 결혼했냐고 물어

07 박민영(2007) 「정신지체여성의 성폭력 생존 경험에 대한 연구 -지속적 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08 이진희. 2018. “장애여성 문화예술의 정치성과 인권: 실패하는 연습실, 삶을 살아보는 리허설, 세상을 바꾸는 투쟁” 『인권연구』 1(1): 201-240면.

보지 마라. 반말하고 나이 묻는거 실례예요. 사생활 묻지 마라. 시비 걸지 마라. 우리 몸 훑어보지 마라. 장애여성한테 혐오 차별 하지 마라. 차별하지 않게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무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과하는 마음으로 와서 교육받기. 차별받고 왔었지 차별 받았지 온 몸이 무거워. 사람들이 때리거나 차별하지 않았으면” 서로를 지지하며 갈등하는 관계 속에서 반차별의 언어는 다양화 되었다. 다양한 말은 장애와 나이, 장애와 섹슈얼리티 등과 같이 차별이 발생하는 다층적인 구조를 드러낸다.

2) 전략 2, 새로운 동료와 만나며 관계와 공간을 넓히기

관계와 공간을 넓히는 것은 단체 내부에서 밖을 향해가는 것만은 아니다. 연대하는 단체들 서로를 향해가기도 한다. 올해 장공감 20주년 기념식에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게이코러스 <지보이스>와 장공감 지적장애여성 합창단 <일곱빛깔 무지개>은 콜라보 공연을 했다. 첫만남은 2011년 장애여성학교 졸업식. 이후 꾸준히 지보이스 공연을 관람하며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져 갔던 거 같다. 첫 콜라보 제안은 작년에 지보이스가 먼저 해주었지만,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노래 워크숍만 지보이스 단원이 찾아와 진행했었다. 그리고 20주년을 맞이한 기념식엔 장애여성공감이 지보이스에게 초대장을 보냈다.

“지보이스와 무지개는 소수자로 살아가는 삶을 담은 노래와 가락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순간의 힘을 믿고, 세상에 맞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시대에 불화하는 이들로 구분되고 차별받아 왔지만, 우리는 세상에 긴장을 주고 변화를 주는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습니다.(중략) 소수자인권운동 단체로서 장공감, 친구사이 오랫동안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한 시간을 무지개와 지보이스의 합창공연으로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연의 완성도는 우리에게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닐 것 같습니다. 편하게 함께 해주세요.” - 장공감이 지보이스에게 보낸 공연 요청서의 일부

그리고 지보이스 연습실이 있는 친구사이 사무실을 두 차례 방문하며 영어발음 콩크레취레이션을 ‘1)콩---레이션 2) 콩그레이션 3) 콩그레취레이션 4) 콩그리에이션 5) 콩-----션 6) —,— 7) 모르겠다’ 맞춰가며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익힌다. 지보이스 단원들은 장애여성에 대한 에티켓과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존중하는 관계맺기로 무지개를 만난다. 어떻게 만나고 대화해야 하나 질문으로 시작하는 만남. 평등한 관계는 관계가 쌓일수록 질문과 과제가 더 늘어나는 것 같다. 힘들 때 연락할 수 있는,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관계. 집이나 복지관이 아닌 내가 가본 친구사이 사무실이라는 공간, 가끔은 찾아갈 수 있는 새로운 공간. 무지개 회원님들에게 새로운 동료가 생겼다.

3) 전략 3, 커뮤니티 유머로 대항문화를 만들기

우리는 절망만 공유하지 않는다. 관계와 공간 속에서 다양한 삶의 방식을 드러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쌓여 가고, 동료와의 활동이 ‘기억’으로 남는다. 지보이스의 음악감독 재우님은 ‘농담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야말로 최고의 연대’라는 인상적인 말을 했었다. 일상을 겪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특징들은 커뮤니티 개그가 된다. 우리끼리만 재밌는 이야기들은 규범과 보편을 시시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끼리만 웃을 수는 없지 않은가. 장애여성공감의 잡지 「공감」에선 장애여성운동의 하위문화를 제대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게 웃겨’라는 코너를 만들기도 했다.

4) 전략 4, 장애인 운동의 점거, 난입하여 대항적 말하기의 공간을 넓히기

진보적 장애인 운동의 대표적인 전략은 점거를 통한 말하기이다. 장애인 운동의 이 전략이 합법인가 불법인가를 구분하기 전에 장애인 거주시설로 집단적으로 분리되었던 역사에 비추어서 바라봐야 한다. 파업이나 로비와 같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칠만한 전략을 찾기 어려운 상황도 동시에 이해해야 한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장애인의 몸은 '이상한, 불편한, 불쌍한, 불행한, 불가능한' 등의 부정적 규정으로 사회에서 감추어야 하는 몸이었거나 동정을 전시하는 방식으로만 비춰졌다. 따라서 장애인의 점거는 사회가 통제했던/허락된 공간을 떠나는 것, 자신의 몸으로 목소리를 드러내는 전략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전략을 사회가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지지하는 이들도 있지만, 동정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이것은 난입이고 침탈일 수 있겠으나 싸우는 주체들에게 즐거운 소풍이거나 노동, 연대일 것이다.

5) 전략5, 동료 시민에게 역할을 주기

장애인을 결핍과 무능, 돌봄이 필요한 의존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나라에서 평등한 동료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 주어진 자리를 이탈하기 위해선 관계의 맞은편에서 있는 이들의 준비가 필요하다. 혼잣말이 아니라 누군가와 소통하기 위해선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공동체에서 조금 다른 지원이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사람, 다른 몸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머물러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 인구학적 수치나 등록률, 예산과 서비스를 지원할 복지대상자가 아닌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료로서의 위치말이다. 발달 제한된 공간안에선 관계도 한정될 수 밖에 없다. 삶을 공명하는 상호적 관계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료 시민의 관계는 만들어지기 어렵다.

나는 어떤 동료로서 상대방과 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동료시민으로서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차별들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라는 과제 없이 동료시민이 되긴 어렵다. 동료가 되려면 사소한 것부터 평등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가 생길 때만 강조되는 권리가 또 다른 차별임을 기억하라고 장애로 정체성을 특수화하지 말라고, 사회 구성원의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특정한 소수자가 동료 시민되기를 어렵게 만드는 사회라면 또 다른 동료 시민들도 그에 대해 공감하고 분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를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동료시민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행동도 필요하다. (이렇게 써내려가니 참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다) <반가워만세>팀은 입주해 있는 상가를 돌며 홍보를 했었다.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땡동의 <학교에서 무지개길 찾기 가이드북>도 동료가 되기 위한 준비를 일러주는 길잡이다.

6. 새로운 전략, 차제연 운동에서 대항 말하기

- 그곳에 가면 차제연이 있다. 차제연의 장소
- 반차별로 크로스, 평등으로 파워업 할 수 있는 관계와 공간이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운동
- 말하기와 실패는 다음을 만드는 과정, 반차별 내공을 함께 기르기는 운동

소수자 혐오 대응과 국가의 역할

한필훈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팀)

최근 우리 사회에서 혐오표현이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단순히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6년에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를 의뢰하였고, 올해는 「혐오표현 예방 및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을 바탕으로 필요한 정책 권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혐오 문제와 관련한 위원회의 그간 내부 논의는 ‘혐오표현의 규제’를 ‘금지하는 규제’와 동일시하고, 형사처벌과 행정규제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머물러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규제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다는 의미로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형성적 규제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형성적 규제가 이제까지 없었던 전혀 새로운 방식이어서 낯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홍보, 캠페인, 인식제고, 기반마련, 토대형성이라고 부르면서 규제와 구별해 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내용을 형성적 규제라고 부르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성수 교수님의 규제론, 즉 금지하는 규제와 형성하는 규제로 구분하고 사상의 자유 시장과 표현의 자유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므로 국가의 시장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금지의 측면에서만 접근했던 한계를 벗어나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다만, 일반 국민들은 아직까지 국가기관에 의한 규제를 금지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인권위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언급할 때는 형사처벌이나 행정규제를 의미할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그 밖의 형성적 규제나 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까지와 같이 익숙한 표현인 홍보, 캠페인, 인식제고와 같은 용어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홍성수 교수님도 과거 형성적 규제라는 용어를 쓰시다가 이번 발제문에서는 지지하는 규제라고 쓰고 보충적으로 형성적 조치라고 설명까지 덧붙이신 것을 보면 아마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거나 규제 반대론자들과의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날의 혐오표현은 우리 사회가 겪어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형태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권위는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현존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표현의 내용에 의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비슷한 취지에서 국가가 특정 가치와 사상을 지지하는 것도 표현과 사상의 자유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입장은 표현의 자유를 국가의 폭력에 대항하는 국민의 무기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인권기구는 일종의 심판의 역할로서 스포츠 경기에서 룰을 정하고 국가권력이 그 룰을 어기는지 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것이 많은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인권기구에 요구되는 역할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국가의 권력과 폭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인간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다수자에 의한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 보다도 높습니다. 소수자 인권보호는 스포츠 경기에서의 룰만 지킨다고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은 공정한 게임의 결과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소수자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과 상처만 남길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그동안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혐오 대응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묶어 ‘혐오차별 대응 기획단’을 2018. 12. 10. 발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이기도 하여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혐오차별 대응 기획단’은 위원장 직속으로 두고 단장은 차별시정국장이 맡게 됩니다. 기획단을 위원장 직속으로 두는 것은 혐오문제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는 위원장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단 아래에는 5명 규모의 실무팀을 둘 예정입니다.

‘혐오차별 대응 기획단’은 사회적 요구에 대한 인권위의 응답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인권위가 단발성 권고나 의견표명과 같은 논평기구에 그쳤다는 내부적 반성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권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자로서 인권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혐오차별 대응 기획단’은 위와 같은 2개의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하는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앞으로 ‘혐오차별 대응 기획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많은 지지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션 3 인권을 시험 쳐서 받나요?

시험과 능력주의를 넘어 평등을 넓히자

사회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발제 1 인권을 바란다면 자격/능력을 증명하라고?

공현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토론 1 보편성과 차이 : 능력주의에 반대하는 페미니즘

장귀연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토론 2 능력주의를 넘어 평등세상을 만들자

- 장애운동이 차별에 맞서온 담론을 중심으로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을 바란다면 자격/능력을 증명하라고?

공현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메리토크라시, 테스트토크라시

한국은 아마도 전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시험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나라일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 제도를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라고 하는데, 아니다. 1958년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이 능력에 따라 불평등이 심화되는 암울한 미래를 설명하기 위해 이 용어를 썼을 때, 그 메리트는 그래도 꽤 넓은 의미의 능력이었다.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선 오로지 단 하나의 능력만이 필요하다. 요령을 터득하여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푸는 능력이다. 이것은 메리토크라시가 아니라 시험주의, 곧 테스트토크라시(testocracy)다.

시험이란 제도는 공정하지도 않지만, 설령 그것이 공정하다고 한들 최악의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그것은 극도의 긴장과 경쟁 속에서 인간성을 파괴할 뿐 아니라, 그 결과를 통해 한 사람의 능력에 대해 알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으며, 잘해야 가장 운이 좋은 인간들에게 더 큰 운을 가져다줄 뿐이다. 심지어 이 과정을 통해 운을 자신의 능력이나 권력으로 착각하게 되면 재판거래 같은 것이 생겨난다.

이관후, <시험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한겨레 2018년 11월 20일

2018년 봄,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면서 국회 앞에서 거리 농성을 하고 여러 활동을 하고 있던 중, 활동 소식을 전하는 단체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런 댓글이 달렸다. “고등학생들은 선거권 주려면 투표소에서 시험 쳐서 후보 이름이랑 공약 3개 이상씩 써서 맞추면 투표할 수 있게 하자.” 선거권을 나이 기준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뭐 시험이라도 치러서 부여해야 하느냐는 소리는 자주 들어봤지만 아예 구체적으로 저렇게 시험을 치게 하자는 소리는 처음 들어서 제법 신선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험으로 자격을 입증해야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사고방식의 표출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018년 겨울, 대학수학능력평가, 수능 시험 시즌이 왔다. 수능 시험은 우리 사회 최대의 정기적 시험 이벤트이자,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교육의 상징과도 같다. 수능 얼마 전부터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은 대학입시거부선언자를 모집하는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13명의 거부선언자와 함께 수능 시험일에 대학입시거부선언을 발표했다. 홍보 활동을 활발히 한 덕분인지 SNS나 언론 등에서 여러 반응들이 돌아왔는데, 매번 들어왔던 말이긴 하지만 유독 ‘수능 전과목 1등급 받고 서울대라도 합격하고 나서 거부한다고 해야 인정해 주지’, ‘공부 못 하는 주제에 거부한다고 하는 건 자기 변명’과 같은 말들이 기억에 남는다. 언론 인터뷰를 할 때도 기자들은 거부선언자들에게 성적을 물어보곤 한다. 체제를 비판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너희가 그렇게 목소리를 낼 만한 자격이 있는가’ 묻고, 시험 성적으로 자격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관후의 지적대로, 시험은 학교교육만이 아니라 온 한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되었다. 2018년 서울 교통공사에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공채로 입사한 정규직 직원과 공채 시험에서 탈락한 취업 준비생 등이 행정법원에 이를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있었다. 시험에서 탈락한 적이 있는 사람들까지 소송에 참여했다는 것은, 결국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 노동자들의 '죄'란, 똑같이 시험을 쳐서 합격하지 않았다는 것임을 보여준다.

오로지 기회의 평등만을 강조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체제인 '능력주의(meritocracy)'는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능력주의는 필연적으로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단'을 요구한다. 사실 능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적 상황과 기준에 따라 달라지고 모호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주의는 쉽사리 '능력이 있으면 성공한다'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은 능력이 있을 것이다'로 전환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능력주의가 정당성을 갖고 작동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객관적이라고 믿어지는 '평가 시스템', 시험이 있기 때문이며 시험에 따라 가시화되고 증명된 능력인 시험 성적 및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오로지 개인이 고립된 채로 시험지 앞에 앉아서 답을 적어내고 채점을 받는 과정은 그 자체가 개인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한다는 믿음을 주는 일종의 의식처럼 보인다. 이는 시험 결과에 따른 차별을 능력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결과라고 정당화하는 데로 이어진다.

최근 노동 현장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이나 학교교육에서의 문제들을 보면, 한국 사회가 평등과 인권을 논할 때조차도 '시험에 따른 자격/능력의 증명'을 요구하는 사회라는 평가도 과하지 않을 것 같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평등이 오직 시험에 응시할 기회의 평등이며 인권은 오직 공정한 경쟁을 할 권리가 아닌가 싶을 때가 있다. '존엄과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너의 자격과 능력을 증명하라. 되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험으로.' 이러한 논리가 우리가 마주한 우리 사회의 솔직한 태도 아닐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시험과 능력주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인권운동이 그 극복 방안을 고민해 보자고 제안하고자 한다.

보상 심리, 그리고 불신 사회

시험과 경쟁을 지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의 기억이다. 자신들은 이렇게 노력하고 고생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런 노력과 고생 없이 결실을 보(려 하)느냐는 불만이다. 자신들의 노력과 고생에 대해 인정받고 보상받아야 한다는 심리도 있을 것이다. 인지 부조화 효과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통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를 원하고 이를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잘 수용하지 못한다. 또한 자신들과 같은 노력과 고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일종의 '무임승차'라고 받아들이기까지 한다. 이는 극단적으로는 공공성 자체를 부인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 능력주의 담론은 '능력'보다도 '노력', 과정에서의 고생과 인내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연구가 있다. '노오오오력'이라는 냉소적인 신조어는 이런 경향을 방증한다. 이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학교교육에서든 노동에서든 개인에게 고통을 견디라고 요구하는 사회임을 반영한다. 물론 이 역시도 능력주의의 자장 아래 있는 것은 분명하다. 가령, 비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감수하고 일한 고통과 인내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시험이라는, 능력을 입증하는 시스템을 경유하는 노력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 천시와 지능·학력 숭배의 전통과도 연관되어 있다.

대한민국 사회가, 비록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투명성이 강화되었음에도, 불신이 강한 저신뢰 사회라는 것도, 평등 대신 시험이 강조되는 중요한 이유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관해서, 국회의원들이나 언론들이 나서서 기존 정규직 직원들의 친인척이 특혜를 보았으리라는 의혹을 제기한 사건을 보자. 대부분이 근거가 빈약한 의혹이었음이 드러났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나 학생부종합전형이 비판받는 근본적 이유가 교사의 평가나 학생생활 기록부 작성이 공정하고 정확하리라는 신뢰가 없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의 학생생활기록부 부풀리기나 시험 부정 의혹 사건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성토로 연결되고 있다.

이렇듯 한국 사회는 여전히 지연과 혈연과 돈·권력의 ‘빡’이 강하게 작용하거나, 그렇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다. 또한 교사든 공무원이든 교수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도덕적 권위를 인정받기보다는 의심과 불신의 대상이 될 때가 더 많다. 그러다 보니 비리와 특권, 주관이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할 방법을 선호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시험, 특히 개인이 각자 치르는 지필고사인 것이다. 실제로 능력주의는 과거 계급사회나 인맥에 의한 비리 등을 대체하면서 대두된 체제였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사실 대단히 능력주의적인 사회임에도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능력주의적이지 못하고 전근대적이라는 평가가 공존하는 상황이기도, 능력주의와 시험을 더 강화하자는 주장이 득세하고 있다.

평등의 경험과 정치적인 경험

짚어보면 다분히 사회심리학적 성격의 문제들이고, 또 대중이 ‘공정한 시험과 그에 따른 차별’을 요구하며 나서는 상황이 곤혹스러운 순간도 있다. 사실 나 역시 대학입시나 각종 ‘고시’ 등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대대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여전히 정석이라고 생각한다. 다수의 심리를 결정하는 것은 분명 제도와 구조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우리 사회가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사회적 장에서 평등보다도 능력과 자격에 따른 각종 차별을 경험하고 배우게 된다는 점에 주목해 본다. 학교에서는 노골적으로 ‘결과의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이 더 옳은 이념’이라고 가르치며, 시험 성적이 안 좋은 학생, 주류의 눈밖에 난 학생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경쟁의 논리와 부정행위가 나쁘다는 점을 가르치지만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어떻게 하면 학교나 일터나 사회 일반에서 자격을 따져묻지 않고 환대받고 평등한 존중을 받는 경험이 일반적인 것이 되도록 할 것인지, 국가에게 어떤 책임을 지게 하고 어떤 제도와 환경을 만들게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등이란 무엇인지, 공정한 경쟁과 무엇이 다른지 효과적으로 이야기하고 전달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개인이 경험하고 참아내야 하는 고통을 줄이는 것보다도 결부되어야 한다. 잠을 줄여가며 ‘노오오오오력’해야만 하는 현실, 서열화와 차별로 인한 고통 등을 감소시키는 것은 분명 제도의 개선으로 가능하다. 마치 스포츠 경기 관중들이 상당수가 일어서서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모두 일어서게 되는 것과 같은 과열된 경쟁 상황이 지금의 교육이나 일 자리 구직 환경의 모습이다. 복지와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조건을 변화시켜야 ‘억울한 사람들’의 보상 심리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권에 초점을 맞춘 인권운동의 활동 방향은 물론, 인권을 기준으로 한 교육 개혁의 방향, 교육과 노동 영역에서 평가의 방식과 보상 체계 등에 대한 인권적인 관점 등을 함께 고민해 보고 싶다.

두 번째로, 결국 능력주의와 시험 체제의 배경에는 각자도생과 자기 계발의 논리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를 깨기 위해

서는 물론이요,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정치적인 실천이 일반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능력주의에서 ‘능력’은 개인에게 속한 것으로 간주되고, 자기 계발(노력)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만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개인화된 능력을 입증하는 시험에 천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노동 조합이나 페미니즘운동 등 사회운동적 방식, 집합적 방식, 정치적 방식을 통한 해결은 그 자체가 일종의 ‘반칙’인 것처럼 여겨진다. 또한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이나 페미니즘운동 등 사회운동 역시도 ‘편견 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목표나 정의인 것처럼 요구하는 경향도 없지 않았다.

따라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끊임없이 원자화되고 각자도생하게 되어 온 삶의 조건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대단히 정치적인 실천과 운동을 하면서도 ‘운동권/정치권을 배격한다’고 말하고, 비정치성을 선언하며, 조직화나 권력의 생성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광경도 쉽게 목도할 수 있다. 일상 속에서의 정치의 부재, 정치적 경험의 부재가 결국 시험이 평등을 대신하고 보상이 권리를 대신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 어떻게 하면 정치적인 경험을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고 정치를 창조할지가 우리가 고민해야 할 과제일 듯싶다. 시민은 합리적인 개인이 아니라 지극히 사회적인 존재이고 연대에 의지하여 구성되는 존재이다. 대중이 ‘인적 자원’이나 ‘소비자’, 또는 ‘경주 선수’가 아닌 ‘시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경험은 무엇일까?

인권운동(또는 더 넓은 의미의 운동)이 어떻게 이러한 경험들을 만들어낼지, 제도를 바꾸고 사람들을 조직할지가 “인권을 시험 쳐서 받아야 하나?”라는 질문에 담긴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해답을 찾는 열쇠일 것 같다.

보편성과 차이 : 능력주의에 반대하는 페미니즘

장귀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1.

오래 전 얘기다. 나는 대학원 박사과정에 다니고 있을 때였고 친구는 회사에서 중간관리자쯤이었을 거다. 어느 날 친구와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친구가 자기 부하 직원에 대해서 말했다. “뭐라고 한 마디 했더니 그냥 물어버리잖아. 역시 이래서 여자랑은 일 못하겠어.” 내가 놀랐던 것은 두 가지였다. 우선, 그런 말을 한 내 친구도 여자였다. 그리고 나를 만날 때마다 중간관리자 역할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해대던 친구가 전에 다른 부하직원에게 불평했던 것이 기억났기 때문이다. 역시 상사인 내 친구의 나무람에 잔뜩 빠져있던 그가 술자리에서까지 ‘꼬장’을 부렸다는 얘기였다. 그때 친구는 “역시 이래서 남자랑은 일을 못하겠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꽤 오래 전 일이지만, 지금이라고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여자들은 일 처리에 책임감이 없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뻔질거리고 힘든 일은 절대 안하고 등등, 즉 한 마디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채용하기도 싫고 승진 못하는 게 당연하다는 담론이 아직도 넘쳐난다. (아니, 그나마 말을 조심했던 10년 쯤 전에 비해 최근 남녀갈등의 프레임을 타고 더욱더 공공연하게 이야기되고 있다.) 일에 책임감이 없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뻔질거리고 힘든 일은 안 하려는 사람은 남자들 중에서도 많지만, ‘그래서 남자는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한 집단에 대한 차별적/경멸적 스테레오 타입이 재생산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여성에 대해서 뿐 아니라 조선족, 전라도인 등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에 대해서 개인이 능력을 보여주면 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여자라도 일 처리에 책임감이 강하고 이성적으로 처리하고 성실하게 굶은일도 잘 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냐는 말이다. 그런 ‘능력 있는’ 여자들은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대우해 준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경멸적 스테레오 타입이 개인에게 가하는 압박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스테레오 타입이란 통계로 증명되지도 않고 증명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저 ‘내가 주변에서 보니 그렇더라’인데 그 ‘그렇더라’가 바로 내 친구의 이야기처럼 경멸적 스테레오 타입 자체에 반사되어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아홉 번 열심히 하고 한 번 뻔질거리면 ‘역시 여자라서 뻔질거리려’로 각인된다. 남자가 아홉 번 열심히 하고 한 번 뻔질거리면 그냥 묻혀버리는 것에 반해서 말이다. 그러므로 이 집단적 낙인을 극복하려면 아홉 번이 아니라 열 번 완벽하게 잘해야 한다. 남자와 ‘마찬가지로’ 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보다 ‘훨씬 더’ 잘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능력’은 결코 성 중립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

2.

능력이 성 중립적이지 아니라는 것은 집단적 낙인에 의해 판단이 비뚤어지기 때문만은 아니다. 능력의 기준 자체도 성 중립적이지 않다. 회식 때 술 잘 마시고 유쾌하게 놀 줄 아는 회사 내 인간관계와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남자라고 해서 모두 술을 잘 마시는 것도 아니고 여자라고 해서 그러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여자는 대체적으로 이에 불리하다. 사회화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여자가 회식에서 술 많이 마시고 잘 노는 것은 위험한 데 다 자칫하면 ‘헤픈’ 여자로 오히려 동료관계를 좋게 하기는커녕 좋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도 있다. ‘빠지’ 않는 것과 ‘헤픈’ 것 사이에서 여성 직원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한다. 말하자면 조직 문화와 능력의 기준이 이미 성별 편향적인 것이다.

조직 문화에서 기인한 성별 편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최소 1/3 이상이 혼합되어야 한다고 본다.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은 이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최근 들어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많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의 취업난과 공무원시험 열풍을 반영해서인지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들의 여성 할당 확대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강도도 때려잡지 못하는 경찰이 무슨 경찰이나?”라는 비아냥. 물론 경찰의 일 중 강도 때려잡는 일은 아주 일 부임에도 말이다. 역시 여기서도 “여자라도 능력만 있으면”이라는 말이 붙는다. 그래서 남녀 체력시험 기준을 같이 해야 한다는 등의 말이 나온다. 여자라도 남자와 같은 조건과 능력이라면 문제를 안 삼겠다는 것이고 따라서 여성차별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물론 체력 시험에서 여성과 남성을 같은 기준으로 한다면 99% 남성만 통과할 것이다. 차별은 능력과 공정의 이름으로도 자행될 수 있다.

3.

잠깐 얘기를 돌려 인권과 차별, 보편성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인권은 글자 그대로 사람(人)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갖는 권리이다. 물론 이런 권리 같은 게 자연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천부인권(天賦人權)이란 말은 진짜 하늘이 저절로 내려준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차라리 하늘 아래 모든 인간들에게 보편적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인권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것이라는 점은 단지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위해 수많은 피 튀기는 투쟁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더 이상 덧붙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보편적인 권리란 도대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지켜진단 말인가? 일단 인권을 지킬 책임을 갖는 것은 사회이고 국가이다. 인권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시민권이며 근대 사회-국가는 그에 기반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 속의 인간으로서 갖는 보편적인 권리란 무엇인가? 죽임당하고 폭행당하지 않을 권리? 분명 그것(자유권)이 맨 처음 시작이었다. 그러나 아직은 소극적인 권리이다. 추상적인 인권 개념이 처음부터 사회적으로 생각되고 합의되어서 성립한 것처럼 이 권리의 개념은 사회 진보에 따라 더 적극적으로 확장되어갔다. 즉 모든 사람이 사회 속에서 떳떳하고 버젓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 권리(사회권)로 확장된 것이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보편성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이 보편적인 사람이란 실제로 서구-남성-백인만을 가리킨다는 문제제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노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동시에 자아를 실현하는 것은 사회 속에서 떳떳하고 버젓한 위치를 차지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집에서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살림을 하는 가정주부의 노동은 사회 속에서 떳떳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다(그것은 근대 사회가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라는 점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즉 ‘돈을 벌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기도와 금식 시간을 지켜야 하는 이슬람교도들은 서구 사회에서(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보편적인’ 사회생활을 못하는 것으로 따돌림을 받는다. 성별, 문화, 민족, 인종 등이 그 사회의 주류가 아닌 사람들은 ‘보편적인’ 것이 아닌 것이다.

그리하여 성인지적 좀 더 넓게는 집단 인지적 권리 개념이 등장한다. 다수 또는 주류인 것이 보편적이라는 뜻과 등치될 수는 없다. 보편성이란 것은 다양한 집단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포괄할 때 더 확장될 수 있다. ‘차별이 아니라 차이’라는 주장은 쉽게 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다. 보편성은 차이를 포괄하여 확장함으로써 더 탄탄해질 수 있고 인권의 기초가 될 것이다.

4.

능력이라는 개념도 사회적인 것이다. 즉 그 사회에서 인정하는 것이 능력이다. 문제는 능력이 ‘있다/없다’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능력’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인권 개념과 충돌한다. 능력을 있다/없다 또는 높다/낮다의 줄 세우기로 개념화하면 그 사회의 다수 또는 주류의 기준에서 평균치를 설정하고 그보다 높은지 아닌지를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터에서 여성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힘들다는 것도 사실이다. 스테레오 타입에서 기인한 집단적 낙인을 극복해야 하고,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에 적응해야 하며, 신체적으로 약하고, 임신과 출산의 공백도 존재한다. 남성과 ‘같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훨씬 힘들고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능력주의는, 일부 특별한 여성들을 제외하면 여성에게 불리하다. 여성은 (평균적으로) 남자보다 능력이 없다는 스테레오 타입도 그런 의미에서는 현실일 수도 있고 다시 그 집단적 낙인이 여성이 일터에서 능력을 보여주기 힘들게 만든다.

해결의 방향은 무엇인가? 바로 위에서 말한 것을 부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장애인이든. 그것이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인가가 문제일 뿐. 더 정확히 말하면 자본주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능력이냐 아니냐가 문제일 뿐. 사회에 기여하고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사실 그것이 인간의 조건 자체이다. 문제는 그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그를 위한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사회에서 떳떳하고 버젓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행복을 추구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이다. 인권이 모든 사람이 떳떳하고 버젓하게 행복을 추구하며 살 권리라면, 그리고 보편성이 다양성과 차이를 인지하고 포괄하여 확장되는 것이라면, 보편적 인권의 실현은 자본주의 기여도에 따라 능력치를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발휘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자기실현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 자본주의 경제 관점의 능력주의에서 비롯할 수는 없다. 앞선 발제문에서 지적했듯이 정치적·사회적 운동만이 이러한 자본주의적 능력주의를 제어할 수 있다. 페미니즘은 남성과 똑같이 경쟁할 권리를 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남성을 배제하고 따돌리는 자매애를 내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여성으로서 성별 차이에 대한 민감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차이를 포함하는 보편적 사회권 개념의 확장에 기여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전략을 추천하고 싶다.

능력주의를 넘어 평등세상을 만들자

- 진보적 장애인운동이 차별에 맞서온 담론을 중심으로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 발제문에서 제기한 ‘능력주의’ 문제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대척점에 있는 존재가 바로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음. 진보적 장애인운동이 차별에 맞서 싸워온 역사는 달리 말해 ‘자격’과 ‘능력’과의 싸움이었고, 앞으로도 내·외부적으로 계속될 싸움이라고 할 것임.

- ‘교육’과 ‘노동’의 영역에서 장애인은 과거에도 그러했고 현재까지도 ‘자격’과 ‘능력’의 증명을 요구받거나 또는 부정당하며 권리로부터 배제되고 있음.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교실이나 화장실로 이동할 ‘능력’이 없어서(지체장애인),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시각장애인),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청각장애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발달장애인) 입학을 거부당해왔음. 장애인 교육권 투쟁을 통해 관련법이 제정되어 이제는 어느 누구도 ‘능력’이 없으니 학교에 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한편 장애계 내부적으로는 ‘자기결정권’과 ‘자기결정능력’을 혼동하면서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권리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음. 이는 특히 활동보조서비스의 전국적 시행을 준비하고 있던 2006년 하반기, ‘자기결정권(능력)’이 부재하여 자립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서비스 대상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음.

‘자기결정권’과 ‘자기결정능력’의 혼동

-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앞둔 2006년 당시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과 18세 이하 장애인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했음. 여러 가지 이유(예산 절감 등)가 있었으나, 그 중 장애계 내에서도 논쟁이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혼동이었음.

- 정부의 입장에 동조했던 측의 주장은 발달장애인과 18세 이하 장애인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지적 ‘판단’과 ‘결정’이 원활하지 못 하기에 자기결정권과 주도성을 갖기 어렵다는 근거였음. 따라서 활동보조서비스라는 권리를 누리기 위한 전제로서 ‘자기결정권’을 이야기하였음.

-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이기에 누구에게만 있고 누구에게는 없는 권리가 아니며, 부여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님. 활동보조서비스가 일종의 사회권적 권리라고 한다면, 자기결정권은 더욱 근본적인 권리라고도 할 수 있음. 그렇기에 자기결정권이 활동보조서비스 권리의 전제가 된다고 말할 수 없음. 다시 말해 자기결정권은 ‘전제’가 아니라 ‘목표’임.

- 정부에 동조했던 측의 주장은 사실 ‘자기결정권’과 ‘자기결정능력’을 혼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발제문에서 제기

한 것처럼 ‘능력’이라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모호하며, 원자화된 개인의 낱것 그대로의 ‘능력’이라는 것은 존재한다고 말하기 어려움. 대부분의 경우 ‘능력’은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경험이라는 차원에서 구성되는 것에 가깝고, 그렇기에 사회적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임.

- 발달장애인에게 ‘자기결정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함. 즉 저상버스도 지하철 역사 승강기도 없이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이동권 보장을 운운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처럼,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견과 판단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것이 보장될 수 있는 세밀한 시스템과 인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탈시설과 자립생활 성패

-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혼동과 더불어 탈시설-자립생활을 이야기할 때 ‘능력’의 잣대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2009년 수용시설에서 갇혀 살던 시설장애인 8명이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를 주장하며 투쟁했고, 이후 서울시는 ‘탈시설 전환체계’를 마련하였음.

- 하지만 탈시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권리’로서의 접근이 아니라, 너무나도 쉽게 ‘성공’과 ‘실패’라는 구도로 이야기되었음. 자립주택 등의 주거지원과 활동보조서비스가 제공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생활에 ‘실패(!)’했다고 평가받거나 또는 당사자 스스로 포기한 경우에 시설로의 재입소가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결정이 이루어짐. 그리고 ‘실패’한 사례는 당사자가 자립생활 ‘능력’이 없다는 식으로 여겨지고,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탈시설은 불가능하다는 식의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함.

- ‘능력’ 문제와 더불어 탈시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당사자의 ‘의지’와 ‘욕구’임. 지자체나 중앙 정부는 시설장애인의 탈시설 ‘욕구’ 조사를 통해 대상자 규모를 정하거나 정책방향을 결정하고는 함. 하지만 ‘능력’과 마찬가지로 ‘의지’와 ‘욕구’ 역시 사회적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탈시설 ‘욕구’ 조사라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방식인지 알 수 있음.

- 수용시설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은 자원과 경험 면에서 시설 밖의 삶을 상상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상황에서 마치 ‘자격’을 따지는 것과 같이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은 맞지가 않음. 개인의 선택과 의지의 문제처럼 탈시설을 바라보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립생활 ‘성공’과 ‘실패’라는 구도로 이어지고, ‘실패’의 사례들은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임.

- ‘탈시설-자립생활’은 개인의 ‘자격’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권리의 문제임. 삶의 모든 순간에서 배제되었던 장애인에게 ‘욕구’와 ‘의지’가 있는지 여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사는 데 있어 결핍되어 있는 객관적인 ‘필요’로서 ‘탈시설-자립생활’을 바라봐야 함.

사회보장권리와 ‘평가’

- 조금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장애계에서 주장해왔던 ‘장애등급제 폐지’가 31년만의 변화를 앞두고 있음. 2019

년 7월부터 현행 장애등급제를 대신하여 돌봄 영역의 4가지 제도에 한해 ‘종합조사표’로 대체됨.

- 현재까지 공개된 ‘종합조사표’는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장애인 개인의 ‘능력’을 평가함. 개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환경적 요소는 고려하지 않고, 의학적 관점의 기능 제한을 중심으로 한 ‘능력의 결핍’을 판정기준으로 보고 있음.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장애인의 ‘무능력’을 증명해야 함.

- ‘웃갈아입기’를 ‘지원불필요(0점)/일부 지원필요(2점)/상당한 지원필요(4점)/전적 지원필요(16점)’라는 임의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돌봄지원 필요도를 평가하겠다고 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개인은 어떤 특정한 사회적 상황과 조건에 놓여져 있는 존재인데, 그러한 조건을 모두 소거한 채 날것 그대로 개인의 기능제한을 평가한다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임. 그렇기에 ‘장애등급제 폐지’가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장애계의 주장과는 다르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도로 장애등급제’인 ‘가짜’ 폐지라고 하는 것임.

- 발제문에서 ‘능력주의’와 ‘시험’을 더 강화하자는 주장이 득세하고 있다는 것과 절묘하게 연결되는 지점이 ‘평가’ 문제에도 있음. 바로 이러한 평가를 장애유형별로 보다 더 세분화하거나 장애유형별 조사표를 만들자는 것임.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유형별, 영역별 갈등을 부추기고 파이쟁탈전으로 몰아가고 있음. 장애인의 차별의 역사 그 자체였던 ‘장애등급제’의 본질은 온데 간데 없고, 장애계는 너나 할 것 없이 오로지 이 ‘평가 조사표’의 합리성(?)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임.

결론을 대신하여

- 부족하지만 발제문에서 제기한 ‘자격’과 ‘능력’의 증명 문제를 장애계 주요 현안들에 적용해서 함께 고민해볼 지점들을 토론하고자 하였음.

- 진보적 장애인운동은 향후 발달장애인 영역과 탈시설, 그리고 장애인 노동권 문제에 있어서 ‘능력주의’와의 싸움이 예상되고 있음. 특히 중증장애인 노동권의 문제에 있어서, 장애인의 직무 능력을 기준으로 삼으려는 정부와 최종중장애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장애계의 논쟁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됨.

- 인권운동이 ‘능력주의’를 넘어서 평등을 넓히기 위한 전략을 고민할 때, 장애인운동의 주요 현안들과 과제들이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함. 자립생활‘능력’과 자기결정‘능력’, 노동‘능력’ 이라는 기준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유보하거나 배제하려는 시도들에 맞서서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였으면 함.

■
세션 4 누가 인간인가, 누가 여성인가
주체의 언어가 배제의 언어가 되지 않기 위해

사회 조한진희 (반다, 다른 몸들(준))

발제 1 생물학적 여성? 코라로서의 여성의 몸!

-여성의 몸과 성차에 대한 개념적 숙고

이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발제 2 교차성과 페미니스트 실천

김보명 (여성학 연구자)

발제 3 평등의 언어를 버리기 위한 실천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생물학적 여성? 코라로서의 여성의 몸!

- 여성의 몸과 성차에 대한 개념적 숙고⁰¹

이현재 (서울시립대학교)

1. 디지털 시대, 다시 소환된 '생물학적 여성'

여성의 몸을 성적 대상화하는 불법촬영물을 찍지도, 유포하지도, 보지도 말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드높다. 이것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시급하게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등장하는 페미니즘의 이슈가 무엇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디지털 매체에서 여성의 몸은 이미지로 떠돌아다닌다. 카메라 앵글에 의해 생산된 여성의 몸은 이미지이다. 그 이미지는 앵글이 가진 관심과 욕망에 의해 조작되고 확대되며 관찰되고 분산된다. 이미지는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에 의해서도 편집되고 오려붙여지고 구분된다.

이에 디지털 네이티브 여성들은 분노하고 저항하기 시작했다. 가령 해화역 시위 주최측인 '불편한 용기'는 여성의 억압과 여성 권력의 탈환을 제일의 이슈로 삼을 것을 주장하면서 시위를 이끌었다. 이들은 "남성권력에 저항하는 여성' 스탠스에 집중하기 위해 어떠한 외부 단체와도 연대하지 않는다."⁰² 여성의 억압과 여성의 저항을 제일의 이슈로 삼을 것이며 여기에는 어떤 성역도 없다는 주장은 68년도에 서구에서 부상했던 래디컬 페미니즘의 스탠스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러나 '불편한 용기'가 저항적 주체의 토대로 소환한 '생물학적 여성'은 고개를 가우뚱하게 만든다.⁰³

'생물학적 여성', 생물학적 여성의 몸 등은 페미니스트들이 가부장제가 만들어 내는 성차로 인한 억압을 조명할 때 비판했던 정체성이었다. 생물학적인 몸을 이유로 여성은 그에 합당한 본질로서의 젠더를 수행해야한다는 압박에 시달렸고 따라서 섹스화된 몸을 강조하는 방식은 페미니즘이 비판해야할 과제 중 하나였던 것이었다. 더군다나 남성을 문화와 정신, 여성을 자연과 육체로 이분한 후 여성들을 위계서열의 낮은 곳에 배치하는 방식은 페미니스트들이 매우 강력하게 비판했던 위계적 이분법의 틀이었다. 따라서 참정권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을 시민으로 남성과 동등한 이성의 주체로 인정할 것을 주장했으며 이와 더불어 감정, 육체성 등과 관련된 여성성을 강력하게 부정하기도 하였다. 제 1의 물결에서 부정되었던 여성의 몸은 제 2의 물결 래디컬 페미니즘으로 되돌아왔다. 파이어스톤은 래디컬 페미니즘의 주축을 이루었던 담론을 통해 생물학적 성차를 소환하고 그에 토대를 둔 성계급을 가장 근본적인 모순으로 지적했지만

01 이 글은 필자의 논문 「지위진 여성의 몸-코라(chora)와 물질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 21집(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0)을 재구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02 2018년 7월 '불편한 용기'가 제시했던 스탠스는 다음과 같다. "하나, 여성 위에 그 어떤 성역도 없다. 여성위에 어떤 이익단체나 정치도 없고, 우리는 어떠한 남성권력도 비판한다. 또한 정당, 이념, 사상에 휘둘리지 않고 '남성권력에 저항하는 여성' 스탠스에 집중하기 위해 어떠한 외부 단체와도 연대하지 않는다. 둘, 빼앗긴 여성의 권력을 탈환한다.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이철성 남경철청장과 문무일 남검찰총장을 파면하고 여성경찰청장과 여성검찰총장 선출을 요구한다. 앞으로 뽑는 여남 경찰 비율을 90:10으로 요구한다. 셋, 동일수사 동일처벌을 요구한다. 불법촬영 사진 및 영상이 만연한 남초 사이트의 불법촬영물 유포자, 다운로드 처벌을 요구한다. 불법촬영 카메라 판매자 및 구매자 처벌을 요구한다. 디지털 장의사 수사를 요구한다. 한국의 여성들은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정부는 여성들의 분노에 대한 합당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내놓고 즉각적으로 실행하라. 우리는 대한민국을 불태울 준비가 되어있다."

03 '불편한 용기'는 '생물학적 여성'을 시위 참가 자격으로 공식화했으며, 이에 남성뿐 아니라 남자 어린이, 트랜스 남성 등도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그 성차를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레드 스타킹 선언 역시 생물학적 성차에 기반한 보편적이고 총체적인 억압이 있음을 비판했으며, 생물학적 몸으로서의 여성을 토대로 하는 출산, 양육, 코르셋 등의 역할을 거부하고 낙태죄 폐지를 주장했다. 2018년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의 몸을 기반으로 했던 억압은 본격적으로 도마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생물학적 여성’을 비판의 지점으로 소환하는 것과 저항의 토대로 소환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후자의 경우 운동은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담론을 통해 구조화된 성계급을 비판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 구조로부터 어떻게 해방이 가능한지를 설명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구조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저항의 가능성은 작아질 수 있다. 논리적으로 볼 때 생물학적 여성을 토대로 하는 여성혐오 구조에 대한 저항은 오직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호명을 벗어나는 여성일 때 가능하다. 따라서 비판이 아니라 저항을 위해 ‘생물학적 여성’을 호명하는 방식은 오히려 여성을 생물학적 몸으로 고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위험도 있다. 나아가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범주는 여성의 억압을 단일한 것으로 전제하는 과정에서 여성 내부의 차이들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억압을 교차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주디스 버틀러 뿐 아니라 유색인 여성주의, 탈식민 담론 등에 의해서도 제기된 바 있다.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할 때 생물학적 성차를 비판의 전제로 하는 ‘여성’ 운동은 사실상 특정 집단의 여성을 위한 운동을 보편적 여성의 운동으로 간주하게 될 수 있으며 트랜스젠더 등 소수자 집단을 배제하는 등 또 다른 배제를 낳을 위험을 안는다.

그렇다면 문제는 억압의 토대로 작동하고 있는 여성의 몸을 여전히 유의미한 방식으로 다루면서도 이 범주화에 여성들이 갇히지 않을 수 있는 개념적 모색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성차와 성차화된 몸을 비판적으로 논의하되 이 구조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행위자성, 다양한 성차 등을 가능하게 하는 ‘몸’의 개념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필자는 이 글에서 우선 철학사에서 몸의 물질성이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생물학적 성차와 접합된 몸의 개념화가 어떤 문제점을 낳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플라톤과 크리스테바의 ‘코라’ 공간에 대한 논의를 분석하는 가운데 여성의 몸을 수동적 물질이나 표면이 아니라 자체 내에 힘을 가지고 있는 ‘코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나아가 필자는 엘리자베스 그로츠가 여성의 몸을 ‘액체’, ‘비체’로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것이 크리스테바의 ‘코라’와 연결되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코라와 마찬가지로 액체나 비체로서의 여성의 몸에 대한 이해는 억압의 토대로 작동하는 ‘여성의 몸’ 범주를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타자 배제 없이 이에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그러나 아쉽게도 그로츠는 성차에 대한 이론을 일관적으로 개선하지 못함으로써 형태학적 여성의 몸에 해당되지 않는 트랜스젠더의 몸을 비난하게 되는 과오를 범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2. 여성의 몸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 플라톤의 육체(sōma)와 코라(chōra)

오랫동안 서구 사상을 지배했던 위계적 이분법은 몸과 정신을 구분하고 전자를 여성에게 후자를 남성에게 할당하였다. 즉 위계적 이분법 내에서 여성은 육체적 존재 즉 형상을 담는 수동적 질료이거나 정신에 의해 완전히 지배/정복될 수 있는 자연적 대상으로 규정되어왔다는 것이다. 근대에 이르러 자연은 생물학과 물리학의 외피를 입게 된다. 여성은 자연에서 생물학적 몸 또는 연장을 가진 대상으로 설명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의 몸은 정신에 의해 지배되는 수

동적인 질료 혹은 문화의 법칙이 각인되는 수동적 표면(대상)인가? 이러한 설명은 남성문화, 남성의 욕망에 따라 여성이 각인되어왔다는 설명방식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개념적 이해방식은 위계적 이분법이 만들어내는 여성혐오의 구조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조를 강조하는 이러한 개념화는 생물학적인 여성들이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성의 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수동적 질료나 수동적 표면이 아닌 다른 개념적 이해가 가능한가?

이에 필자는 이 글에서 우선 플라톤의 사상에 주목해 보고 이로부터 두 가지 방식의 몸에 대한 이해의 가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흥미롭게도 플라톤의 사상에는 여성의 몸을 수동적 질료/물질로 보는 방식과 독립적인 힘을 가진 공간으로 보는 방식이 모두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플라톤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서 여성은 수동적인 육체로 묘사된다. 그러나 다른 한 편 플라톤에게 여성의 몸은 또한 생성되는 것을 생성시키는 공간, 즉 코라로 비유되기도 한다. 코라 공간으로서의 여성의 몸은 물질로서의 여성의 몸과 달리 내재적인 힘을 갖는다. 그것은 형상에 의해, 이데아에 의해 부여되지 않는 독자적인 힘을 갖는다.

우선 여성을 물질로 설명하는 부분을 살펴보자. 플라톤은 『국가』에서 세계를 가지적인 것과 가시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가지적인 세계를 존재의 기원이자 원형(idea)으로, 가시적인 원형의 모방물로 설명했다. 『파이돈』에서 플라톤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의 결합체로 설명하고 나아가 인간에게 본질적인 것은 이데아를 직관하는 영혼이며 모방물들에 대한 지각을 전달하는 육체(sōma)는 영혼의 감옥일 뿐이라고 보았다. 전통적 해석에 따르면 플라톤에게 육체는 가시적이고 감각적인 것과 동일시되는 열등한 것이며 따라서 진, 선, 미에 도달하기 위해서 인간은 육체를 영혼에 복종시켜야 한다.

여성철학자들이 특히 플라톤을 문제 삼는 이유는 그가 영혼/육체의 위계적 이분법을 여성과 남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플라톤은 『국가』에서 여성도 인간이기에 근본적으로는 이성을 갖고 있으며 충분한 교육을 받고 철저히 이성을 이용한다면 철인여왕도 탄생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아쉽게도 플라톤은 그보다 더 많은 사례들에서 여성을 육체적 욕망의 존재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열등한 존재로 묘사한다. 예를 들어, 플라톤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점에서(454e) 남자와 다르다(455e)고 본다. 다시 말해서, 여성은 영혼이기보다는 열등한 물질이자 육체라는 점에서 남성과 구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로 인해 플라톤은 결국 선량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의 뜻을 거역하려는 여자, 아이를 낳는 여자, 사랑에 빠진 여자 등을 모방해서는 안 된다(395d~e)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사례에서 플라톤은 여성을 나약한 물질(육체)과 동일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육체와 동일시되는 여성들은 철인왕국을 위해 통제되어야 하는 열등한 존재로 설정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필자는 플라톤이 위계적 이분법에 따라 여성을 종속적이지만 한 육체로 보았다는 통념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플라톤은 『티마이오스』에서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제3의 부류 즉 공간 범주를 도입하고 있고 이를 여성의 몸과 같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플라톤이 제시하는 세 가지 부류가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가 말하는 세 가지 부류란 “생성되는 것, 그리고 이 생성되는 것이 그 안에서 생성하게 되는 곳인 것, 그리고 또한 생성되는 것이 태어남에 있어서 닳게 되는 대상”(50d)이다. 나아가 그는 생성되는 것을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창조물인 자식에, 생성되는 것이 생성하게 되는 곳을 어머니에, 그리고 본받게 되는 대상을 아버지에 비유한다.(50d) 그리고 그는 생성되는 곳 즉 제3의 부류를 공간 혹은 장소를 의미하는 헬라스어인 코라(chora)로 명명한다. 플라톤에서 코라는 “생성된 것의 어머니”(51a), “생성의 규모”(52d) 등으로 비유된다.

플라톤에 의하면 코라는 존재/이데아도 모방물들/생성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코라는 영원히 불변하는 이데아가 아니다. 코라는 다양한 물질들을 수용하는 “새김바탕(ekmageion)”(50c)으로서 물질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코라를 가시적인 물질(sōma)이나 모방물들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것도 오류이다. 코라 자체는 물질이나 모방물들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형태도 없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어떤 점에서는 지극히 당혹스런 방식으로 ‘지성에 의해서라야 알 수 있는 것’(to noēton)에 관여하는 것”(51b)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플라톤은 세 번째의 부류는 언제나 존재하는 공간의 종류로서 자기의 소멸은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생성을 갖는 모든 것에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이것 자체는 감각적 지각을 동반하지 않는 ‘일종의 서술적 추론(logismos tis nothos)’에 의해서나 포착될 수 있는 것”(52b)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필자가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플라톤이 코라의 특징을 설명할 때 코라 자체의 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라는 공간이지만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나 뉴턴식의 물리학에서 전제하고 있는 수동적 기반 혹은 텅 빈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코라는 허공이나 물질과 달리 그 자체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힘은 이데아가 가진 힘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기존의 이분법에 따르면 물질의 성질이나 형태 혹은 운동의 기원은 오직 이데아, 이성(logos), 지성(nous)으로부터만 도출될 수 있으며 물질은 그 자체로 운동하거나 생성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플라톤은 지성의 힘 이외에도 우주의 발생 이전부터 존재하는 코라의 힘을 전제하고 있다. 플라톤에 따르면 코라는 물, 불, 흙, 공기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것을 운동하고 변화하게 만드는 “균형이 잡히지 않은 힘들(dynameis, 52e)”로 가득 차 있다. 코라의 이러한 힘들은 지성에 독립해서 작용하는 힘이다. 이 힘은 우주가 질서를 갖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힘들로써 “비례(비율:logos)도 없고 척도(metron)도 없는”(53a) “방황하는 원인의 종류(to tēs plaōmenēs eidos aitias, 48a)”라고 할 수 있다. 지성이 조화와 논리 그리고 질서와 관련된 운동과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면 코라는 예측할 수 없는 무규정, 무질서, 불균형과 같은 종류의 힘의 기원이 된다.

3. 질료 및 연장체로서의 여성의 몸과 평등주의 페미니즘

그러나 플라톤의 몸 이론 중 후대에 이어지는 것은 소마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육체 개념을 질료 개념과 연결시키는 가운데 생물학적 몸의 개념적 토대를 마련했으며, 근대 이원론의 대표자인 데카르트는 이를 연장체 개념과 연결시키는 가운데 백지와 같은 수동적 표면으로서의 몸의 개념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몸의 물질성에 대한 이해는 평등주의 페미니스트들에서도 의해 반복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개별 사물이 내적 본질로서의 형상(eidos)과 이 형상을 받아들이는 토대로서의 질료(hyle)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생성 소멸하는 모든 사물들은 모두 질료와 형상의 복합체이며 사물들의 본질은 형상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은 집의 구조와 집의 구성 재료들(벽돌, 돌, 목재 등)로 이루어졌으며 여기서 구조는 형상으로, 재료는 질료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집의 본질은 집의 구조를 통해 설명된다. 구성 재료들은 집이라는 형상을 지탱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1질료든, 제2질료든 질료는 모든 형상들을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로는 어떤 힘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질료는 “자체로 어떤 개별적인 것도 아니고 양을 가진 것도 아니며, 존재가 결정되는 바의 어떤 범주에 속하는 것도 아니다.”(Metaphysic, Z. 3, 1029a20~21) 가령 논리적 필요에 따라 추론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순수질료는 오직 형상의 수용적 토대로만 작용한다. 순수질료는 그 자체가 비규

정성이지만 이것은 규정되기 위해 존재할 뿐, 규정하는 힘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제1질료이든 제2질료이든 그것은 수동적인 것이 되며 따라서 모든 종류의 질료는 형상에 종속적인 것이 된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형이상학을 토대로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남성에 대한 종속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자들은 생식을 위한 능동적인 힘, 즉 씨앗을 가지고 있지만 여자는 함께 생식하는 것이 아니라 생식을 위한 수동적인 능력만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남자는 씨앗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형상인, 작용인, 목적으로 이해되지만 여자는 씨앗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질료에 해당되는 수동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영혼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모든 것”(Anima, 431b)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결국 목적인이나 형상인을 주지 못하는 질료와 같은 “여자는 우연에 의해서 장애를 받은 남성”(De Generatione Animalium II, c 3, 737 a 27)⁰⁴으로 정의된다.

몸이 아무런 힘을 갖지 않는 수동적인 것이라는 생각은 몸을 포함하는 자연을 연장된 실체로 설명하는 데카르트에게서도 나타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상과 질료를 구분했듯이 데카르트는 “사고하는 실체(res cogitans)”와 “연장된 실체(res extensa)”를 구분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데카르트는 『성찰』에서 의식 밖에서, 주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사물들의 속성을 연장이라고 본다. 물론 존재론적으로 볼 때 육체와 사물들을 포함하는 자연은 주체의 의지가 아니라 객관적인 물리적 법칙에 따라 운동한다. 그러나 인식론적으로 볼 때 자연은 어디까지나 정신과 이성의 판단에 의해 명석하게 파악될 수 있는 정신의 대상일 뿐이다. 즉 연장적 실체로서의 객관적인 몸은 주관에 의해 인식되는 수동적인 대상이 된다.

이렇듯 여성의 몸을 수동적인 질료나 연장체로 보는 방식은 물리학자나 생물학자 그리고 이에 기반하고 있는 로크나 루소 등과 같은 근대의 정치, 사회이론가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함을 해방의 기치로 삼았던 평등주의 페미니스트들에게도 나타났다. 급진주의 혹은 실존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몸을 생물학적으로 규정된 육체로 보고 여성해방을 위해서는 이를 초월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사회 구성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몸을 사회적 관계로서의 젠더를 반영하고 있는 수동적 객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몸이 아니라 젠더를 문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보부아르는 실존철학의 바탕 위에서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자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재생산 기능으로 묶여있는 여성의 육체적 한계를 초월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파이어스톤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을 환영하면서 그동안 여성의 종속을 강제했던 여성의 생물학적 특수성을 제거하는 데 관심을 표한다.⁰⁵ 여기서 여성의 출산능력이나 모성은 여성의 종속을 정당화하는 육체적 토대일 뿐이며, 따라서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된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 역시 여성의 몸을 물질적 사회관계가 각인되는 백지나 텅 빈 공간 등으로 전제한다. 여기서 몸은 무기력하고 수동적이며 비문화적이고 비역사적인 것으로 전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평등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몸을 토대로 한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비판함으로써 여성의 평등과 해방에 도달하려는 전략을 구사했다. 그러나 이들은 그 과정에서 여성의 몸을 여전히 수동적인 질료나 비역사적인 백지로 축소시킨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나 남성의 욕망이 규정하는 바에 따르는 대상으로 환원된다. 그렇다면 이제 육체로서의 여성, 여성의 몸은 아무 의미가 없는, 따라서 포기되어야 하는 지점인 것인가? 여성의 몸은 여성해방을 방해하는 생물학적 한계이거나 여성해방을 위해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 객관적 대상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여성의 몸

04 해석은 차용구, 『"Femina est mas occasionatus"-토마스 아퀴나스의 여성관에 미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 『서양중세사연구』(한국서양중세사학회, 14권, 2004), 75면에서 재인용 함.

05 엘리자베스 그로츠, 『뫼비우스 띠로서 몸』(임옥희 역, 도서출판 여이연, 2001), 74면.

은 강력한 구조의 형식을 띠는 의미화 작용에 저항할 수 없는 “생물학적 백지(tabula rasa)”⁰⁶인가?

4. 크리스테바: 코라와 비체로서의 여성의 몸

서양사상에 지배적이었던 질료와 연장체 담론 속에서 여성의 몸은 단연코 수동적 물질 혹은 질료로 이해되며 이와 더불어 여성의 몸은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존재로 규정된다. 생물학적 몸이라고 할 때 이 역시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수동적인 물질이나 사회적 법칙이 각인되는 표면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여성의 몸을 그 자체의 내재적인 힘을 갖는 코라 공간으로 인식하고자 했던 시도는 없었던 것인가?

필자는 현대 페미니스트 루스 이리가레와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이론을 간단히 검토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 보고자 한다. 여성의 몸과 관련된 이들의 이론이 모두 명시적으로 “코라” 개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의 몸을 무력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여성의 몸을 차이와 변화 그리고 저항을 가능하게 하는 독립적 힘의 지점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직/간접적으로 플라톤의 코라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성차이론가 이리가레의 이론을 살펴보자. 이리가레의 성차이론은 무엇보다도 남성과 다른 여성의 몸을 어떻게 담론화할 것인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리가레에 따르면,

“예를 들어 여성의 자가성애는 남성의 자가성애와는 매우 다르다. 남성이 자신을 만지려면 그는 도구가 필요하다. ... 여성의 경우 그녀는 그녀 안에서 그리고 그녀 스스로 자신과 접촉한다. 이것은 어떤 매개물 없이, 그리고 능동성과 수동성의 구별이 일어나기 전에 이루어진다. ... 왜냐하면 여성의 성기들은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두 입술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녀 내부에서, 여성은 이미 서로를 애무하는 둘이지만, 하나(들)로 나눌 수 없다.”

07

이리가레에 따르면 이러한 독특한 쾌락과 연관되어 있는 여성의 몸은 단순히 남성중심의 젠더 관계를 구현하고 있는 상징계의 언어에 의해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여줄 것이 없는 이 성 기관은 또한 고유한 형태도 결여하고”⁰⁸있기에 시각적인 형태, 동일성(하나)의 원리에 기반하는 남근형태학이나 남성중심적 상징계에 의해서는 제대로 파악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리가레는 기존의 상징계 안에서 여성의 몸은 남성의 자기동일성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도구, 즉 평평한 거울과 같은 역할만을 담당하는 것으로만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결핍으로서의 여성의 몸, 평평한 거울로서의 여성의 몸은 모든 것을 비추지만 정작 여성의 몸은 평평한 거울에서 결핍으로 나타날 뿐이다.

그러나 이리가레가 위에서 새롭게 담론화한 여성의 몸은 평평하고 수동적인 거울이 아니라 오목한 스펙큘럼(speculum)이다. 그것은 스스로 안에서 자신의 쾌락을 갖는 것, “형태의 불완전성으로부터 쾌락을 얻는”⁰⁹것이다. 그러한 쾌락은 남성문화에 의해 거부되고 지워져왔지만, 그것은 여성의 몸이 갖는 차이에 의해 가능한 효과이다. 이리가레는 이러한 여성의 몸이 이질적인 힘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 남성에게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

06 그로츠(2001), 79면.

07 Luce Irigaray, "This Sex Which Is Not One" in This Sex Which Is Not One, translated by Catherine Porter,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b, pp. 24.

08 Luce Irigaray(1985b), pp. 26.

09 Irigaray(1985b), p. 26.

적하고 있다. 그녀는 “볼 것이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관념, 가시성 또는 반사/사변(spécula<risa>tion)의 법칙에 종속되지 않는 것은” “남성에게는 참을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표상의 이론과 실천을 위협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본다. 나아가 그녀는 그것이 “남성들의 체계 안에 결정적인 파괴, 쪼갬, 단절을 야기”¹⁰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플라톤이 “방황하는 원인”으로 비유했던 코라의 힘을 상기시킨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리가레는 남성적 언어에 의해 결핍으로 규정된 여성의 몸이 아니라 남성적 언어, 형상을 교란하는 불규칙한 힘의 원천으로서의 여성의 몸을 새롭게 담론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리가레가 성차이론의 구성을 목적으로 여성의 몸을 재구성했다면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남성중심적 담론 공간의 폐쇄성을 극복하는 주체와 언어이론을 모색하는 가운데 코라를 소환한다. 크리스테바는 처음부터 주체가 지배적 담론, 즉 질서 혹은 지배적 사회구조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단초를 코라 공간에서 발견한다는 것이다.

『시적 언어의 혁명』에 나타난 크리스테바의 언어적 양태 구분에서 시작해 보자. 크리스테바는 지배적 사회적 관계와 담론의 형식에 따르는 기호체계를 “생볼릭(le symbolique)”과 연관시키는 반면, “생볼릭”과는 다른, 그러나 여전히 언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차원을 “코라 세미오틱(sémiotique)”으로 구분하고 “생볼릭”과 “코라 세미오틱”이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언어적 양태들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의 생성 과정(procès de la signifiante)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크리스테바가 “생볼릭”이라 부르는 것은 푸코가 “담론”이라고 했던 것, 라캉이 “상징계”라고 불렀던 것과 연관되어 있다. “생볼릭”은 지배적 사회질서와 아버지의 법, 그리고 의미를 구현하고 있는 통사론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코라 세미오틱”은 이와는 다른 언어적 양태를 가리킨다. 즉 “코라 세미오틱”은 “이동과 압축, 흡수와 거절, 거부와 정지와 같은 언어습득에 있어서 생득적이고 종의 기억에 필수적인 전 조건들로 작용하는 일차과정을 포함한다.”¹¹

크리스테바는 기호나 통사 이전의 것인 이 “코라 세미오틱”을 “음성 또는 신체 근육의 운동성”¹² 등으로 설명한다. 필자는 여기서 크리스테바가 “생볼릭”과 “세미오틱”을 두 가지 서로 다른 공간 이미지와 연결시키고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녀에 따르면 “생볼릭”은 정지 혹은 조정(position)과 관련된 아버지의 법, 즉 상징적 질서의 공간이며, “세미오틱”은 운동적이고 자유분방한 움직임과 관련된 어머니의 몸, 즉 “코라” 공간이다. 이러한 두 공간의 차이점은 크리스테바가 “생볼릭”을 “배치(disposition)”라는 공간적 이미지로, “세미오틱”을 “분절(articulation)”의 공간 이미지를 통해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잘 나타난다. “생볼릭”이 “이미 표상 영역에 들어가 있고, 또 기하학을 탄생시키기 위한 공간의 현상학적 직관에 호응하는 배치”와 연관되어 있다면, “세미오틱”은 “움직임과 그 순간적 정지로 구성된 극히 일시적이고 근본적으로 유동적인 분절”¹³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코라 공간과 연관된다.

크리스테바는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몸, 코라 세미오틱을 어떤 개념으로 지시되거나 정의될 수 없는 공간으로 보고 있다. “코라는 아직 무엇을 누구에게 나타내는 조정(position)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기호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조정을 위하여 누구를 나타내는 조정, 즉 시니피양은 아닌 것이다.”¹⁴ 따라서 크리스테바 역시 코라 세미

10 Luce Irigaray, *Speculum of the Other Woman*, translated by Gillian C. Gill, Cornell University Press, New York, 1985a, p. 50.

11 줄리아 크리스테바, 『시적 언어의 혁명』(김인환 옮김, 동문선, 2000) 31면.

12 크리스테바(2000), 앞의 책, 27면.

13 크리스테바(2000), 앞의 책, 26면.

14 크리스테바(2000), 앞의 책, 26면.

오틱을 비유를 통해 설명한다. 플라톤과 함께 크리스테바는 “코라”를 “집적소(réceptacle)”와 같은 것으로 비유한다. 또는 그것을 “아직 하나의 정돈된 ‘우주’로 통일되지 않은”, “양분을 공급하는 모성적인 그 무엇”¹⁵으로 비유한다.

크리스테바는 또한 정신분석의 전통 속에서 담론 혹은 지배적 사회질서를 넘어서는, 그러나 여전히 언어 내부에 존재하는 코라 공간의 역동성을 “욕동”과 관련하여 설명한다. 욕동은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과 분절을 가능하게 하는 육체와 연관된 힘들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욕동의 코라 공간은 기존의 사회질서 및 의미관계들을 변화시키고 파열시키는 과정을 능동적으로 추동한다. 플라톤이 “코라”의 이러한 불균형성 혹은 불균등성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방향하는 원인”을 전제하였다면, 이제 크리스테바는 “코라”의 지속적인 분절을 설명하기 위해 욕동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크리스테바에 의하면 이 욕동은 “항상 이미 모순적이고, 동화력이 있는 동시에 파괴적”¹⁶이며 이러한 이중성으로 인해 “코라’ 세미오틱”은 “항구적인 분열의 장을 만들어 간다.”¹⁷ 즉 코라는 차이와 분열의 물질적 힘 즉 “파괴파(onde destructrice)를 생성해 낸다.”¹⁸

여기서 분명해 지는 것은 크리스테바가 말하는 여성의 몸, 코라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것이며, 규정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이기도 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양가성은 『공포의 권력』에서 크리스테바가 여성의 몸, 몸의 물질성을 “비체(object)”로 설명하는 부분과도 연결되고 있다. 여기서 크리스테바는 대상이 아니라 비체라는 존재 방식에 주목하는데, 여기서 비체는 “동일성이나 체계와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¹⁹이다. 그리고 비체는 대상(object)이 아니기에(a) 혐오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비체는 특정 담론에서 규정된 방식의 존재인 대상성을 벗어난다.

크리스테바에 따르면 비체는 원래 자기 것이었다가 내뱉은 것이다. 크리스테바는 ‘아브젝시옹(abjection)’을 설명하는 데서 시작하는데, 이는 라틴어의 “abjectio”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공간적 간격, 분리, 제거를 의미하는 접두사 “ab”과 내던져 버리는 행위를 나타내는 “jectio”로 이루어진 말이다(319). 크리스테바에 따르면 비체는 상징체계에서의 자신의 통일적 삶을 위해 거부(exclusion)된 것이다. 비체는 이질성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주인인 초자아에 녹아버린 자아에 의해 몰아내어진다. 비체는 사회적 자아가 되기 위해 버려야했던, 그러나 한 때는 나에게 친근했던 것이다. 네가 비체를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이 말끔한 자아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콧물, 똥, 오줌과 같은 배설물과 오물을 혐오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의 말끔함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상징체계 안에서, 사회적 질서 안에서 통일적인 주체가 되려면 우리는 그러한 통일성을 위협하는 비체를 더러운 것으로 혐오하여 배제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비체는 오염이라는 개념과 연관된다. 이를테면 그것은 사회적인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것이다(109). 그것은 “나의 불투명하고 잊혔던 삶 속에 친근하게 존재했던”(22) 것이지만 이제 투명한 자아가 되려는 나에게서는 더러운 위협이다.

크리스테바에 따르면 비체는 “주체도 대상도 아니다.”(크리스테바 21) 비체는 한 때 주체에 있다 밀려난 것이지만, 그렇다고 대상인 것은 아니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주체에 의해 규정된 바의 존재방식이 아니라는 의미다. 비체는 “내가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어떤 것’이다.”(22)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어떠한 정체성(동일성 identity)도 빚겨가기 때문이다. 가령 이성애 이분법적 젠더 상징체계 안

15 크리스테바(2000), 앞의 책, 27면. 크리스테바뿐만 아니라 박종현·김영균 역시 각주 322)를 통해 헬라스어 chōra(khōra)는 “아무 것도 없이 무한히 펼쳐져 있는 허공이 아니라, 마치 어머니의 자궁이 태아의 발생을 허용하는 터를 제공하는 것처럼, 그 안에서 생성 소멸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기반’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플라톤(2000), 145~6면.

16 크리스테바(2000), 앞의 책, 28면.

17 크리스테바(2000), 앞의 책, 29면.

18 크리스테바(2000), 앞의 책, 29면.

19 크리스테바, 줄리아, 서민원 옮김, 『공포의 권력』, 동문선, 2001, 25쪽.

에서 퀴어의 몸이 비체인 이유는 그것이 남자이면서도 여자를 사랑하지 않거나 여자이면서도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존재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가부장제나 여성혐오 문화가 호명하는 방식의 ‘생물학적 여성의 몸’은 철저히 남성주체와 남성중심 상징계의 지배를 받는, 그 위계에서 제공한 자리에 배치된 대상이다. 따라서 여성이 생물학적인 몸으로 스스로를 규정하는 한, 여성은 그 자리와 구조를 탈피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여성이 비체라면, 여성은 남성들이 호명하는 바의 생물학적 몸이 아니다. 여성의 몸은 생물학적 개념이 지칭하는 대상성에 동화되어 있지만 동시에 벗어나 있다. 이것이 바로 혐오되는 몸, 억압되는 몸 그러나 저항할 수 있는 몸인 비체다.

여성의 몸은 끊임없이 흐르는 액체이며 그런 의미에서 “동일성을 격렬하게 뒤집어 놓는다.”(크리스테바 23) 비체, 즉 “아브젝트가 되는 것은, 부적절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것이라기보다 동일성이나 체계와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에 더 가깝다. 그것 자체가 지정된 한계나 장소나 규칙들을 인정하지 않는데다가 어중간하고 모호한 혼합물인 까닭이다.”(25) 그러나 바로 그런 까닭에 비체는 내몰린 상태에서도 주인에게 도전장을 내민다. “그에게 신호도 없이 불만을 터뜨리고 폭발하며 비명을 질러 간청한다.” “전에는 나의 불투명하고 잊혀졌던 삶 속에 친근하게 존재했던 그 이질성은, 이제는 나와 분리되어서 혐오스러워지고 나를 집요하게 공격한다.”(22) 주체에 의해 규정될 수도 잡힐 수도 없는 비체는 동일성, 체계, 질서를 뒤흔든다. 크리스테바에 따르면 그것은 동일성을 지속하려는 자의 관점에서 볼 때 공포의 대상이다. 동일자의 관점에서 볼 때 “상상적 이질성인 동시에 현실의 위협인 아브젝트는 우리를 부르고, 결국에 가서는 삼켜버린다.”(25) 비체에 의해 삼켜지고 소멸될 수 있다는 공포는 재빨리 비체에 대한 혐오로 투사된다. 비체가 나를 삼키기 전에 재빨리 비체를 소멸시켜버리려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나의 정체성을 고체화시킬 수 없다.

만약 크리스테바의 코라와 비체를 소환하여 여성의 몸을 이해한다면, 여기서 여성의 몸은 특정되지 않는다. 여성의 몸은 정신과 문화의 지배와 통제를 받고 있지만 그것으로 완전히 구조화되지 않는다. 그것은 흐른다. 비체인 여성의 몸은 항상 동화되는 동시에 파괴적인 이중성을 가지고 있으며, 호명되지만 호명을 벗어난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이질성과 차이를 잉태할 수 있다. 여성의 몸은 상징계의 영향 하에 있지만 상징계에 틈을 낸다. 그것은 항상 그 이중적 물질성으로 인해 행위하는 것이다. 비체는 흐르기에 다양한 몸들을 가능하게 하며, 여성이 아닌 다른 소수자의 몸을 배제하지 않는다.

5. 그로츠: 문지방, 액체로서의 여성의 몸

여성의 성차화된 몸에서 시작하되 이를 실제화시키거나 물화시키지 않는 방식을 본격적으로 고민했던 또 다른 페미니스트는 엘리자베스 그로츠다. 그로츠는 『뫼비우스의 띠로서의 몸』의 서론에서 페미니스트들은 마음과 몸을 상호배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데서 벗어나야하며 육체성을 단 하나의 섹스로 연상하지 말고 여럿이자 다수가 가능한 몸 “유형”의 장이 창조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로츠는 이원론을 피하고 몸에 대한 생물학적 본질주의적 설명 역시 피할 것, 몸을 각인되는 공간이자 생산과 구성의 공간으로 파악할 것을 당부한다. 여성의 몸은 사회구성론과 생물학적 본질주의 모두를 비판하면서 언제나 자연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의 “상호연관성” 하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²⁰ 이것은 몸을 이분법적인 쌍의 중추적인 지점에서 비결정적으로, 위태롭게 배회하는 문지방이자 경계선 개념으로 간주하려는 시도이다.

그로츠는 자연이나 생물학적 차원을 흔적 없이 내다버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지만 생물학주의에는 단연코 반

20 엘리자베스 그로츠, 임옥희 옮김, 『뫼비우스의 띠로서의 몸』, 서울: 도서출판 여이연, 2001, 83쪽.

대한다. 그로츠는 생물학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생물로서의 몸”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몸은 생물학적인 것도 문화적인 것도 아닌, “이분법적인 쌍의 중추적인 지점에서 비결정적으로, 위태롭게 배회하는 문지방이자 경계선 개념”이다(87). 이에 따르면 문화적이자 생물학적인 몸은 항상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이 몸은 새로운 환경에서 변화에 열려있다.

그로츠에 따르면 몸은 변화하지만 환원불가능한 “전존재론적” 성차가 존재한다(395). 이 말은 성차가 순수한 생물학적 차원에서 그 자체로 본질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다. 성차가 단순히 두 개라는 것이 아니다. “오직 다수의 몸들이 있을 뿐이다”(80) 두 개이든 다수이든 성차는 “최초의 원형이면서도 구성”되는 것이다. 성차로 인해 어떤 존재가 존재가능해지고 인식 가능해진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구성하는 것이면서 구성되는 것이다. 그로츠는 전존재론적인 성차가 “육체적 스타일”, “열려있는 물질성”, “경향성과 잠재력” 등으로 존재한다고 본다(364). 즉 스타일과 경향으로서의 성차는 이미 인간 존재의 조건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 조건 위에서 문화적인 작용과 함께 성차는 다시 산출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성차의 몸은 시작점이자 결과이며 구조이자 개방성이다. 성차는 없어지지 않으나 이 성차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물학적 여성의 몸이 전존재론적으로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 몸은 닫혀있지 않다.

그렇다면 역사적인 몸, 문화적인 생물, “육체적 스타일”로서의 여성의 몸은 어떤 특성을 갖는가? 그것은 바로 “체액”이다.

“오히려 필자의 가설은 여성의 육체성이 누출양식으로 각인된다는 것이다. (...) 여성은 그들이 인간인 한에서 남성과 동일한 정도의 견고함을 가지고 있으며, 남성과 마찬가지로 유(類)적인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여성인 한에서 여성들은 누출과 액체성으로 재현되고 자신을 그렇게 경험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²¹

그로츠에 따르면 남근중심적 사유체계는 여성들을 유동체로 재현해 놓은 채, “자신의 경계를 유지하지 못한 채 어떤 것으로 흡수되는 것에 대한 공포”를 여성에게 투사했다. 즉 여성은 자신을 액체성의 몸으로 경험하며, 남성은 여성의 몸은 경계소멸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액체성으로 재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은 남근중심적 문화에서 더러운 것, 오염의 물질 즉 비체로 혐오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여성의 몸은 바로 액체이기에 그 어떤 특수한 보편적 규정도 벗어날 수 있으며 정체성이 물화되는 것도 벗어날 수 있다. 여기서 여성의 몸은 구성되면서도 구성하는 문지방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원불가능한 특수성을 토대로 우리는 모든 여성의 보편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필자는 서론에서의 주장과 달리 그로츠가 일관적인 답을 내 놓고 있지 못하다고 본다. 한편으로 그는 여성의 몸이 경험되는 방식은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붉은 피와 젖은 모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환원불가능한 특수성이지만 그것이 경험되는 방식들은 계급, 인종, 문화에 따라 다양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²²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로츠는 여성의 몸, “월경을 한다는 그 ‘사실’만은 모든 여성에게 보편적인, 따라서 변화에 열려있을 성질이 아닌 양 취급되고 있다.”²³ 결국 여기서 그로츠는 경험은 다양하거나 변화할 수 있지만 생식기관과 성감대 자체를 구성된 것이 아님을 전제하는 것 같다는 것이

21 같은 책, 385~386쪽. (번역은 전해은, 『섹스화된 몸』, 새물결, 2010, 144~5쪽에서 수정된 것으로 가져옴.)

22 그로츠(2001), 392~3쪽 참고.

23 전해은(2010), 149쪽.

다. 전해은은 이 형태학을 그로츠가 “의도하지 않은 전략” 또는 “전략적 실천”이라고 명명한다. 그리고 이것이 비록 의도되지 않았을지라도 “배제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러한 몸의 형태학이 전략적 실천으로서의 구성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문제가 남는다. 이 전략은 누구의, 누구를 위한 전략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전략은 비록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배제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이 어떤 ‘여성’들을 배제시키고 어떤 식으로 여성들을 재규정하면서 어떠한 한계에 가둬놓는가 하는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그로츠가 여성의 생리적인 특징들의 유체성을 근거로 들어 유체의 은유가 여성에게 적합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트랜스섹슈얼들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지점에서 명백해진다.”²⁴

필자는 전해은의 지적이 옳다고 본다. 그로츠는 분명히 서론에서 자신 스스로가 지향했던 페미니즘의 방향을 위배하고 있다. 문지방으로서의 몸, 유체로서의 몸이 갖는 양가성과 역동성은 사라지고 이 지점에서 여성의 몸은 형태학으로, 생물학주의로 간주된다. 따라서 그로츠에게 트랜스섹슈얼은 “외과적인 수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결코 느끼거나 경험할 수 없다.”²⁵ 당황스럽게도 이 지점에서 그로츠는 형태학뿐 아니라 경험의 차이도 부정한다. 갑자기 그로츠는 “어떤 성이든지 간에 하나의 성은 성적으로 특수한 몸의 문화적인 의미화 작용(그것을 넘어서서 잉여가 되고픈 희망은 있다 하더라도)에 따라서 오직 경험하고 살 수밖에 없다”²⁶고 단언하기도 한다.

6. 나가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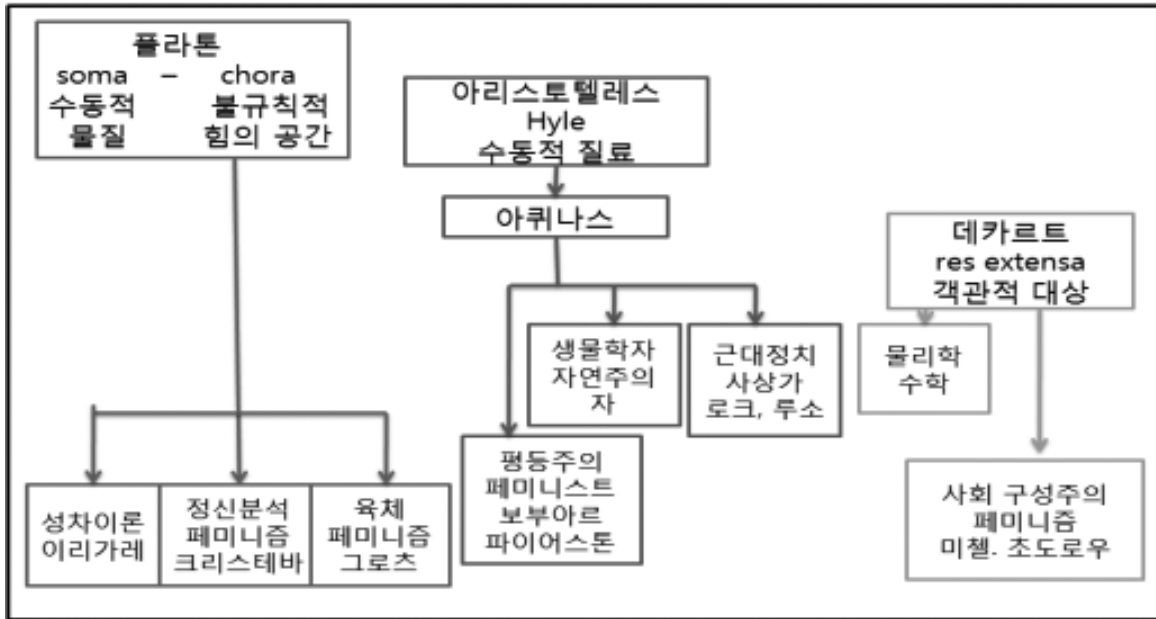
이상에서 필자는 플라톤과 함께 여성의 몸과 관련된 두 가지 철학적 개념들을 구분하고 현대 페미니즘이 각각 어떠한 개념에 기반하여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소마의 개념을 계승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료 개념이나 데카르트의 연장체로서의 몸에 대한 이해는 오랫동안 서양의 사상을 지배해 왔으며 이는 현대의 급진주의, 실존주의, 사회 구성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사고방식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여성의 몸을 수동적이고 결핍된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성들은 몸의 한계를 초월하거나 극복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최근 여성의 몸이 가진 독자적인 힘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이리가레와 크리스테바는 플라톤의 코라 개념을 소환하는 노력을 경주한다. 크리스테와 그로츠는 이를 비체 및 유체성과 접목시켜 발전시키기도 한다. 이들에게 여성의 몸은 거부되거나 극복되어야 하는 수동적 물질이나 표면이 아니라 변화와 새로움의 원천으로 재개념화 된다.

24 같은 책, 150쪽.

25 그로츠(2001), 208쪽.

26 같은 책, 151쪽.

몸과 관련된 철학적 개념의 계보학



코라나 비체로서의 여성의 몸은 더글라스나 그로츠가 말하고 있는 액체로서의 여성의 몸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흐름과 변화의 힘을 갖고 있다. 그것은 상징계의 언어로 완전히 잡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계를 이탈할 수 있는 몸이다. 그것은 DNA상의 XY도 아니며, 가슴이나 질 혹은 자궁과 같은 형태학도 아니다. 그것은 구성되면서 구성한다. 그것은 “문화적 생물”이자 “육체적 스타일”이다. 그것은 문지방이다.

여기서 우리는 여성의 몸을 이야기하기 위해, 여성의 몸을 토대로 하는 보편적 억압을 설명하기 위해, 나아가 저항적 주체를 규정하기 위해 생물학적 차원이나 형태학적 차원을 전제로 할 필요가 없다. 만약 여성을 생리혈이나 젖과 같은 액체, 즉 생물학적 차원에서 특정한 형태와 더불어 가정되는 액체로 규정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생리하지 않는 여자, 출산하지 않는 여자, 질을 가지지 않은 여자의 몸을 배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몸을 이탈과 탈주의 힘을 가진 코라 공간으로 규정하게 되면 비체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여성이 다양한 경험과 억압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 혐오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며, 특정한 기능과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트랜스섹슈얼을 배제하기보다 성적 억압의 경험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트랜스섹슈얼은 모두 비체이기 때문에 혐오된다는 사실에 함께 저항할 수 있다. 코라의 역동성은 비체로 억압되는 모든 몸의 존재들과의 연대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몸의 개념화는 또한 억압구조를 설명하면서도 이 억압의 구조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한다.

물론 우리는 코라로서의 여성의 몸을 탈이분법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본질이나 물화된 특성 등을 또 다시 전제로 하고 있지는 있는지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코라 개념과 같은 힘이 기존의 남성중심적 상징계를 변화시킬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인지 등을 충분히 숙고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글을 통해 필자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코라의 개념을 소환하는 이들의 이론이, 수동적 질료나 객관적 대상으로서의 몸 개념에 의지함으로써 여성의 몸을 부정적인 것으로 삭제하고 있는 이론들과는 달리, 여성의 몸을 이질성과 불규칙성 혹은 변화를 추동하는 긍정적인 힘의 공간으로 설명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몸을 강조하는 방식이 다른 성소수자의 몸을 배제하는 결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몸을 코라 공간으로 보는 관점을 견지한다면 우리는 오랫동안 은폐되어왔던 여성의 몸이 갖는 창발성과 긍정성을 또 다른 타자의 배제나 희생 없이 조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교차성과 페미니스트 실천

김보명 (여성학 연구자)

1. 들어가며

페미니즘은 한 가지 언어나 전략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역사들과 문화들 속에서 나타나는 페미니즘의 다양한 모습들은 종종 단수형으로서의 페미니즘이 가능한지를 의문에 부치기도 한다. 서구, 개발 국가, 백인여성들의 페미니즘은 비서구, 후기-식민, 유색인종여성들의 페미니즘과 조우하지만 충돌하며, 서구의 역사에서도 제1물결과 제2물결과 제3물결의 페미니즘들은 구별되며, 무슬림 페미니즘은 서구적 근대의 세속적이고 자유주의적인 페미니즘과 다르다. 이 겹침과 다름과 충돌 속에서 페미니스트 역사는 그 궤적들과 경로들을 만들어간다.

페미니즘의 다양한 면모들은 또한 ‘여성’이라는 범주 혹은 주체와 페미니스트 정치학이 갖는 관계를 질문하게 한다. 여성운동(women’s movement)은 언제나, 혹은 필연적으로 페미니스트 실천으로서의 의미와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혹은 정체성 범주로서의 ‘여성’ 없는 페미니스트 실천이 가능한지, 페미니즘은 ‘여성’이라는 이 문제적 대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혹은 맺어야 하는지. 한편으로는 차별과 억압의 산물로서의 ‘여성’이라는 정체성 혹은 범주를 해체, 혹은 전복하고자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을 바로 그 해체와 전복의 행위자로 정치화하고 하는 페미니스트 실천의 딜레마는 오늘도 진행형이다.

2. 교차성 정치학, 혹은 교차적 페미니즘

교차성은 페미니즘의 한 가지 방식인 동시에 페미니즘이 한 가지 이상의 방식들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정치학이다. 젠더 정치학과 인종 정치학이 만나고 충돌하고 상호구성적으로 교차하는 관계에 있다는 인식 혹은 발견은 흑인 페미니즘과 치카나 페미니즘을 비롯한 유색인종 여성 페미니즘의 전통에서 꾸준히 등장했다. 소저너 트루스, 아나 줄리아 쿠퍼, 폴리 무레이, 프랜시스 빌, 오드리 로드, 킴벌리 크렌쇼, 패트리샤 힐 콜린스, 벨 훅스, 글로리아 안잘두아, 체리 모라가, 찬드라 모한티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1980년대부터 미국 여성학계의 비판적 언어이자 방법론으로 자리 잡은 유색인종여성 페미니즘은 탈식민 페미니즘, 후기 구조주의 이론, 그리고 퀴어 정치학의 부상과 더불어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에서 백인-이성애자-중산층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누려온 특권들을 비판적으로 가시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젠더 정치학과 인종 정치학 사이의 공백에서 침묵되거나 왜곡되어온 유색인종 여성들의 경험, 정체성, 의식, 이해관계를 페미니즘의 중심으로 불러오고자 하였다.

교차성의 정치학이 페미니스트 실천에 주는 시사점들은 무엇일까?

첫째, 교차성의 정치학은 페미니즘 내부의 이질성과 차이들을 그려내면서 소수자 집단 내부의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가시화한다. 교차성의 정치학에서 인종과 계층, 성 정체성, 장애 여부, 종교와 문화 등은 모두 페미니즘의 다양성을 구

성하는 요소들이자 힘들로 나타난다.

둘째, 교차성의 정치학은 젠더 정치학만으로 불완결적이며 변화에 열려있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젠더 정치학은 인종 정치학, 계층 정치학, 성 정치학, 장애 정치학 등과 맞물리고 교차하고 충돌한다. 따라서 젠더 정치학의 경계는 열려 있고 다른 소수자 정치학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쓰인다.

셋째, 교차성의 정치학은 페미니즘은 종종 여성들의 경험과 이해관계를 모두, 혹은 온전히 재현/대표 하는 데 실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실패는 페미니즘의 불가능성이나 무의미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반대로 이 실패는 페미니즘 역동적이고 비판적인 실천으로 이끈다. 교차성의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이 누구 혹은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지, 혹은 무엇이 여성에게 좋은 것인지는, 언제나 논쟁과 경합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여성은 계속해서 새롭게 재현/대표되어야 하는 범주이며, 이 재현/대표의 내용과 과정은 정치적인 실천의 대상이다. 즉, 정체성의 정치학은 정체성을 정치화하는 실천이다.

넷째, 교차성의 정치학은 페미니즘과 ‘여성’ 모두 특정한 사회적 시공간 속에서 출현하는 담론적 사건임을 보여준다. 교차적 페미니즘에서 ‘여성’은 역사와 문화를 가로질러, 혹은 그것들의 외부에 선행하여 존재하는 범주나 주체들이 아닌, 자신들이 살아가는 현재적 세계 속에서 생각하고 행위하고 또 실패하는 불완전한 행위자들이 된다.

다섯째, 교차성의 정치학은 페미니즘의 질문을 ‘여성’으로부터 여성들이 살아가는 세계와 그 세계의 구조적 질서로 옮겨간다. ‘나는 여성이 아닌가?’라고 물었던 트루스의 질문은 정체성이나 ‘여성’ 범주에 대한 심문이 아니라 노예제와 인종차별로 구성된 미국사회의 주류질서와 그것에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페미니즘의 한계에 대한 비판이었다. 교차성의 정치학은 정체성의 범주들을 쪼개고 세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교차성의 정치학은 지배와 차별의 질서들이 어떻게 짜여지는지, 그러한 짜임 속에서 다양한 소수자 집단들의 경험과 이해관계가 어떻게 배치되고 또 충돌하거나 조우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배치와 충돌과 조우의 지점들을 통해 가능해지는 연대의 정치학은 어떤 모습일지를 질문한다.

3. 정체성의 정치학과 ‘여성’

미국에서 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 패배의 원인으로 정체성의 정치학을 지목하면서 논쟁의 중심에 섰던 마크 릴라(Mark Lilla)는 뉴욕 타임즈 기고문에서 이런 도발적인 선언을 보여주었다. “미국 정치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정체성 운동은 바로 KKK(Ku Klux Klan)이었음을 리버럴들은 기억해야 한다. 정체성 게임을 하는 이들은 잃을 준비를 해야 한다.”⁰¹

릴라의 도발적인 지적은 비록 그 자체로 온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정체성의 정치학이 근본주의와 만나는 지점을 적절히 짚어낸다. 정체성의 정치학이 정체성을 정치화하기보다는 반대로 정치적 재현/대표의 어려움을 정체성으로 손쉽게, 그리고 빠르게 해결하려고 할 때, 정체성의 정치학은 보수화된다.

페미니즘은 사회적 실천이다. ‘여성’은 여전히 유용하지만 위험하고 문제적인 이름이며, 페미니즘과 여성 사이에는 완전히 해소될 수 없는 긴장과 갈등이 작용한다. 우리가 ‘여성’을 자연화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리고 페미니즘의 사회적 책임을 직시한다면, 급진적 페미니스트 실천은 우리의 세계를 변혁하는 새로운 힘으로 출현할 것이다.

01 Mark Lilla, “The End of Identity Liberalism” New York Times (Nov. 18, 2016)
<https://www.nytimes.com/2016/11/20/opinion/sunday/the-end-of-identity-liberalism.html?mcubz=0>

평등의 언어를 버리기 위한 실천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이 글은 페미니스트로 인권운동을 하면서 경험한 고민의 일부이기도 하며,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실천하면서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 찾기이기도 하다. 인권운동을 하면서 페미니즘은 인권운동의 소중한 자산이자 차별을 볼 수 있는 현미경 같은 것이었다. 페미니즘은 성차별과 성별 위계 등 미세한 권력차를 보게 만든 인식 틀로 인권운동과 인권담론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던가. 조효제 교수가 지적했듯이 페미니즘의 공사영역 분리타파는 신자유주의 시기 ‘여성의 권리가 곧 인권’이라는 명제에 도달하게 했으며, 페미니즘은 초국적이면서도 개인적인 이념이 되었다.⁰¹

2018년은 페미니스트 인권활동가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 보였다. 아니 더 많이 해야 할 사명감 같은 것이 생겼다. 미투운동을 비롯한 여성들의 실천, 페미니즘의 진전에 힘을 보태야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싶었다. 2018년 페미니스트로서 어떻게 인권운동에 기여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시작했던 활동 중 하나가 페미니즘으로 쓰는 인권선언이었다.

페미니즘 선언의 주어

모든 선언문은 역사적 시대적 한계가 있다.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움직였던 고갱이가 있기에 현재까지 살아남은 것이다. 시대적 열망을 ‘인권’이란 단어로 붙들어 놓은 것이다. 1948년 운동과 인식의 한계, 국제연합(UN)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무엇인가. 모든 인간은 ‘존엄과 평등을 가진 존재’라는 선언이 아닐까.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인권단체들이 모여 신자유주의와 국가권력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고 광장에서 초를 들었던 사람들의 열정을 2008인권선언으로 재구성했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들여왔을 때 사람들이 우려했던 건강권, 생명권에 대한 요구와 권리가 당시 정부가 주도하고 있던 민영화정책에 대항으로 확산됐던 그 경험과 실천을 선언에 담으려 했다. 그리고 인권운동에서 1948년의 선언의 한계라 여겨지던 것을 재구성해서 남기는 것도 의미가 있기도 했다. 당시 장애인권운동, 성소수자운동, 청소년운동, 이주민운동을 비롯한 소수자운동의 성장과 고민을 조금 담아내

01 인권학자 조효제 교수는 『인권의 문법』에서 “페미니즘은 역사적으로 두가지 평등개념을 발전시켜 왔다”고 본다. 하나는 “시간상 탈젠더화에 근거한 평등개념으로 고용, 승진, 취학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역할을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게 개방하자”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차이를 인정하는 평등개념으로 여성과 남성의 삶의 경험과 욕구가 다르므로 고유하게 젠더 특성에 부합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욕구의 차이와 권리의 차이를 인정하지는 적극적 평등이론은 여성의 영역을 넘어 모든 소수자 영역(장애인,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민족)으로 확장된 차이의 정치, 정체성의 정치라는 담론을 만들어낼 정도로 발전했다.”-194쪽

려 했다. 또 국가권력에 맞선 집회시위의 권리 등 표현의 자유 등도 담으려 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최근 몇 년간의 여성들의 실천을 담고 페미니즘의 열기를 담고자 페미니즘으로 쓰는 인권선언을 작성하기로 했다. 남성의 위치와 경험에 한정된 선언의 내용을 구체화할 것, 최근 몇 년의 실천과 쟁점을 담기로 했다. 그러려면 먼저 보편성의 이름으로 추상화된 인권선언을 페미니즘으로 재해석해야 한다. 1948년 인권선언은 다른 많은 인권선언이 그러하듯 보편성을 선언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모든 인간이 차별 없이 인권을 누리는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았다. 보편성의 이름으로 추상화된 권리에 젠더화된 현실을 선명하게 보이고 바꿀 ‘날을 세우는 일’이 필요했다. 선언이 선언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현실과 그것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원칙을 드러내야 한다.

먼저 여성인권운동의 주요한 선언문들을 검토했다. 1791년 올랭프 드 구즈의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선언’(이하 여성인권선언)의 내용은 아직도 유효한 선언 내용이었다. 가장 유명한 문구인 ‘여성은 교수대에 오를 권리를 가졌다. 연단에 오를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10조 의견과 표현의 권리는 1789년 프랑스혁명선언의 10조가 담아내지 못한 여성들의 표현의 자유 제약⁰²을 명징하게 보여준다. 10조는 여성들은 조용히 침묵하고 남성들의 말에 따를 것을 강요하는 사회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2018년에 우리는 구즈처럼 선언의 주어(주체)를 여성으로 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여성’이 단일하지 않음을 알고 있으며, 가부장제도가 낳은 성별이분법과 이성애중심주의가 어떻게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페미니즘 실천주체로서의 여성은 변화해왔다. 운동의 역사는 수많은 여성들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실천으로 ‘숨겨진 존재’들의 목소리가 밖으로 나왔다. 1791년 당시 ‘모든 사람’ 또는 ‘시민’이란 언명에 삭제된 ‘여성’을 명시하는 것은 위험하고 혁명적인 행위였다. 지금은 ‘여성’으로 주어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에도 한계가 있음을, 많은 다른 여성들과 소수자들을 배제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벨 훅스의 표현대로 “페미니즘은 성차별주의와 그에 근거한 착취와 억압을 끝내려는 운동”이라 정의한다면 페미니즘은 여성만의 것도 아니며 성차별에 근거한 착취와 억압은 여성의 권익향상만으로 달성될 수 없다. 페미니즘운동의 주요 주체가 여성이기는 하나 페미니즘의 지향은 여성의 실천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더구나 난민협오에 동참한 여성들이 여성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2018년 한국에서 주어는 여성에 한정되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난민여성은 여성이 아닌가?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이 아닌가. 이는 결국 국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생물학적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국가권력의 분할 통치에 동원되는 것일 수 있다. 여성들 간의 미세한 권력차이(위계)를 놓고 가겠다는 부정의에 동참하는 일이다.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구조(가부장제도)를 건드리지 않고 다른 여성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여성은 성별 외에도 경제적 배경, 학력,

02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1789년 8월 26일) 제10조. 누구도 자신의 의견 표명이 법이 규정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한 설사 그것이 종교적인 것일지라도 그 의견 때문에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된다.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선언>(1791년)제10조. 누구도 자신의 기본적 의견에 대해 침묵할 것을 강요받아선 안된다. 여성은 교수대에 오를 권리를 가졌다. 마찬가지로 여성은 법이 규정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한, 연단에 오를 권리를 가져야 한다.

나이, 국적, 장애유무 등 수많은 조건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기에 차별의 위계화에 대해 말해야만 한다. 피지배자들의 내부 위계만을 바꾸어 분할 통치하며 지배질서는 유지되기 때문이다. 페미니즘의 위치가 억압의 권력에 맞선 저항이라면, 피지배자의 언어와 담론이 위계의 밑바닥에 있는 다른 여성과 소수자를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페미니즘으로 다시 쓰는 인권선언’(이하 페미니즘선언)에서는 여성이 아닌 ‘모든 사람’을 주어(권리의 주체)로 쓰기로 했다. 구체적인 차별담론을 명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차별 없이 권리를 누려야할 주체를 표시했다. 여성만이 아니라 장애인, 이주민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선언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 중에는 장애인이거나 이주민이거나 난민인 여성도 있으므로 이는 여성의 문제기도 했다. 여성이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점, 생물학적 남성일지라도 성별이분법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짚어주는 것이 페미니즘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페미니즘의 지향인 ‘모두’의 평등에 반하는 ‘특정 누군가의 평등’만을 선언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인권운동과 여성운동의 공동실천

페미니즘 선언 작성사업을 제안하면서 기대 중 하나는 인권운동을 중심에 둔 단체(활동가)와 여성운동이 함께 하는 작성이 줄 시너지효과, 만남이었던 거 같다. 전문성의 차이로 인한 논의의 어려움은 별로 없었다. 오히려 권리항목별 논의는 각기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경험을 더 나눌 수 있어서 풍부해질 수 있었다. 활동의 근거지는 다르나 페미니스트로서의 지향은 비슷하니까.

그렇다면 인권단체와 여성단체의 공동실천이란 무엇일까. 사실 인권단체와 여성단체의 공동실천이란 단체를 구분하면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10년 전 인권단체들이 단체들을 소개할 때 누군가 했던 질문이 떠오른다. “인권단체가 뭐예요? 여성단체도, 노동단체도 인권단체인데..” 질문한 사람은 인권단체와 인권단체가 아닌 것으로 가르치는 기준은 무엇인가 물었던 것이다. 여성단체도, 노동단체도 특정집단(영역)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단체이므로 인권단체가 아니냐는 이야기였다. 기업과 인권을 다루는 단체도, 정보인권을 다루는 단체도 모두 인권단체이다.

따라서 인권단체라고 하는 명명은 어쩌면 정확한 규정은 아닐 게다. 일반 인권단체, 또는 자유권이나 사회권 영역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하는 인권단체라고 부르는 게 더 적절할 수도 있다. 과거 인권단체들이 독재정권에 대항하며 양심수를 지원하고 연대하며 표현의 자유를 외치거나 IMF 이후 노숙인, 비정규직 등 빈곤층의 사회적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했던 과거 활동을 비춰보면 더 그렇다.

그럼에도 '인권운동, 여성의제 공동실천'이 화두로 잡은 것은 먼저 과거의 연대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화하고 발전하고 싶어서다. 인권단체와 여성단체의 공동실천이란 특정 사업이나 특정 사건에 대한 공동대응을 함께 하면서 페미니즘의 시각이 강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사회정의를 기획하는 다양한 운동들이 만남은 해방의 기획을 세울 시야를

넓혀준다.

그동안 인권단체와 연성단체의 공동실천 경험이 많지 않아, 서로에게 배우고 발전시키는 도약의 기회를 모색하기 쉽지 않았다. 현재는 차별금지법이 대표적인 법안 제정을 중심으로 연대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과거 이른바 조두순 사건 때 아동성폭력에 대한 정부대처 중 하나로 형량을 높이는 법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공동대응을 한 적이 있었다. 당시 정부는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응으로 국가형벌권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책임을 다한 것인 양 했고, 이는 성인성폭력과 아동성폭력을 구분을 두는 정책의 일환이기도 했다. 현실에서는 성폭력 사건의 기소율이나 낮은 형량을 두면서도 이는 덮어두었다. 자유권(국가형벌권의 방향 제한)과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기관(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태도에 대한 입장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젠더적으로 국가권력을 해부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두 번째는 인권운동과 여성운동이 만나 '인권'의 이름으로 여성의 인권을 제한하는 가부장적 인식과 제도를 깨뜨리기 위해서다. 인권운동과 여성운동의 어떤 사건에 대해 같은 입장을 내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가해자인권이나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잣대로 성폭력 가해자 이름 공개는 종종 논란이 되곤 한다. 인권단체들이 다 페미니즘 시각을 지니지도 않았을 것이니 상상가능하다. 그 틈새를 채우기 위해 인권운동과 여성운동이 대화하며 서로의 언어와 논리를 나누어야 한다.

이는 인권의 특성 중 하나인 '보편성'에 연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권의 보편성은 많은 인권문제에서 차별에 반대하는 주요한 근거이기도 하나 다른 한편으로 구조적으로 차별받는 집단에게 그리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보편성의 이름으로 행한 특정집단의 이해를 대변한 것이 많은 역사를 고려하면 더 그렇다. 게다가 인권의 보편성을 흔히 중립성으로 오해하거나 치우침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현실에서도 더 그렇다.

2007년 횡단의 정치를 모색했던 사회운동포럼 때 일부 인권단체들은 보편성을 재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당파성으로 보편성을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당시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계급적 현실을 염두에 둔 주장이었다. 이는 현재도 유효하지 않을까. 다만 이때 계급에는 노동계급만이 아니라 성별계급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보편성의 언어로 포장된 가부장적 인식과 제도를 깨뜨리기 위해 당파적 인식 틀이 필요하다. 여성의 문제는 모든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세 번째로 인권운동과 여성운동의 공동실천, 또는 인권운동이 여성억제에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의 활동이 나사업을 바라보는 기존 시각을 변경하는 것이다. 사업의 내용을 페미니즘적으로 재구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다른 말로 여성노동자 의제를 페미니즘 의제로 다가오게 할 것인가와 맞닿아있다.

사람들은 흔히 여성노동자 관련 의제나 활동은 페미니즘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비슷하다. 여성노동자 의제는 왜 여성운동이나 페미니즘 의제가 아닐까? 올해 초 만난 어떤 공직자는 여성노동자

관련 단체 활동을 젠더나 여성운동이 아닌 것으로 바라보았다. 여성노동자들의 대다수도 페미니즘을 모르거나 페미니즘에 관심이 없다. 많은 여성노동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언어와 운동으로 페미니즘이 아니라 ‘노조나 계급’만을 떠올린다. 그리고 대다수의 노조는 여성의 권익 관련 의제나 활동을 종종 뒤로 미룬다. 아직도 노동운동 내 남성중심적 문화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여성노동자 의제를 페미니즘 의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체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함께 실천해야 한다.

먼저 여성노동자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해석할 도구, 페미니즘적 시각을 전달해야 한다. 이것도 공동실천이 아닐까. 우리의 실천을 바라보는 잣대를 달리 바라보고 다르게 구성하는 것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올해 여성노동자 관련한 활동을 많이 했다. 사회적으로 권리가 많이 제한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나이 많은 여성들의 돌봄노동인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교육하고 권리를 진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같이 했다. 이때 기본교육은 젠더감수성교육과 노동인권교육이었다. 참가자들은 매우 흥미로워 했다. 왜 자신들의 노동이 평가절하 되는지 사회구조와 현실의 작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낯설었던 젠더라는 용어가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작동됐는지 말하고 일상에서 겪는 차별을 권리로 이야기 했다.

물론 여성노동자들이 젠더감수성 교육이나 페미니즘에 대한 호감이 생긴 건 단지 교육 때문만은 아니다. 미투운동으로 사회에 고조된 여성인권에 대한 관심이, 자신의 차별경험을 말해도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인식을 주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젠더갑질 실태조사를 하면서 만난 20대 여성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페미니즘 공부를 하고 자신이 일터에서 경험하는 것들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해가고 있었다.⁰³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여성단체와 사업을 함께 하든 하지 않든 사업(활동)에 페미니즘적 젠더적 관점과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에도 달성될 수 있다. 꼭 여성노동자관련 사업이 아니더라도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통계에 성별 통계 등을 도입하는 등 젠더관점을 도입하는 것은 중요하다. 모든 설문 사업에 성별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설문을 만드는 것도 그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상반된 두 번의 경험이 있다. 한번은 여성노동자 관련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이라고 나 자신도 기계적으로 접근했던 듯하다. 상반기 전국 교육청의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책을 평가하는 작업을 했는데, 자료에 성별 통계를 요구하지 않았다. 성별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지도 않았으니 드러내기란 더 어려운 일이다. 그러다 젠더갑질 실태조사를 하면서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을 만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내가 놓치고 간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하반기 항공사 승무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하면서 설문작업에서 응답자 기본정보에 성별을 묻는 문항을 남녀로 하지 않았다. 남녀 외에 ‘그외’ 항목과 ‘알리고 싶지 않음’을 넣었다. 주변인이 모르는 성별 정체성에 대해 응답자가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자 젠더이분법에 익숙한 설문 문항이 아닌 것을 접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요약하면 여성의제나 인권의제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페미니즘의 의제가 여성의제에 한정시키던 그동안의 구분 짓기를 벗어나 새롭게 운동을 바라보는

03 그때 만난 20대 여성노동자는 페미니즘을 알고 나서 세상이 달리 보인다고 하며, 이제 끔찍한 세상의 실체를 알게 돼 천진난만하게 웃을 수 없다고 했다. 무감했던 과거에 비해 더 괴로운 일들이 많아졌다고.

것이 필요하다. 모든 인권의 문제는 여성의 문제이지 않은가.

여성운동의 공동실천의 큰 효과는 여성운동이 여성노동자들의 권리향상에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왜 남성중심적 노조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가슴에 묻어두어야 하는가. 힘써서 함께 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보며 여성노동자들도 전략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차이의 공유로 평등의 언어로 나아가기

우리는 서로 다른 우리에게 대해, ‘다른 여성’들을 모르기에 쉽게 타자화시키기도 하다. 이것을 뛰어넘으려면 드러내고 만나야 한다. 여성들의 다양한 현실을 드러내고 그 여성들을 만나게 하는 것, 차이를 넘나드는 대화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방식으로 차별받고 있으므로 그 차별을 드러내야 했다. 차별과 차이가 드러나야 공유와 대화가 가능하다. 그래야 가부장적 지배가 유지되고 변화되는 방식과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으며 연대의 힘을 어떻게 모으고 발휘할 지 모색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노동자들을 교육하면서 해화역 시위를 언급하면서 나이 많은 돌봄여성노동자들도 자신의 처지와 요구를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린스가 짚었듯이 “교차성 이론은 인종, 계급, 젠더, 섹슈얼리티 등이 개인의 속성이 아니라 사회역압을 구성하는 여러 체계라고 보는 분석틀”이므로 “각 집단은 자신의 관점으로 말하고 부분적이고 정황적인 지식을 서로 나누어야”⁰⁴한다. 물론 연대를 위한 집단 간 대화를 넘으려면 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이다. 서로 다른 여성들의 만남과 차이의 공유는 저항의 주체성과 위치성에 영향을 미치고 저항의 주체성과 위치성을 더 강화할 것이다. 그걸 발판으로 배제하지 않는 평등의 언어를 버릴 수 있지 않을까.

04 ‘교차로에 선 여자들’, 『교차성*페미니즘』한우리, - 45쪽 재인용.

■ 세션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온 사람들의 인권

사회 강론 (인권저널)

발제 1 탈북민이 생각하는 탈북민의 정체성과 한국 사회의 문제점

김윤희 (서울대학교)

발제 2 탈북민 정책은 지금 왜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한가?

김화순 (한신대학교 통일평화정책연구원)

발제 3 북한출신주민,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가기

- 남북시민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실천의 재구성

이민영 (고려사이버대학교)



발제 1

탈북민이 생각하는 탈북민의 정체성과 한국 사회의 문제점

김윤희 (서울대학교)

탈북민 정책은 지금 왜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한가?

김화순 (한신대학교 통일평화정책연구원)⁰¹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 북한을 떠났던 식량난민의 일부가 한국에 입국하면서 국내에 정착하는 탈북주민의 수는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주민들은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불리우면서 이질적인 탈북주민들과 남한주민과 어울려 사는 과정 그 자체가 일종의 ‘통일실험’이자 ‘사람의 통일’이라고 미화되었지만 그들이 겪은 현실은 아름답지도 낙관하지도 않았다. ‘먼저 온 통일’은 이제 臣民이 되도록 강요되었다.

I. 분단의 정치

오늘날 분단체제의 국가권력은 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관계 저변에서 음습하고 강력하게 작용하면서 분단체제의 주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다. 이탈주민은 분단의 경계선을 넘는 순간부터 ‘이편이나 저편이나’를 가늠하는 논란의 중심에 서는 숙명을 지니게 되었다. 북한 공장과 장마당에서 이들의 노동이 ‘생존의 정치’에 의해 움직였다면, 남한에 온 이후 이들은 다시 ‘분단의 정치’와 만나면서 양극단에서 신통일역군이자 정치화된 신민(臣民) 혹은 잠재간첩이라는 양극단의 모습으로 분류되었다. 그 과정은 이러하다.

2012년 대선 시 국정원댓글사건에서 탈북자를 여론조작 댓글 알바로 동원한 사건⁰²을 비롯하여 2016년 4월 총선 직전 통일부의 북한음식점 종업원 집단탈북사건 공개, 영화 ‘자백’으로 널리 알려진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⁰³ 등 국가 권력이 대선 전, 총선 전에 탈북자를 체제경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정치공작들이 이루어졌다.

원래 탈북민들은 출생이후 북한의 과도한 정치사회화과정에서 정치적 경험들이 습득되었다. 그런데, 이들의 특성들은 한국에 와서 다시 과잉정치화된 환경에 놓이게 되면서 과거 경험들이 전이(transfer)되며 경험들이 재활용된다. 한국에 온 이후에는 탈북민들은 정부가 배타적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으면서 극우편향의 집회에 동원되는 등 보호와 동원의 이원적논리로 구성된 정치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환경에 노출되어진 탈북민들이나 특히 탈북단체 임원들은 한국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북한과 비슷한 나라라고 지각하기에 이른다.

우리는 이제 국가 권력이 그간 탈북자들에게 행한 정치공작의 실태를 탈북민 이주의 역사에 비추어 조명하고 이것

01 한신대학교 통일평화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02 2012년 18대 대선에 국정원이 여론을 조작했던 사건으로 알려졌으며, NK지식인연대 소속 탈북자 100여명이 댓글 알바로 동원되었다.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였던 보수단체들을 ‘중간조직’으로 두고 ‘현장 댓글부대’에 하도급을 맡기는 방식으로 여론조작을 지시·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로 댓글활동에 참여했다고 알려진 탈북자단체 NK지식인연대의 경우 국정원이 아닌 별도의 보수단체로부터 현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자금 흐름 추적을 통해 국정원→중간조직급 보수단체→현장 댓글부대로 이어지는 사이버 여론조작 커넥션이 새롭게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정원 댓글부대 활동비 흐름 추적. 문화일보. 2017.8.21.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821MW151421290227>

03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몰면서 증거를 조작하였으며, 2014년 2월 중국 대사관이 검찰이 제출한 문서 3건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회신을 보내면서 증거조작이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2015년 10월 대법원은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 반드시 풀어야 할 의혹 네 가지. 프레시안. 2017. 7. 1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3203>

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진실과 화해 위원회에서 각종 조사연구를 했던 사례에 비추어 탈북자인권문제도 이에 준해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본다.

1. 정착청사진 : 고용없는 정착정책과 전시성 복지

따뜻한 나라 대한민국은 이탈주민에게 수많은 혜택을 주었다고 선전하였으나, 정착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주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안정된 일자리다.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상태는 여전히 ‘고단하고 억울하고 불안하다’.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이들의 취업눈높이는 그다지 높지 않으며, 대부분의 이탈주민들은 신체적으로도 취약한데 주변부일자리에 흘러 들어가 외국인의 대체인력으로 일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분단 노동시장 구조 하에서 저임노동시장에 갇혀 있는 저임금노동자이기도 한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한 바와 같이 을들에게 한국의 노동시장은 생존투쟁의 아비규환과 인격적인 손상을 제공한다. 탈북여성들의 삶은 더욱 가혹하다. 기아를 피해 혹은 돈벌이를 위해 이 땅에 흘러왔던 수많은 탈북여성들은 북한에 송금하기 위해 오늘도 일탈노동의 가파른 길을 낭떠러지를 향해 떠밀리듯 위태롭게 걸어가고 있으며 성폭력의 위협에 노출되기를 스스로 감수하고 있지만, 국가는 그들의 존재 자체를 마치 없는 듯이 취급한다.

남한에 온 탈북민의 생활에서 부정적인 면이 노출되는 것은 국가 안보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평가에 의해 이들에 관한 정보나 연구들은 비공개로 처리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8년간 하나재단을 비롯한 정부기관들이 주도했던 수 십억에 달하는 방대한 실태조사들이 있지만 이들 원자료는 단지 수집될 뿐이며 분석되어 정책에 활용되지도 연구되지도 않는다. 이는 다른 연구기관의 자료들의 원자료가 공개되어 연구나 정책을 입안하는데 활용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이들의 노동시장 상황도 좋지 않다. 현재 정착기간이 5년 이상 된 사람들과 5년 미만의 사람들을 비교해볼 때, 오히려 임금이나 고용안정성 면에서 나아지지 않았다는 결과는 그동안 각종 고용관련 정책이 효과를 일시적인 반짝 효과만을 거둔 결과로서 이중노동시장 중 저임금노동시장으로부터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대책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지만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탈북민 고용정책에 대한 비전이나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고용지원금 제도 대신 내놓은 미래행복통장제도 역시 조삼모사에 그쳤다. 현재 문재인 정권의 수립이후 나온 제 2차 정착지원 기본실행계획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주민의 일부로 인식되어왔던 정책적 기초 하에서 시민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선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사가 촛불혁명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알바시위-태국기집회-국정원정치공작 참여 등의 일련의 사건이 보도된 이후 탈북민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시각이 더욱 부정적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시민사회로부터 분리되어 3만 탈북민이라는 이름으로 호명되면서, 통일이라는 명분으로 별도의 집단으로서 분리되어 관리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권력, 노동시장으로부터 발생하였으나 이제 탈북민사회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안이하며 근본적인 전환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2. 시민사회로부터 분리 : 강한 정부주도형 거버넌스와 독자적 서비스전달체계

2000년 이래 2017년 현재까지 탈북의 한국사회 적응이나 사회통합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의학, 심리학, 인류학, 교육학, 사회학, 정치학 분야를 중심으로 주로 지원제도나 남북한 이질성이나 통합을 위한 정착정책 효율성이나 정착 정책의 방향, 청소년, 여성, 청년층과 같은 대상별 접근 등 미시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오면서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형국이 만들어졌다. 정착 탈북자 커뮤니티의 통합과 안녕을 유지하는데 있어 기본 틀로 작동되어온, 그들을 향한 분단의 정치, 분단체제에 터한 안보권력과 탈북민 관계, 국정원 조사과정에서의 인권문제, 대한민국 국가 권력의 탈북자인권 침해 사례연구 등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였기 때문이다.

그 누구보다 탈북민의 주무부처로서 탈북민 사회의 안녕을 담당해온 통일부야말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다. 인권이야말로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보편적인 의제이다.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북한의 북한주민 인권침해에 대해 많은 자료를 수집해왔고 국제사회에 중요 아젠더로서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미 언론을 통해 이번에 드러난 탈북민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나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드러난 탈북민 사회의 위기는 사회통합의 위기로서 정치·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복합적인 위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촛불정부의 출범으로 탈북민들이 우리 시민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탈북민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할 결정적인 시기를 맞았지만 전환의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통일부는 자성도 반성도 없이 기존의 방식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형태의 사회통합형 정책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을 뿐이다.⁰⁴ 이러한 탈북민 정책의 기초는 제 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에서도 드러난다.

II.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으로 왜 안 되는가?

통일부는 4. 3.(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과 ‘2018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하였다. 통일부는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생활 밀착형 북한이탈주민정책’의 추진 방향을 정립하였다.

목표	「생활밀착형」 지원을 통해북한 이탈주민의 삶이 나아지는 따뜻한 사회 구현		
	↑		
방향	삶의 질을 높여주는 북한이탈주민 정책	온 사회가 함께하는 북한 이탈주민 정책	따뜻한 이웃이 되는 북한 이탈주민 정책
과제분야	① 일자리 ② 교육 ③ 민원 서비스	④ 거버넌스 ⑤ 하나센터	⑥ 맞춤형 보호 ⑦ 사회통합

<그림 1> 통일부의 제 2차 정착지원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정책의 개념도

04 [통일부 보도자료] 탈북민 3만 시대, 함께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친근한 이웃으로 포용: ‘자신감은 올리고’, ‘편견은 줄이고’, ‘지원시스템은 효율화’, 탈북민 역할제고, 인식개선과 포용, 맞춤형 중점‘사회통합형’정책 추진 2016.11.25.일자 자료. 탈북민의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는 2016. 11월 25일 사회통합형 정책추진안을 내놓고 있는데, 개선점으로 ‘고용률 등 객관적 정착지표는 지속 개선되어 왔으나, 삶의 질 측면에서는 미흡하였다. 특히, 탈북민-지역민 간 소통 부족, 자신감·소속감 결여 등으로 탈북민이 우리 사회와 융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인식이 2016년 ‘사회통합형’ 정책 추진의 배경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총 20개 중앙부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2018년도 사업계획을 종합하여 총 51개 세부과제를 선정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18~’20)」에서 명시한 7대분야 23개 정책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2018년도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의 가장 큰 특징은 이번에 내놓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하던 사업들이 그대로 나열되면서 놀라울 정도로 전혀 변화한 것이 없다는 사실에 있다. 단, 타부처와의 협동을 강조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지자체와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선언적으로 천명하였다. 과거 ‘협업’구조가 단지 주무부처 중심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이같은 구조만으로는 개선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구체적 시행계획에서는 지난 수년간 거의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사업들을 단지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타부처와의 연계를 강조하는데 그치고 있어 문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수립이후 원칙의 선언과 이를 뒷받침할만한 실행계획의 부재는 사회 각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다.

목표	정책과제(분야)	세부과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사회 구현	①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 지원	11
	② 청소년 교육 및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	10
	③ 생활밀착형 서비스 확대	4
	④ 탈북민정책 협업체계 정비	3
	⑤ 하나센터 기반 강화 및 지원인력 역량 강화	4
	⑥ 취약 탈북민 보호체계 확충 및 생활안정 지원	13
	⑦ 탈북민을 포용하는 우리사회 환경 조성	6

<표 1> 통일부의 제 2차 정착지원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정책의 정책과제

그간 탈북민 정책은 통일부에게 있어서 남북교류사업이 부재한 상황에서 전국적 서비스 전달체계와 공단성격의 하나재단 설립이나 전국 하나센터 지정 등으로 조직확대와 예산증액을 가져온 효자사업이었다는 점에서 과거 탈북민 정착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탈북민정책이 분단의 정치와 신민화로의 경사, 고용전략 없는 정착정책과 전시적 복지, 시민사회와의 분리 등을 초래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했던 점을 고려할 때, 당초 정착목표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처해 있다.

마을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는 시민적 삶과 민주주의 참여			
교육기회 바탕으로 안정된 직업 성취	시민성에 근거한 참여민주주의	차별금지와 평화공동체 건설	
목표	「생활밀착형」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삶이 나아지는 따뜻한 사회 구현		
방향	삶의 질을 높여주는 북한이탈주민 정책	온 사회가 함께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책	따뜻한 이웃이 되는 북한이탈주민 정책
과제분야	① 일자리 ② 교육지원 ③ 민원 서비스	④ 거버넌스 ⑤ 하나센터	⑥ 맞춤형 보호 ⑦ 사회통합

<그림 2> 평화체제 이행을 위한 탈북민 정착정책의 개념도

한국에 온 북한출신 주민은 내실 있는 교육훈련 기회를 바탕으로 안정된 직업을 성취함으로써 자신을 실현하고, 나아가 한 사람의 시민으로 지역사회 마을공동체에서 참여해서 민주주의를 함께 누린다. 또한 한국사회와 시민이 탈북민에게 ‘북한출신’이라는 이유로 한국사회에서 어떤 차별도 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 등을 만들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남북시민이 주인이 되는 평화공동체를 건설함으로써 결국 남북한 사회통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지금 북한이탈주민 정착정책에 있어서 관련자들 사이에 부각되고 있는 가장 큰 쟁점은 통일센터내로의 하나센터 통합과 중앙부처 중심의 전달체계 강화 문제이다. 지역사회에서 사회통합이 정책의 기본 기초가 되고 통일역군에서 시민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서, 지역의 평범한 시민이 아니라 박제화된 ‘통일의 역군’으로 살아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다시 전시하고자 한다면 시민사회와의 분리를 초래할 뿐 아니라 이들을 타자화의 길로 몰아가게 될 것이다.

III.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남북한 시민통합의 길

분단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최우선하여야 할 일은 그간 ‘사람의 통일’의 담론이 보여주었던 이상(ideal) 이면에 가려져 있던 분단체제의 현실을 직시하고 분단권력이 탈북민과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였는지 명료하게 밝히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직면했던 한국의 현실은 ‘정부의 정치적 동원과 보호조치의 과열 그리고 시민사회의 냉담⁰⁵⁾’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탈북’은 북한붕괴의 사전 징후의 하나라고 간주되었으며, 탈북민은 초기에 정착성공을 함으로써 남한사회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존재여야 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은 1960~70년대의 ‘귀순용사’에서 1990년대-2000년대에는 ‘생활보호대상자’ 혹은 취약계층으로 2010년 이후는 북한붕괴에 대비한 ‘신통일역군’으로 진화하였다. 또한 통일부의 보호중심의 통합정책은 이제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이제 평화체제에서 탈북민들은 통일의 자산으로 통일의 역군으로 전시되어서는 안된다. 탈북민들이 우리 시민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 시민단체들이 함께 하는 남북한 시민통합적인 탈북민 정책으로 전환함이 절실하며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자리를 주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지난 정부 2010년부터 탈북민사업은 ‘통일준비’라는 명분에 힘입어 남북한 교류사업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로 가시화되었다. 중앙정부나 재단의 용역을 수주한 정착관련 단체들만이 활성화된 결과 정부와 민간단체 간에 수직적 위계가 만들어졌고 북한이탈주민 관련 민간단체들의 동력이나 자발성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중 가장 중요한 통합이 남북주민간의 인적통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사업에 대한 국가권력의 힘이나 주도성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사람의 통일’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이나 자발성은 크게 후퇴하고 시민사회의 관여는 극히 약화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하며 강력한 국가 중심의 주도성을 넘어서 시민사회 중심의 “사람의 통일” 통합 담론에 기반하여 남북한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통합의 길을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탈북민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은 지난 정부가 정치적 동원은 물론 북한특수성에 입각한 특수주의 원칙을 벗어나 우리 사

05 이탈주민 자신은 이를 가리켜 “대한민국은 우릴 받아줬지만, 한국인들은 탈북자를 받아준 적이 없어요.”라고 말한다.

회 시민의 보편적 정서에 기초한 보편적 기준에 맞는 정착지원사업을 하여야 함과 동시에 과거 참여정부에서처럼 탈북민 사업을 남북관계의 하위외제나 종속변수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탈북민정책을 더 이상 통일정책과 연계하지 말고, 탈북민을 평범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 이주정착민으로서 한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입각해 문재인 정부의 탈북민 정책 과제로서 아래 세 가지를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과거 중앙정부 및 국가관료들이 주도해온 탑다운방식의 정착지원 거버넌스에서 향후에는 “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사회”가 긴밀히 연계하는 협력형 정착지원 거버넌스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탈북민 사업을 통일대비사업과 분리하여 북한출신 이주민정책으로 자리매김하여 이들이 더 이상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한 사람의 지역주민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탈북민 사업에 지자체와 지역내 시민사회의 실질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독자적 정착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통일부 주도의 독자적 정착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확대를 중단하고 일정기간 보편적 정착지원서비스 전달체제로 들어가는 과정에 한정할 것

-현재 요식행위에 머무르는 지자체의 탈북민 사업 및 예산의 실질적 권한강화

-탈북민 사업에 보다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참여 가능하도록 여건 마련

둘째, 일자리를 정착정책 우선순위에 놓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한다. 북한이탈주민이 주변화되고 저임금노동시장에 갇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인력개발을 위한 입법화 및 지역사회 내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등 제반조치를 강구할 것을 제안한다.

※ 하나원 출소 이후에 탈북민을 모집하여 화천 하나원에서 집단숙박으로 실시했던 직업훈련사업 등은 폐지하고, 배정받은 거주지역사회에 출퇴근 가능한 우량직업훈련기관이나 기능대학 등에서 직업훈련을 받도록 권장.

셋째, 지역사회에서 시민주도형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한 준비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강한 중앙정부의 지원중심의 정책은 주는 자(남한주민)와 받는 자(북한주민)의 이분화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남한주민과 북한주민간의 양극화, 남한주민 사이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일종의 ‘짐’으로 보는 의식을 형성한다. 통일부의 정착지원사업은 5년 시한부이며 이후 지역사회 통합 준비과정의 일환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 주민과 지자체는 탈북민 지역사회 통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재정적/사회적 여건을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통합의 가치에 대한 모색과 이를 생활세계 속에서 구현하는 방법을 실현하는 것. 이질화된 남북주민의 삶을 극복하고 내적 통합을 이루는 일이 향후 새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정책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북한출신주민⁰¹,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가기 : 남북시민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실천의 재구성

이민영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들어가며

남한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후 북한출신주민)의 수는 2010년까지 2만 명이 입국한 이래 어느덧 2018년 3만1천명을 넘어서고 있다. 2012년 김정은 집권이후부터 입국자 수가 이전에 비해 감소하고 있지만 매년 약 1500명 정도 지속적으로 입국하고 있다.⁰² 북한출신주민은 60년이 넘는 한반도 분단 상태에서 민족적인 통합과 통일이라는 특수한 맥락위에 있으며, 법적으로 남한시민들과 동등한 시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보편성도 가진다. 또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남한사회에서 북한문화를 가진 이주민으로서의 특성도 갖고 있다(이민영, 2015). 그러나 이들은 시민으로의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여전히 가난하고 낮은 나라에서 온 ‘이방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열악한 정치경제적 지위에 처해 있다. 차별과 편견, 고용 기회의 부족, 경제적 적응의 어려움, 특히 남한사회에 전환 가능한 교육과 직업 기술의 부족으로 고용시장에서 불안정한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김화순, 2014). 이로 인해 남한사회에 잘 통합되지 못하고 상당수가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탈북민을 부적응, 트라우마, 실업, 복지 의존 등과 같은 문제를 가진 취약계층으로 보고 남한사회 동화와 적응에 중점을 두어 지원(박철민·민기, 2014: 33)해 온 것을, 통일 준비라는 맥락에서 ‘생활밀착형 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포용적인 사회 환경 조성’(통일부, 2018)을 정책목표로 두고 북한출신주민과 남한주민들이 쌍방향 교류와 공동 활동을 장려하는 지역사회 통합 접근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새로운 접근이 실천적으로 담보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이 그동안 미친 영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정책적 접근이 지역사회에서 북한출신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점검하면서 그동안의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출신주민을 지원하는 정책과 서비스 제공에 관여한 남북한 출신 실무자와 관리자들의 경험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평화체제로의 이행기를 준비하며 남북한 시민들의 소통과 통합을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언해보고자 한다.

2. 지역사회에서 북한출신주민의 실제

01 이 글에서는 탈북민을 북한(이북)출신으로 표기하며 필요에 따라 혼용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 탈북민, 북탈민이라는 용어가 그동안 분단체제에서 접근 대상을 의미해왔다면, 북한출신, 이북출신 주민이라는 용어는 평화체제 이행기에서 새로운 접근 대상으로 변화를 의미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견해는 이민영, 윤민화, 김성남 (2016)의 연구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02 국내 입국 탈북민 수는 2012년 1,502명, 2014년 1,397명, 2016년 1,417명이 입국하여, 2018년 1월까지 31,340명으로 보고되고 있다(<http://www.unikorea.go.kr>).

그동안 북한출신주민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정책적 입장은 포용적이며 사회정의적인 접근이라고 하였다.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 국가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일부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과 보상이죠. 이것은 기회의 문제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채워주고 빨리 보충해서 우리 사회의 제대로 된 일원으로서 경쟁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사회정의’이다. 이런 점에서 아주 정치적이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다. (통일부관계자, 경력 10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출신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정책들이 아이러니하게 지역사회에서는 통합을 방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 전달되는 전략적이고 배타적인 정책과 서비스 안에서 북한출신주민들은 주변화되고 민족화되었으며, 여전히 안보화되어 동등한 시민이 아니라 타자화된 이주민으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받고 있다.

1) 주변화(Marginalisation)의 문제

북한출신주민의 사회 경제적 ‘주변화’는 남한사회의 규범적 기준 안에서 행동하도록 요구 받는 현실에서 나타난 소외현상이다.

아르바이트 등 비공식 노동시장에만 종사하며 의료 급여 등 사회복지에 의존하려 하기 때문에 취업이 잘 안 된다. (통일부관계자, 프레스미안 인터뷰, 2011)

정부의 정책과 서비스에서 북한출신주민들은 남한사회에서 지원하고 부양해야 하는 사람들로 간주되었다. 정부는 북한출신 주민의 초기 정착을 위해 주택과 기본생활비용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혜택 및 공공부조에 대한 의존성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국가는 일정정도의 공적부조에 대한 의존도를 인정하면서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낮은 지위를 극복 할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에 있는 것보다 남한에서의 삶이 더 낫다는 근거로 정당화된 빈곤 지역으로의 주거지 배정은 탈북민에게 시작부터 일반 지역사회와의 참여와 교류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한다.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한 특별한 욕구에 비하면, 북한이탈주민에게 집을 주는 것은 대단한 특별한 혜택인 거죠. 우리 취약계층들도 제일 어려운게 주택문제 인데. 북한이탈주민들은 주택 만족도가 높아요.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로 배정을 받다보니, 열악한 지역사회에 있게 된다. 그래서 빨리 벗어나라고 많이 이야기 한다. (통일부관계자, 경력 10년)

한쪽에 따로 병실 만들어 모아놓고, 이 사람들을 표적화해서 계속 뭐 이 사람들을 위해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수법밖에 안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바보 만들어야 계속 그 쪽에 돈이 들어가죠, 왜냐면 그 쪽에서 건져내서 유입시켜서 탈락시켜야 되는데, 또 정책 대상자에서 탈락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예산을 탈북자들을 모아서 뭉해라. (북한출신사회복지사, 거주15년)

북한출신주민들의 집중 거주지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비영리조직들-국가 예산을 받는 기관과 민간단체를 포함-의 서비스는 그 진정한 목적보다는 서비스 참여자 수와 양에 집중하며 피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적응에 초점을 두는 모습이다. 북한출신주민들은 수많은 지역사회 서비스에서 객체화되고 대상화된다. 정부의 공식 보호기간이 5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는 3만명이상의 북한출신주민 모두가 서비스 대상이다. 서비스의 방법과 내용을 결정하는데 북한출신 당사자의 참여는 미미하다. 남한의 방식을 배우고 그에 맞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취업에 대한 교육과 알선이 이뤄지고 있다. 취업서비스의 성과는 취업률이므로, 남한기업문화에서 요구에 맞춰 험한 일인 임시 직종이라도 서둘러 취업시키고 장기간(?) 유지하도록 유도한다. 북한출신 주민들의 소극적 참여 혹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게 되면,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이를 강하게 비판한다.

남한정책 첫 정책부터 그들에게는 선택이 아닌 100% 수혜적인 정책이며 그들 스스로의 결정권은 없다고 본다. 조직의 특질로 퍼주기 및 항상 대상자로만 머무르게 하는 서비스 제공방식의 문제이다. 전문가들 역시 북한이탈주민들이 여전히 사회복지대상자로 남겨두려는 의지가 강한 것 같다. (민간단체, 북한출신관리자, 거주 10년)

이에 취업팀은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선생님이 취업을 못 시킨대요. 프로그램에서 사업비를 써야 되니까. 남겨서 보내면 그 다음 사업비를 안주니까. 일을 마치 열심히 안한 것처럼. 그래서 사람을 데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데. 이걸 아는데. (하나센터전문상담사, 9년 경력)

정책과 서비스 현장에서 남한의 길은 항상 우월하다고 여겨진다. 북한출신 주민의 서비스에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하면서도, 남한의 실무자들의 의사결정에 의존하는데 익숙하다. 당사자들은 정책과 접근에 늘 대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열등감이 내재화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북한출신 실무자의 지원을 무시하거나 거부한다. 주류사회의 입장에서 남한 실무자들은 북한출신 주민들에게 강력히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윤리적 당위성을 가진다(Corrigan and Leonard, 1978: 3).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서비스전달 과정에서 자립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은 지역사회 서비스의 다층적 구조안에서 어떻게 북한출신이 소외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를) 더 인정을 안해요..... 탈북자가 우리 맘 잘 알지요 뭐. 말은 이렇게 하는데 돌아왔으면 달라요. 자기 자신을 갈고 닦지 않으면 그 자기 지역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요. 자기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북한출신사회복지사, 하나센터 5년, 거주15년)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예의나 일하는 환경이 마음에 안든다 이럴때 아무런 연락도 없이 나가 버리세요. 이럴때는 이렇게 해야한다는 것들을 얘기해줘요. 약속을 잡으셨다가 좀 더 큰 상품을 주거나 좀 더 중요한 뭘을 준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말씀드려요. (지역사회복지관, 관리자, 경력10년)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자로 살고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자기 의식이나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을 안하고 특별하게 지원되어지는 영역에서 약간의 갈등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이제 분리죠. 타자의 의식이죠. (탈북여성지원단체, 이사장, 경력4년)

2) (소수)민족화(Ethnicisation)의 문제

한국인의 문화가 우월하다는 믿음은 공고롭게도 북한출신 주민의 (소수)민족화를 촉진시킨다. 북한출신 주민의 독특성은 같은 문화인지의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사회에서 덜 평등한 지위에 놓여있다. 정서적으로 정부나 당사자 모두 독특한 북한의 문화를 이주민 문화로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한민족’ 신화에 대한 믿음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권을 자연적(?)으로 부여받는다는 법적 지위가 다른 이주민의 지위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탈북자는 북한 체제를 반대하여 목숨 걸고 탈출한 자신들과 이민 절차를 거쳐 한국에 살게 된 이주민을 같은 범주로 묶는 것은 자신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여긴다.(북한전략센터, 북한출신대표, 조선일보 2013)

북한출신 주민을 위한 정책은 통일부가 주관하면서 다른 이주민 대상과 분리되어 있고, 다문화 정책에서도 적극적인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출신주민을 이주민과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을 남한 주민들과 동등하게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다문화 정책과 유사하게, 교육과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남한주민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 실제 정책이 집행되는 지역사회안에서는 그 의도대로 분리되지 않고, 열등한 소외계층일 뿐이다.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이미 반세기 이상 다르게 살아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 남한보다 열악한 상황에서 온 북한출신 주민들은 ‘다(多)문화’라고 만들어진 낙인 안에서 남한주민보다 문화수준이 낮은 집단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왜냐면 서비스가 여기저기서 너무 중복되는 거예요, 특히 **구는 각 동마다 복지관이 있어요, 각 동마다 복지관들이 북한이탈주민사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중략) 같은 날 같은 프로그램을 한다던가, 특히 학교들도 교과부 지원들을 받지요, 다문화나 이런 쪽으로 받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 쪽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 이번 주에 학교 프로그램을 하면 다음 주에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가야되고 또 유사한 프로그램들도 있고.(여가부관련다문화센터, 관리자, 경력8년)

탈북자 아줌마들한테 (중략) 전자민주주의(e-democracy) 이런 식으로 어떤 웹에 접속을 해서 의식을 깨워야겠다.. 근데 이게 안되거든요. 그냥 메일 확인 하고.. 메일 확인 못하시는 분들이 태반인데.. 그래서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는 할 수가 없잖아요. (탈북여성지원단체, 관리자, 경력4년)

오랜 분단체제하에서 더 이상 남북한 사람들이 같다는 ‘한민족 신화’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사실 남한 주민이나 탈북민 사회가 이 신화를 더 많이 믿을수록 서로가 느끼는 문화적 차이는 더 커진다. 남한 사람들의 인식 안에는 북한출신 주민은 너무 달라서 남한사회에서 과연 ‘적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다. 주로 지역사회에서 북한출신 주민들은 30~40년전 한국 문화와 비교된다. 북한 문화는 남한에 비해 저개발적이며, ‘과거’의 문화로 이해하면서 지역사회 접근은 서울 액센트로 말하기, 영어 배우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 이해하기 등을 배우도록 하였다.

남한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해주는 신비한 세상주의이고, 여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못살아. 의사, 약사, 변호사 다 못한다. ... 한국사람들은 너 옷도 이쁘네, 화장도 잘하고 이쁘네, 똥도 싸네, 밥도 먹네...이런 관점이거든요. (이러니 남한상담사들은) 한시간을 붙들고 얘기해봐도 하나밖에 못 건져요. (민간단체, 북한출신전문상담사, 거주 10년)

(동료에게) 의료적인 부분에서 몰라서 그러는데 아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되니까 했는데, 아 네이버에다 물어보세요, 그것도 모르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지역보건소, 북한출신실무자, 거주 10년)

북한출신주민들은 일방적인 이러한 지역사회 서비스에서 굴욕감을 느낀다. 만일 기대한 서비스 목표 달성하지 못하면 남한 조직의 비전문성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출신 주민의 태도와 열등한 문화를 비난하는 것을 감수해야 했다. 심지어 북한사람들은 너무 실리에 밝고 방어적이고, 다른 이주민 집단들과 다르게 순종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출신주민의 공격적 혹은 직설적인 태도는 상황에 관계없이 남한 문화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아이러니하게 이러한 북한사람들이 보여주는 문화적 차이는 남과 북사이의 '동일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북한에선 이런 것도 안 배웠니? 인사하는 것도 안 배웠니? 잘 먹었으면 잘 먹었다 말도 못하냐? 안 배웠니? 뭘 배웠니? 막 이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나중에 그런 걸 겪었을 때 어떤 상처를 받겠는가를 저도 뻔히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얘기를 하죠. (탈북아동청소년그룹홈, 북한출신실무자, 거주 8년)

멘토멘티 프로그램에서 (중략) 너무나 후회가 되는 거예요, 탈북자를 바라보는 것, 탈북여성을 바라보는 거 가 어떤 눈빛이고 어떻게 (거지 대하듯) 하는지가 그 사람들이 아주 보편적인 한국사회를 대변한다고 보시면 돼요.(M, p 11)

아쉬운 게, 우리가 이게 다들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 되어야 되는데 (중략) 아주 바른 말을 하고 합리적인 말을 하면 싫어하죠. 탈북자다워야 돼요. (어떤 게 탈북자다운 것?) 지금 그게 다 그걸 아주 못한다든가, 뭐 아주 못한다든가, 아니면 북한에 어떤 자극적으로 대한다든가, (중략) 어떤 파트너로 이렇게 받아 안들인다는 거예요. (통일관련 탈북민단체, 북한출신관리자, 거주 10년)

심지어 북한 문화는 수준이 낮다는 편견을 넘어서, 이들을 정신적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으로 보는 억압적인 태도가 심각하다. 북한출신 주민이 보여준 '다름'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나 '이데올로기적 문제로 다루어지고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가의 개입으로 해결/치료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문화적, 정치적 뿐아니라 병리적으로 남과 북의 차이를 만들어내어 왔다. 북한출신 주민은 남한주민과 부분적으로 동일하고 부분적으로 다른데, 이것은 정치적 반대되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회에서 왔기 때문이고, 이에 더해 이주과정에서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어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북한출신 주민은 다른 이주민 집단과 다른 새로운 형태로 '소수민족화'되고 있으며, 주류문화의 우수성을 대표하는 지역사회 현장에서는 가능한 빨리 해결- 남한주민처럼 되기- 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Ife, 2008 : 79-81).

여기 오셔가지고 국정원에서 한번 조사받고 했던 이야기 나와서 하나원에서 한 번 더 하고, 복지관에서 하고, 경찰

에서 한 번 더 하고 복지관에서 한번 더하고 다섯 번을 하시더라구요. 그만 좀 하시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그분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저희들이 부족할거라는 그런 관점 때문에 그래서 그냥 사례관리 틀 안에 묶어놓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구요. (탈북민지원 민간단체, 실무자, 경력 4년)

무턱대고 일방적으로 우울검사와 설문지를 들이미는 것은 그 분들로 하여금 복지관 특히 사회복지사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지역사회복지관, 북한출신실무자, 거주 13년)

3) 안보화(Securitisation)의 문제

북한출신 주민을 위한 정책은 사회적 포용성과 동시에 안보적 관점에 의해서 제약성이 높은 정책적 특성을 가진다. 이로 인해 북한출신 주민들은 국가안보정책에 의해 관리되고 통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남한사회에서는 사생활 보호와 양심의 자유와 같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통해 북한출신 주민을 통제한다. 북한의 가족들에게 보내는 소액 송금 및 편지, 의료비 지출 및 생활비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북한출신 주민들은 불필요하게 비법적인 방법-브로커 등-을 찾게 된다. 이로 인해 또 다른 법적 제재를 받거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지역사회에서 잠재적인 범법자로 의심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대다수는 '무고한 사람들'이다(Walters, 2009).

검찰:“(근거: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 편의제공, 회합·통신 등) 북한 정보통신(IT) 조직으로부터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제공 받아 마치 자체 개발한 것처럼 국내에 판 매하는 한편, 그 과정에 북한에 개발비 등을 제공하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 의로 김호씨(47)와 공범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 김호: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남한사람이 북한사람과 접촉할 때에는 통일부에 사전신고 및 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 10년 동안 중국법인을 통해 제3자 무역 형식으로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경제협력 관계일 뿐 (북한의) 지령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다” (주간경향, 1294호, 2018)

넉넉하지 않은 생활 속에서도 한 번에 2천 달러 정도, 1년에 6천 달러 정도를 북한의 가족들에게 보내고 있다. 송금 과정은 각각 한국과 중국, 북한에 있는 중개인들을 통해 3단계로 복잡하게 이뤄지며, 이 과정에서 송금액의 30%가 수수료로 들어가고 70%만 가족들에게 전달된다. 북한 내 중개인을 통해 가족들과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송금된 돈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자유북한방송, 북한출신국장, 2017)

안보화 프레임은 주류 사회 전체에 위협이 되는 것처럼 두려움을 조장한다(Walters, 2009). 이에 지방 경찰, 지방 및 중앙 정부, 국정원 등 다양한 안보 기관들이 협력체제를 통해 북한출신 주민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 조치는 지역사회내 관계 속에서 북한주민과 남한주민의 일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남한의 지역사회에는 오랫동안 북한에 대한 두려움과 공격적인 태도인 '레드 콤플렉스'의 영향이 남아 있다. 남한은 피해자이고 북한은 가해자인 것처럼 인식되어온 역사적인 의식이 고스란히 지역사회에 남아 북한출신 주민에 대한 태도에 투영된다. 이러한 안보화된 지역사회는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조직과 주체간 협력을 방해한다.

지역협의회가 강서구 자치행정과장이 지역협의회 의장이 되구요, 그리고 보안협력계장, 보안 경찰서 보안과장, 북

지관장 뭐 자유총연맹 강서지구 회장 뭐 그런 분들이랑 지역의 유지 몇 분 뭐 이렇게 모여서 관심이 있으신 유관기관의 대표장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지역협의회가 있어요, 탈북자단체들은 거의 들어 간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통일부산하기관관계자, 경력 9년)

젊은 사람들은 이제 별로 안 그러는데, 이제 나이들은 사람은 아직까지도 이제, 옛날의 그 6.25때랑 뭐 이런 일이 그런 게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나 봐요. 북한에 대한 이런 안 좋은 감정들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냥 미운 거예요. 그냥 미운 거예요. (지역보건소, 북한출신사회복지사, 거주 10년)

북한이탈주민을 돕는다 혹은 통일을 위한다고 하면, 친북 아니면 반복과 같은 ‘강력한 정치적 선입견’을 가지고 조직을 해석하죠. (여성인권단체, 관리자, 경력 4년)

또한 안보의 맥락에서 북한출신 주민의 정체성은 지역사회 서비스내에서도 정치적으로 새롭게 구성된다. 이주민의 정체성은 사회복지사, 인도주의 노동자, 경찰 및 국가 안보국 과 같은 다양한 전문가가 운영하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Walters, 2009: 221). 북한 스파이인지 확인하고 보고하기 위해 지역사회에는 경찰과 협력해야 하며, 이들이 실종되거나 불안해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실천가들은 의심스러운 클라이언트와 정직한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는 사이, 북한출신 주민들은 안전지대를 찾는 방편으로 경찰(신변보호담당자)과 관계 형성을 잘 맺고 신뢰를 구축하고자 한다.

정보에 대한 보안자체는 국정원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저로서는 크게 동요하거나 선입견 두지 말자 라는데. 보안 쪽은 경찰이나 국가에서 담당하기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안해도 그쪽에서 다 이미 붙어서 알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민간단체, 전문상담사, 경력 5년)

북한에서 사실때 체계의 영향일 수 있어요. 담당관에 대한 기준이 크세요. 신변보호 담당관과 거주지 보호 담당관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는 것도 있고. 이사람에 대해 듣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확인도 해보지만. 신뢰성은 이분들한테 갖고 있기때문에. 그 안에서만 듣는 정보로 사는거예요. (민간단체, 전문상담사, 경력 5년)

안보를 위한 감시 정책은 지역사회의 적대적인 태도를 정당화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북한출신 주민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하기 두렵게 만든다. 그들은 고립되고 우울함에 빠지기도 하며, 일부는 자살(Fackler, 2012)이나 탈남하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Taylor, 2012). 안보화된 지역사회가 남북한 주민의 통합을 위한 실천에 강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거나 암묵적인 비밀로 감춰지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취직시켜주려고 노력했는데, 경비자리도 안된다는 거예요. 북한사람들 무서워서 대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비로 뽑아주세요. 싫다는 거예요. (경기도**시, 북한출신공무원, 거주 11년)

신변보호담당관이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갑자기 사라진다던지 다른연락으로 불안해한다던지 할때. 연락하라고.

북에서 연락오고, 갑자기 이상하게 불안해하거나 누가 날 쫓는다 감시한다라고 증상을 말할때 말해달라는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느날 갑자기 자리를 뜨시는거예요. 사라졌다. 한두달 헤매시다가 친구도 만나고 괜찮아지면 다시 서울로 오고. 불쑥 찾아 오는경우도 있고 그래요.(민간단체,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 경력 5년)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그동안의 북한출신주민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해보았다. 주변화, 민족화, 안보화의 문제들은 기존의 정책이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두어 접근하면서 사회구조가 가진 불평등과 부정의에 대해서는 거의 접근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북한출신주민에 대한 편견과 낙인, 남한 사회의 무관심과 일방적 시선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남북한간의 신뢰 회복, 노동시장에서 차별금지, 문화적 관용과 시민사회의 상호협력이 절실하다.

3. 나가며

이 글의 제언에서는 기존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분석을 통해서 탈북배경을 가진 북한(이북;以北)출신 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편안하고 당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지 핵심적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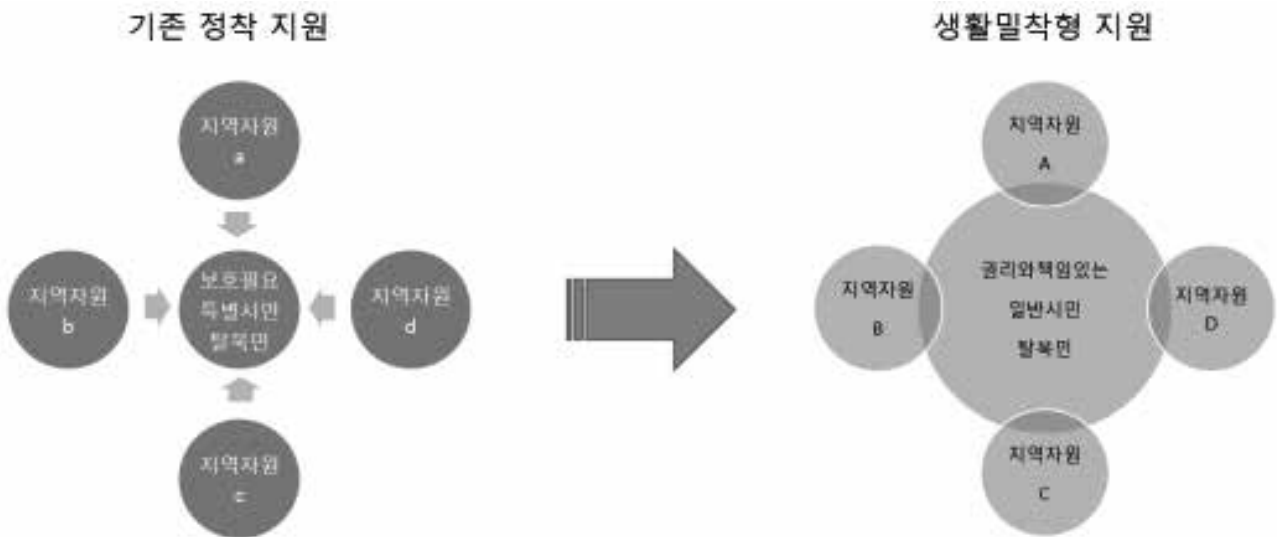
첫째, 북한출신주민의 주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번 탈북민이 영원한 탈북민이 되어서는 안된다. 북한이 고향인(이북에서 온) 시민이어야 한다. 북한출신주민이 남한사회에 입국하면 법적으로 남한시민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서비스는 10년, 20년, 그 이상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죽을때까지 그냥 북한을 탈출한 이주민(난민)으로 남아 있으라는 뜻이나 마찬가지로 아닐까. 지역사회 정착 초기에 필요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은 후에는 탈북민이라는 라벨을 떼고,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 (자신이 밝힌다면 북한출신) 시민으로 지역사회의 일반적 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망각의 자유 인정: 초기 지원은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탈북자라는 것을 잊을 자유를 주어야 한다. 탈북자를 일상생활에서 접하면 괜찮은 사람인지 알고, 서로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남한사람들이 일상에서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탈북자 스스로 확고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 (탈북 청소년그룹홈, 관리자, 경력 20년)

둘째, 북한출신주민 민족화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일반 주민들이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지역사회는 탈북민을 교육시키는데 집중해왔다. 그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면서 탈북민의 약점; 사회적 약자의 모습만 드러나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는 남한사회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과 북한출신이 가지는 강점을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그 토대위에서 남한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해가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사회와 분리된 교육 공간에서 이뤄지는게 아니고, 주민들의 생활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기회와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북한출신 주민이 가진 강점을 남한 주민들도 인정하고 서로가 새로운 강점들을 발견한다면 평화체제 이행기에 걸맞은 새로운 시민의 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사례관리를 함에 있어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시각의 접근 보다는 삶의 의지가 강하고 충분히 자립에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라는 점 한번쯤 생각하고 접근해주셨으면 합니다.... 나름 살아가는 방식이 다 있어요. (지역사회복지관, 북한출신실무자, 거주 13년)

셋째, 탈북민 자립 및 자활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북한출신 주민 혼자서 자립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성취하는 자립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내에서 탈북민 전문 서비스라는 간접적 접근에 머무르지 말고, 북한출신 주민이 일상의 관심에 따라 다양한 소집단, 모임, 단체, 조직 활동들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접근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탈북민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이들의 참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모임, 단체, 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감수성 교육이 우선되고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남북한 주민 모두가 참여주체가 되어 상호 이해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다양한 파트너십 프로젝트가 시도되어야 한다.



<그림> 생활밀착형 지원에서 지역사회와 북한이탈주민의 지위(양옥경 외, 2017)

함께 가면서 열면서 가야한다. 남한도 달라져야 한다. 시민으로 묶어주는 것; 시민권적 접근이 대안이다. 시민단체. 여성단체는 평화와 통일에 포커스 되어 있지 탈북자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너무 놓고 왔다.(반성) 한국사회에서 순응, 동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도 같이 가는 것이다. 지원의 내용이나 형식도 바뀌어야 한다. 더 받아야하지 않을까. 더 준다가 아니어야 한다. 이제 시민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겠다. (여성인권단체, 관리자, 경력 4년)

넷째, 북한출신 주민이 일방적인 '수혜자'로서만 위치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이며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남의 목소리를 빌려서 자신의 이야기를 대신 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실제 탈북민을 지원하는 북한출신 상담가, 사회복지사들에게 수혜자에서 제공자로의 역할의 변화가 주는 의미가 크다. 남한주민과 탈북민을 서로 대변하기도 하고, 탈북민을 가르치고 품어주는 역할도 한다. 그러나 실제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경쟁적으로 일자리를 갖기 어렵고, 어렵게 구한 그 일자리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소수자로서의 설움도 겪고 있다. 그러나 탈북민 정책과 서비스에는 당사자가 가장 전문가임을 인식시키고 전문적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훈련을 받고 책임감 있는 '주체자'로서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여야 한다. 지역사

회의 조직들도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당사자 전문가를 채용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조건과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탈북자 직업 창출을 위해서 먼저 온 탈북자가 후에 온 탈북자를 케어하는 의미에서 좋은 시스템이었는데, 탈북자들은 선발할때 이래저래 소외됐어요. 자격요건; 상담, 사회복지 졸업 자격에서 안되고, 특히 그 어떤 것도 아직까지 할 줄 모른다. 가진게 없다 해서 소외됐어요. (민간단체, 북한출신전문상담사, 거주 10년)

끝으로, 그동안 남한사회는 '건강한 탈북민 공동체'를 만들어서 '남북한 사회를 연결하는 역할'로 기여하기를 기대해왔다. 그러나 언제나 탈북민은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스스로 지킬 것과 버릴 것을 판단하기도 전에 남한식으로 동화되어야 할 대상이 되었다. 북한에서 내가 알고 있던 것을 완전히 부정해야 하고 비워야 하며,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을 채워넣어야 하는 가혹한 시간을 견뎌야만 했다. 이에 탈북민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박탈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주민과 접촉을 중단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받기 위해 탈북민들과만 교류하며, 아예 다른 지역, 다른 나라로 떠나 살아가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동안 북한출신 주민에게만 요구되었던 이러한 변화(변신)의 과제는 앞으로 평화체제 이행기에 남과 북의 사람들 모두에게 큰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탈북민에 대한 접근을 치열하게 반성하면서, 남과 북이 가진 고정관념과 편견을 명확히 성찰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더불어 가야하는지 하나 하나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차별에 대응하는 남한 사회의 준비는 북한 문화와 일상에 대한 겸손한 공부, 북한인에 대한 평등한 시각 키우기, 탈북자들과의 연대야말로 남한 사회의 변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박노자, 한계레, 2007)

참고문헌

- 김화순. (2014). 북한 일유형이 남한에서 탈북이주민 고용에 미치는 영향. 통일정책연구, 23(1), 1-40.
- 박철민, & 민기. (2014). 개인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특성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분석-사회적응수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22(1), 31-63.
- 양옥경, 최혜지, 이민영, 김선화 & 김성남. (2017).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 보고서. 남북하나재단
- 이민영. (2015).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착 지원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통합적 문헌고찰 방법을 활용하여. 한국가족복지학, 49, 39-69.
- 이민영, 윤민화, & 김성남. (2016). 북한출신 사회복지사의 실천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51, 7-40.
- 통일부. (2018).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2018~2020), 통일부 홈페이지
- CORRIGAN, P. & LEONARD, P. 1978. Social work practice under capitalism: A Marxist approach, London, Macmillan.
- IFE, J. 2008. Human Rights and Social work: Towards rights-based practi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ACKLER, M. 2012. Young North Korean Defectors Struggle in the South [Online]. New York: The New York Times.
- LEE, M. 2015. North Korean migrants in South Korea: Policy, Services and Social work practice.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Bristol.

TAYLOR, A. 2012. Some North Korean Refugees Are So Depressed By Their Life In The South That They Go Back North [Online]. New York: Business Insider.

WALTERS, W. 2009. Migration and security. The Routledge handbook of New security studies. London: Routledge.

WETHERELL, M. & POTTER, J. 1992. Mapping the language of racism: Discourse and the legitimation of exploita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온라인 참고사이트

<https://www.voakorea.com/a/3872902.html>

<http://www.unikorea.go.kr>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1/18/2013111803884.html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809101522331&code=115#csidx37e5a340a987d428ccb52e438bdf55a>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241958.html>

남과 북의 시민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남과 북의 땅을 오가며 만나고 이야기 나누는 날을 꿈꾸며!

■ 세션 6 섹슈얼리티는 어떻게 인권이 되는가?

사회 및 기초발제 섹슈얼리티 다양성은 정말 사회를 망칠까?

심기용 (섹슈얼리티활성화연구소)

라운드테이블

토론 1 성소수자운동에서 주체는 어떤 사람인가?

도균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의 모임 여행자)

토론 2 인간 존엄으로서 바라본 성적 시민권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토론 3

HIV감염인, 섹스를 말하다

소리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토론 4

청소년의 성적 권리와 인권

쥬리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섹슈얼리티 다양성은 정말 사회를 망칠까?

-섹슈얼리티 자율성과 공공 규범의 긴장 관계 고찰-

심기용, 양준호 씀
섹슈얼리티활성화연구소 팀
서울시INPO지원센터 활력향연

섹슈얼리티를 연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섹슈얼리티 연구는 사적이라기보다는 파편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파편들을 가지고 총체적인 구조와 배치를 문제 삼는 과정인 것이다.” (114p)

가장 큰 오해: '섹슈얼리티는 사적인 것'

왜 우리는 '사적인 것'이라는 표현 대신 '파편적인 것'이라는 표현을 쓰는가?

사적인 것

사회적인 낙인과 공적 공간에서의 배제가 발생함에도 이를 모두 개별화 하고, 성적인 것으로부터 심화되는 사회갈등을 방치함. 규범이 문제적인 위계를 형성함에도 문제제기를 어렵게 만들.

이성애적 성별규범의 정당화 과정



제도적인 통제의 성립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

“건강한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 있게 ‘나는 남자’ 또는 ‘나는 여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성 역할(gender role)’ 이란 성 정체성에 대한 내적 감각을 외부적으로 나타내는 행동 양식이다. 정상적으로 성 정체성과 성 역할은 일치한다. 즉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라고 인지하는 여성이 여성다운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이를 외적으로 표현한다. 마찬가지로 남자라고 인지하고 있는 남자가 남성답게 행동하는 것이다.”

섹슈얼리티 낙인과 배제

- 이미 섹슈얼리티는 제도적으로 통제되거나 정상화 되고 있고, 나머지를 비규범화, 비정상화 하는 과정 속에 놓여 있다. (ex. 남성의 정상성,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의 비정상성 구분 등)
- 비규범적 섹슈얼리티가 사회를 망치는 게 아니라, 사회가 특정 섹슈얼리티 또는 특정 계층의 섹슈얼리티를 비규범화 하고 사회를 망치는 것이라고 낙인 하는 것이다.

인터뷰: 트랜스-섹슈얼리티, BDSM, 폴리 아모리, 크루징, 동물성애

- "저는 바텀젠더예요!": 트랜스-섹슈얼리티 40
- "플레이파트너에서 결혼까지": BDSM 49
- "독점연애는 저에게 족쇄같아요": 폴리아모리 58
- "랜덤한 데이트, 랜덤한 섹스의 즐거움": 크루징 66
- "동물이나 수인이 끌려요": 동물성애 71

“사회적 비규범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어떻게 자율적인 의미체계를 확보해나가는가?”

- 트랜스-섹슈얼리티, 젠더를 다시 읽어내기
- BDSM, 플레이로서의 자기인식
- 폴리아모리, 관계의 고유함을 지키기 위한 관계협상
- 크루징, 비밀상으로의 초대
- 동물성애, 존재를 상상하기

공통점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끊임없이 재구성해냄

“내가 욕망하는 남성이미지가 있었죠.
초반에는 근육질에 마초적인, 지금으로 치면
연예인 마동석씨처럼 되고 싶어 했던 거 같아요.
누가 봐도 남성적인 이미지를 원했달까요.

그리고 나서는 또 스스로에 원하는
이미지가 달라진 거 같아요.
남성성이라는 것이 딱 한 가지
이미지만 포함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편으로 그런 남성이미지도 미디어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었을 테지만, 저에게 그런 이미지가
영원하지는 않았어요. 어느 때부터 슬림한 남자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고, 저도 무리하게 몸을
키우기보다는 내 특성을 이용해서도 남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어요.

“게이 커뮤니티 안에 또 바텀문화나 바텀코드가 있는 거 같아요.

그 중 어떤 사람은 끼 부리는 성격을, 어떤 사람은 연약함을, 어떤 사람은 예쁨을, 어떤 사람은 도도함을 부각하기도 해요.

바텀이란 무엇인가 고민할 때 이게 단순히 섹스포지션으로 끝나기보다 더 많은 특성들이 부여되는 거 같아요.

굳이 자신을 남성과 여성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여성을 고를 사람들도 있는 거 같고.

사실 트랜스젠더의 영역과 공유하는 지점이 있다고도 생각해요. 정말 다양해요. 바텀을 스테레오타이핑 하는 게 분명 있긴 하죠.

그게 부질없는 것이긴 한데, 재밌잖아요. 진지하기보다는 놀이 문화인 듯해요.

그리고 바텀이 섹스를 할 때 경험하는 감정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많은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바텀에 매우 자신이 있고, 상대가 탐을 하지 않는다면 별로 끌리지도 않아요.

그 어떤 정체성보다 바텀이라는 점이 제 존재의 본질에 가깝다고 느껴요.”

“사실 60년대~70년대에 성장한 사람들은 사회적인 배경에 의해
에세머로 성향이 키워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독재정권
치하에서 사회적인 표상들은 모두 군사주의적인 것들이었고,
가학적이었어요. 그런 속에서 자라면서 꼭 에세머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이런 부분이 컸어요.

충효사상의 일환으로 위인전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이때 ‘고통’을 선악
이분법에서 착한 주인공이 겪어야 하는 통과이레로 인식하게 되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에세머적인 부분들이 처음에 성적인 면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육체적인
것들을 포함한 학대를 견뎌내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자기 신념을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는 것으로 다가왔던 거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성적인 의미가 부여된 것은 나중에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에세머들은 그런 성향을 ‘플레이’로서 인식하고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기보다, 에세머들이 더 안전한 사람들 아닌가요?”

나의 몸, 나의 욕구를 긍정하고 수용하는 과정이 오히려 더 많은 폭력을 맥락화 하고 인지할 수 있게 만든다.

다시 파편적 총체로, 총체를 문제 삼기

섹슈얼리티의 다양한 의미체계들 긍정하기

이성애적 성별규범이 공고한 공간에 이런 파편적인 섹슈얼리티의 의미체계들을 가진 개인들이 혐오적 낙인과 폭력에서 벗어나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맥락화 하는 힘이다.

“우리에게는 경계선 긋기의 책임과 동시에 경계선 넘기의 책임도 있다. 이 책임이란 타자의 삶의 맥락 안에 들어가 이해하려는 태도이다.

우리는 이미 서로의 의미체계 안에서 서로에게 얽히며 생성되기 때문에 경계선을 함께 구성하고 있으며 동시에 함께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마치 실뜨기와 같다. 여기에는 전후 관계의 시차가 없는 것이다.

“넌 나와는 다르고 넌 잘못됐어.” 하고 경계선을 긋는 것은 경계선을 긋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경계선을 넘어가 있는 것이다. 타자를 발견하는 것 자체가 타자가 나에게, 내가 타자에게 들어가는 것이다.

타자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물어야 할 질문은 “네 삶의 맥락은 어떤 것이지? 너에게 그것은 무슨 의미였지?”이다.“

마무리 하며

“공적 공간들에서 살아가는 주체들이라면 자율적 의미체계를 획득한 욕망과 관계망을 섬세하게 살피는 역량이 필요하다. 그것이 공적규범이 위계적으로 소수자를 만들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드러내고 공존하게 만드는 방식이 될 것이다.”

성소수자 운동에서 ‘주체’는 어떤 사람인가?

도균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섹슈얼리티 문화 계간지 버디의 2001년 봄호 83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문구로 시작합니다. “90년대엔 짬질방에 대한 토론이 이반 공동체를 양극화 시켰었다. 짬질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짬질방에 동조하는 게이들을 게이 말살을 촉진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짬질방 동조자들은 반대자들에게 성적으로 보수적이라고 비난했다.”

김민이라는 분이 작성한 ‘짬질방과 급진적 성문화’라는 제목의 해당 기사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인터넷의 확산과 김대중 정권 하의 자유로운 사회적 환경에 힘입어, 1997년에 처음으로 짬질방이 등장했다’고 언급하면서 짬질방이 어둡고 붉은 조명이거나 완전히 어두운 사우나와 달리 급진적 성적 실험과 자기 발견의 장소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성애적인 규범화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주로 비가시화 되었던 것들을 가시화시킴으로써 짬질방은 정체성에 기반을 둔 동성애 운동에서 제외되었던 성적 해방을 상징한다.”라고 말하며 게이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남성 동성애자의 법적이고 정치적인 권리를 확보하려는 게이 운동과 성적 수치심과 무지가 기반이 된 성적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성 해방 운동을 분리해서 설명합니다. 이 기사를 통해 90년대 중후반 정체성을 중심으로 하는 성소수자 운동이 가시적으로 시작되는 상황과 이반들만을 대상으로 영입하는 짬질방이 등장하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긴장과 갈등이 존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의 뒷부분에는 네 사람의 인터뷰 모음이 있습니다. 예술가 33세, 사무직 32세, 사무직 33세, 전문직, 교포, 33세로 소개된 네 사람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섹스에만 관심이 있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사회의 한 일원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알게 해준다. 다른 이반 남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지원을 통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러나 짬질방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 주는 이런 부분들을 궁극적으로 장려 시키지 않는다.”, “이반 문화에선 짬질방에 대한 낙인이 있다. 걸레 같은 사람들 혹은 나쁜 사람들이 간다고 얘기한다. 짬질방은 공동체란 개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곳은 나쁜 곳이란 생각이 계속 된다.”, “누군가와 사귀다면 나의 파트너가 다른 게이 남성과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일반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싶다. 이반 남자들은 부도덕하다. 성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짬질방에 간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다른 장소가 있다면, 아마 짬질방에 가지 않을 것이다. 짬질방은 장기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희망이 없는 장소이다. 우린 덜 성적인 공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18-29세 사이의 젊은 남성들의 성적 본능 때문에 짬질방은 항상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등 짬질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드러납니다.

이처럼 한국 성소수자 운동이 가시적으로 태동하던 시기에 찜질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과 여러 긴장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에서 활동하고 있고, 20대 초반에는 대학 내 성소수자 동아리에서 활동하기도 했지만, 서울로 진학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런 집단으로 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2009년에 부산에서 재수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부산에는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존재하지 않았고 공원이나 화장실에서 크루징을 하거나 이반 dvd방이나 휴게텔 등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 외에 다른 성소수자들을 만날 수 있는 경로가 거의 없었습니다. 범일동의 게이바 등을 통해 구성되는 관계망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과 연결되기엔 술값으로 사용할 금액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건강상의 문제로 부산에서 다시 지내게 됐었지만 그때도 성소수자 몇 명이 모여서 함께 책을 읽는 아주 작은 모임 하나를 만들기가 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던 기억이 납니다. 비록 전국 곳곳에 퀴어문화축제가 생겨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서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다른 성소수자와 연결되는 것은 쉽지 않고, 다른 성소수자와 만날 수 있는 통로가 극도로 제한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크루징을 통한 섹스는 쾌락을 위한 성행위 이상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현재 저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크루징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제가 크루징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성소수자 커뮤니티 바깥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크루징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체로 연령대가 매우 높고, 가난한 편입니다. 장애가 있거나 이주민인 경우도 종종 있구요. 그럴 때 저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별 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의 경우 40대 중반인 멤버가 가장 나이가 많고, 올해 서른 살인 저도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연령대가 높은 분들의 경우 가입을 하더라도 분위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나오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가입과 공지는 모두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크루징을 하면서 마주하는 사람들이 여행자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이 가능한지 생각해보면, 저는 많은 경우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로 그렇게 열악한 위치에 놓여있는 사람들에 의해 크루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루징이 더욱 더럽고 위험한 행위로 인식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문란함에도 급이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하는데요. 젊고 잘생기고 소위 몸 좋은 사람들과 문란한 관계를 맺는 것과, 나이들고 못생기고 가난한 사람들과 문란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고 느낍니다. 시스템더 이성애자 남성, 요즘 흔히 시혜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은 수의 여성들과 섹스하는 것과, 바텀알바인 게이 많은 수의 남성들과 섹스하는 것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진다고 느낍니다. 그럴 때, 누구의 어떤 성행위가 문란한 것으로 인식되고, 어떤 문란함이 더럽고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는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성소수자 커뮤니티, 성소수자 운동에서 어떤 사람이 구성원으로, 주체로 상정되는가와도 연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 예컨대 노인, 빈민, 장애인, 이주민, 지방 거주자 등을 크루징 공간으로 향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힘이 있고, 그것이 성소수자 커뮤니티, 성소수자 운동의 성원권과 연결된다고 할 때,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고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섹슈얼리티를 보다 폭넓은 차원에서 사유하고 운동의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젠더는 성별 임금 격차나 빈곤의 여성화와 같이 계급적인 맥락에서 의제화되기도 하고, 이주의 여성화, 여성 정치 할당제, 트랜지션의 의료보험 적용 등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는데 비해 섹슈얼리티는 나의 젠더가 무엇이고 내가 끌림을 느끼는 젠더는 무엇이므로 나의 섹슈얼리티는 무엇이다, 같은 젠더화된 형태의 다양한 정체성으로만 인식되거나 쾌락과 폭력이라는 단편적인 이분법 하에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섹슈얼리티를 정치, 경제, 의료, 법, 이주, 장애 등 훨씬 더 다양한 맥락과 교차하는 가운데서 입체적으로 사유하며 그것을 정치적인 의제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크루징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크루징을 통한 섹스가 STD에 취약한 것은 사실이고,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STD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럴 때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루징이 위험하고 크루징을 통한 섹스가 STD에 취약하다는 말만으로, 그러므로 그런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금지만으로 위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눈앞에서 치워버리려고 할 때, 위험한 성행위에 낙인을 찍는 방식으로 접근할 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낙인을 찍을 때, 사람들은 STD 예방과 치료에서 중요한 검진을 피하게 되고, STD에 감염되기도 치료받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낙인찍기는 사람들이 처한 위험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위험한 방식으로 섹스를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와 수단을 공유하고, 검진과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TD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와 예방에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하고, 검진 기회를 제공하고, STD 치료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것에서부터 위험을 줄이는 것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운동에 보이지 않는 진입 장벽들이 있고, 그 바깥에 위치한 사람들이 있을 때, 바깥에 위치한 사람들과 커뮤니티, 운동이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발제 마치겠습니다.

인간 존엄의 관점에서 바라본 성적 시민권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2018년 지방선거 이후 경남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재추진되자⁰¹, 반대측은 학생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또다시 쏟아내고 있다. 2011년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접했던 익숙한 혐오 표현들은 고스란히 재생되고 있으며, 시대적 조건을 반영하여 진화(?)되고 있기도 하다.



이 전단지지는 경남지역의 곳곳에서 살포되었으며, 특히 3개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에게 배포되어 경악한 이들이 많았다고 한다. 전단지를 제작한 이들이 학생인권조례의 가장 약한 고리로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조항을 선택⁰²하고 '우리 아이 망치는' 조례로 선전하는 모습은 10대와 성소수자의 섹슈얼리티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들에게 성소수자와 낙태는 '음란', 곧 도덕적 타락을 의미하며, 그로부터 10대들이 '보호'되어야 하는 까닭은 10대들의 미성숙함이다. 그들이 보기엔 10대 중에는 성소수자가 있을 수 없으며/있어서는 안되며, 임신·출산·임신중지의 경험을 가진/가질 수 있는 '타락한' 10대들은 사회적 보호의 대상에서 추방되어 있다. 성소수자, 여성, 10대, 그리고 이들 정체성이 교차하는 존재들 모두가 성적 시민권이 부정당하는 위치에 놓여있는데, 이는 한국 사회 내에서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으로 이 전단지지를 '어린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비판하는 이들 사이에서도 입장의 차이가 관찰된다.⁰³ '섹스', '성행위',

'낙태'와 같은 단어를 학생들에게 노출시키는 것 자체를 문제로 보는 사람도 있고, "맘대로 섹스하세요"라는 말을 학생들이 정말로 그렇게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는 이도 있다. 과연 그럴까. 더 큰 문제는 특정 단어가 아니라 맥락적으로 구성된 혐오표현이 가져다주는 상흔과 어린 사람을 자기 생각을 걸여한 채 세뇌당하는 존재로 모욕하는 것이 아닐까.

1. '성적 시민권'의 부인이 의미하는 것

01 경남 지역은 2011년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성공하였으나 도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2018년 도교육청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02 경남학생인권조례 초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제16조(차별의 금지) ① 학생은 학년,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질병 경력, 징계, 학교의 종류나 구분, 교육과정 선호도 또는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 한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성인권교육의 실시 등) ① 학교는 학생의 성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에 성평등의 가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들은 성폭력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편견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03 윤성호 기자, "“음란 세뇌 교육”... 경남 학생인권조례 반대 전단 논란", <오마이뉴스> 2018년 10월 21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1109

‘성적 시민권’을 부정당하는 위치에 놓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성적 관심이나 실천이 그 자체로 위험한 또는 부도덕한 것으로 치부당하는 경험이란 어떤 것일까. 걸그룹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차고 넘치는 이 사회에서, 정작 10대들이 성에 있어 주체가 되는 일은 터부시된다. 10대들의 성적 욕망이나 권리는 언제나 ‘미래’의 것으로 유예된다. 성에 대한 호기심(‘욕망’이라는 말조차 10대에겐 위험한 것으로 간주된다)과 실천은 ‘이성애에 기반한 순수한 (첫)사랑’이라는 낭만적 프레임 안에서만 소극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정상적 결혼제도’에 편입될 수 없거나 (사회적으로 규정된 다른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데 주력해야 하므로) 편입되기에는 이르다고 간주되는 10대에게는 성/사랑/섹스/결합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적극적으로 실천되지 않는 선에서만 제한적으로 허락될 뿐이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여학생과 남학생의 섹슈얼리티를 다양한 형태로 통제하며, 여학생과 남학생이 한 공간에 함께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윤리거리’와 같은 통제적 규칙을 갖고 있는 학교도 많다.

발달장애인과 성소수자의 경우는 어떠한가. 사회는 발달장애인이거나 성소수자가 보이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을 그 결과가 무엇이든 ‘성적 위험의 신호’로만 인식한다. 발달장애인과 성소수자의 섹슈얼리티는 ‘이미 일탈로 이해’되고, 모든 연령 단계에서 통제되는 감정이나 사회적 행위다. 이들의 성적 관심은 일상적 대화나 사유의 주제로 진입하지 못한다. 이들이 머무는 공간에서도 성적 시민권은 공간과 시간의 설계에서조차 고려되지 않는다.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하여 ‘그럼 시설에 장애인들이 섹스할 수 있는 방이라도 마련하라는 거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때, 이는 역설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성적 시민권이 근본적으로 부정되어 왔으며 성적 권리를 ‘성행위’ 자체로만 축소해서 사고하고 있다는 고백에 다름 아니었다. 이성애-비발달장애인의 사랑은 인생의 이슈나 철학적 사유의 대상이 되는 반면, 발달장애인이거나 성소수자의 사랑은 그저 특정한 성행위만으로 축소되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야말로 존엄에 대한 공격이다.

성적 권리는 참정권과 마찬가지로 인간 존엄에 기본적인 권리로 사유된다기보다 특정 정체체성과 특정 연령, ‘온전한 정신과 신체의 소유자’로 사고되는 비장애인에게만 허락되는, 이성애적 결혼 규범 아래에서만 허용되는 제한된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마사 누스바움은 인간의 존엄에 필수적인 ‘10대 핵심 역량’ 가운데 하나로 주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애착’을 느낄 수 있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감정들, 이를 테면 사랑, 슬픔, 갈망, 만족, 정당한 분노 등을 느낄 기회를 갖고 그러한 상태를 성취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친밀감을 느끼고 다양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인간의 삶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관계 속에서 쓰러지고 관계를 통해 다시 일어나며, 우리의 정체성 역시도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친밀성과 유대관계에서 성적 교감과 결합의 다양한 양식이 포함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특히나 정체성의 일부인 섹슈얼리티를 부정당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공동체에 소속될 자격을 의심받는 일이나 다름없다. 모든 인간이 성적 시민권의 주체로 존중받는 것, 그리하여 성적 욕구와 쾌락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기회와 표현할 수 있는 자유, 성취가 경험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는 일은 인간의 존엄에 있어 필수적이고도 현재적인 요청이다.

2. 성폭력 예방과 성적 시민권, 개인적 능력에서 관계적 역량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이 실제 폭력 예방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알기란 쉽지 않다. 폭력에 맞서는 역량이란 ‘수업’ 형태의 정규교육보다는 수업의 ‘바깥’, 다시 말해서 일상이 펼쳐지는 공간과 관계 속에서 학습되고 단단해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그것의 영향을 계량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스쿨 미투’ 고발은 한편으론 성폭력 예방 교육이 제도화된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조차 여전히 공공연한 성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드러냄으로써 제도화된 성폭력예방교육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교육의 한계를 메우는 것은 운동이고 문화적 변동이다. 성폭력이 인간 존엄에 대한 공격임을 사회적으로 승인하고, 여성 혹은 여성청소년을 단지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라 자기 언어를 가진 ‘말하는 주체’로서 인정하라는 여성 인권과 청소년인권 운동의 도전이 없었더라면, 여학생들의 성폭력에 대한 발화 자체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스쿨 미투’의 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 역시 성폭력의 일환으로 고발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8년 5월 재조명된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보고서⁰⁴에 따르면, ‘교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27.7%, 그 중 여학생은 27.8%였고 남학생도 27.3%로 비슷한 응답율을 보였다.⁰⁵ 성희롱에 대한 인지를 역시 여학생과 남학생의 성별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교사에 의한 성폭력 문제는 ‘남교사 vs. 여학생’의 문제만이 아니다.

<표 IV-16>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 성희롱 피해 유형별 인지율

(단위 : 명, %)

		사례수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강제적	분위기	전체 성희롱 인지율
전체		1014	34.4	21.2	10.4	2.4	22	40.9
성별	여자	814	34.9	21.0	10.6	1.9	20	41.3
	남자	200	32.6	21.8	9.2	4.3	30	39.5
학년별	1학년	342	29.9	19.4	8.9	1.6	1.5	37.1
	2학년	333	32.5	21.9	10.6	2.6	23	38.8
	3학년	339	40.9	22.2	11.6	3.0	28	47.0
설립 유형별	공립	576	33.1	21.2	10.2	3.2	21	40.1
	사립	438	36.1	21.1	10.6	1.3	24	42.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2017), 103쪽.

그럼에도 기존 성폭력 예방 교육들은 여성을 잠재적 피해자로,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만 간주한 채 단순한 대응법, 금지되는 행위의 목록과 그에 따른 처벌 수위만을 열거하는 경우가 많았다. (잠재적) 피해자에게는 ‘알아서 조심할 것’을 강조하거나 (잠재적) 가해자에게는 ‘걸리지 않을 만큼만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식이었다. 특히 성폭력으로부터 취약한 무능력한 존재 또는 성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10대와 발달장애인 성교육에서는 ‘폭력’만을 다루되 ‘육망’에 대해서는 터부시하는 경향이 짙다. 가/피해를 구성하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분석보다 ‘정체성’이 가/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향도 강하다.

0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으로 2017년 11월 발표한 보고서로서 2018년 5월 3일, 결과 발표와 토론회가 개최되면서 재조명되었다. 고교생 1014명(여성 814명·남성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 ‘교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27.7%로 집계되었고, 전체 학생의 40.9%는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성희롱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05 그럼에도 남학생에 의한 스쿨 미투 고발은 왜 없을까. 남자 청소년에게 ‘성’은 존엄과 권리의 영역이라기보다 쾌락과 ‘남자됨’의 영역으로만 좁혀 사고되기 때문일까. 남자 청소년은 ‘잠재적 가해자’로만 상정되기에 ‘피해’ 경험을 사유하고 언어화하는 과정이 생략되고 ‘별 일 아닌 것’으로 치부하도록 사회화되는 것은 아닐까. ‘스쿨 미투’가 남교사에 의한 여학생에 대한 폭력으로도만 재현될 때 놓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깊이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장애여성공감의 이진희는 2018한국장애학회에서 발표한 「성적 시민권의 관점으로 본 발달장애인 성교육」이라는 글에서 발달장애인의 성적 욕구와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발달장애인의 폭력에 대한 취약성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발달장애인에게는 성적 쾌락에 대한 접근이 금지되었기에 오히려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친밀성에 기반한 폭력”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발달장애인에게도 사랑과 폭력의 경계는 모호하게 다가오며, ‘사랑하기에’ 폭력과 착취, 굴종적 관계를 인내하는 경우도 잦다. 가정폭력을 피해 달아난 10대 여성들이 또다시 폭력적·착취적 연애 관계에서 벗어나기 힘들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가족 안에서 경험하지 못한 정서적 교감이나 보호가 제공되는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내가 ‘선택한’ 관계에서 실패를 인정하는 일이 나의 ‘어리석음’, ‘무능함’, ‘문란함’ 또는 내가 속한 집단의 미성숙함을 방증하는 낙인으로 연결될 경우 더욱더욱 그 실패를 인정하기란 어렵다. 사랑하되 통제하지 않고,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고, 사랑하되 지배하지 않는 관계와 성적 실천을 상상할 수 있으려면 다양한 관계 경험과 해석의 경험이 필수적이다. 다양한 관계 경험은 성적 시민권이 부정당하는 이들에게 허락되지 않는 경험이다. 인간이라는 공동체(사회)에 포함될 자격을 의심받는 비시민에게는 금지와 보호주의, 그 결과로서의 무력화와 취약성만이 남겨질 수밖에 없다.

모든 인간관계는 나이와 섹슈얼리티를 바탕으로 구성되며, 사회적, 일상적 관계 안에서 섹슈얼리티를 통제당한다는 것은 관계맺음에서의 취약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핵심적 문제는 ‘성적 시민권’ 또는 ‘평등’의 문제다. 그러하기에 인권운동은 ‘평등해야 안전하다’, ‘평등한 만큼 더 안전해진다’는 발견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실천으로 조직하는 활동을 전개해 왔다.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고 순응하기를 요구받아온 이들이 방어력을 기르고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미성숙’을 강제하는 제도와 관행을 걷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비명을 내지름 권리’에서부터 ‘매’를 붙잡을 권리에 이르기까지 폭력에 대한 저항을 얼마나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해 사회가 얼마나 공적으로 감응하느냐가 한 존재의 폭력에 대한 취약성 정도를 결정한다. 취약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취약한 위치로 내모는 권력이 문제다. 대개의 폭력은 차별에 기초해 있으며, 차별을 타고 흐르는 폭력들은 이미 ‘예견된 폭력’이다. 폭력의 표적으로 선택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들의 감정과 경험, 언어에 정당한 무게를 부여하고 그들의 동등성을 부정하는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려는 노력만큼, 폭력의 빈도가 줄어들고 폭력이 삶에 미치는 충격과 고통의 의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성폭력 예방의 차원에서 교육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보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평등을 진전시킬 수 있느냐에 있다. 스쿨 미투 고발이 이루어진 학교에서 학생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위치 짓고 학생들의 주체성을 부정해온 학교문화와 통제 중심적 학교생활규정의 개정이 동시에 요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정당하고 신체경계선에 대한 침범이 일상적으로 허용되며 그 침범을 초래한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훈육되는 이들이 성폭력에 저항하기란 쉽지 않다.

결국 성폭력을 예방한다는 것은 성적 시민권을 부정당해온 이들의 존엄을 보장하고 평등을 진척시키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며, 이들의 경험과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당사자의 생각, 경험, 느낌에 정당한 무게를 부여한다는 것이며, 그 언어를 이해하고 이에 감응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동시에 길러낸다는 뜻이다. 주체성이란 단독자로서 개인이 얼마나 독립적이고 성숙한가를 드러내는 ‘능력’이 아니라, 상호작용 속에서 꽃피고 강화되는 ‘관계적 역량’이다. 달리 말하면 사회의 준비됨 없이 한 개인의 주체성은 온전히 실현될 수 없다.

3. 허락할 권리가 없음을 인정하기

성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성교육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기존의 차별적 규범(성정체성, 성역할, 생애주기, '낮선 위험' 중심의 성폭력 이해 등)에서 벗어나 '관계맺기'로서의 성교육으로 얼마나 이동하느냐의 문제로 보인다. '인권교육센터 들'에서도 성적 시민권이 부정되는 또 하나의 존재인 10대를 위한 성교육이 '관계맺기로서의 성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성(인권)교육을 진행해 왔다. 관계 맺기를 중심으로 둔 성교육이란 ▶성에 대한 호기심 긍정하기 ▶차별에 기초한 '변태' 개념 해체하기 ▶고백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 넘어서기 ▶다양한 관계 가운데 하나로서 연애를 수용하기 ▶연애의 시간을 지배하는 규칙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친밀한 스킨십(섹스를 포함하여)과 불편한 스킨십 구별하기 ▶잘 이별하기 ▶상실에 대한 애도와 삶을 지속하기 등을 핵심 개념으로 삼는다. 결국 성적 시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성과 권력관계, 만남과 이별이라는 인생의 가치를 다루는 교육인 셈이다. 누구와 함께하는 성교육이든, 그 교육이 인간 존엄과 평등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그들을 성적 금기의 대상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입체적 존재로서 사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스웨덴에서 1년간 살다 온 친구가 주말에는 한국어교실 자원활동을 했다고 한다. 한류의 영향인가 싶었는데 입양부 모들이 주로 한국어를 배우러 온단다. 입양자녀의 정체성의 일부를 빼앗지 않는 것은 물론 그 언어로 대화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배치하는 감각은 많은 이야기를 건넨다. 성적 시민권도 그러하다. 우리에게 누군가의 존엄을 허락할 권리도, 허락의 범위를 정할 권리도 없다.

HIV감염인, 섹스를 말하다

소리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토론문] HIV감염인의 성관계 규제, 정말 필요한가

- 소리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운영지기)

HIV 무엇이 문제인가?

소수자의 성이 문란함, 더러운 것으로 차별 받는 상황을 넘어 소수자의 성은 낙인화 되어있다. 일반적인 규범이라고 매겨지는 가치안에 속해 있지 않는 다는 이유로 배척 받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성매개질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가?

본론으로 들어와서 질병취약그룹인 MSM이 1년 내 HIV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비율이 점차 늘고 있다.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이하, 연맹)의 남성동성애자 에이즈예방 사업부인 아이샵 자료에 따르면 서울, 부산 지부에서 실시된 신속검사를 통해 HIV를 초기에 진단받은 환자가 상당히 늘었다고 한다. '검사를 통해 몇 명이나 양성을 받았는가'만을 국가 사업의 성과지표로 활용한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 국가의 예방정책은 초기 HIV감염인을 검사하고 색출하는데 집중되어있을 뿐 그들의 가지게 되는 초반의 두려움이나 고통에 대해선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만큼 양성인 자들을 색출했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난 몰라."인 셈이다.

Table 1: Key selected evidence supporting U=U

Study	Study details	Results	Date	Reference
San Francisco cohort	Clinical results from small cohort of HIV positive women using triple ART during pregnancy.	Transmission from mother to baby was reduced to approaching zero.	1998	Beckerman K et al. [3]
DHHS guidelines	Expert opinion included in evidence-based guidelines.	Theoretical plausibility of reducing transmission risk was used as a factor for early ART.	1998	DHHS guidelines. [4]
Ugandan cohort (Rakai)	Prospective observational cohort in ~ 400 serodifferent couples.	Zero transmissions when viral load was less than 1500 copies/mL.	2000	Quinn TC et al. [5]
Spanish cohort	P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in 393 heterosexual discordant couples enrolled from 1991 to 2003 where the negative	Zero transmissions in couples where the HIV positive partner was on ART with undetectable viral load. Cautions emphasised good adherence and no	2005	Castella A et al. [6]

	partner became HIV positive.	STIs.		
Swiss Statement	Expert opinion and evidence review of >25 smaller studies looking at impact of ART on risk factors for HIV transmission.	Concluded that transmission would not occur undetectable with viral load.	2008	Vernazza P et al. [7]
HPTN 052	1763 serodifferent heterosexual couples randomised to immediate or deferred ART. Although condom use was high the impact of ART was highly significant.	All infections occurred in people with detectable viral load: n=17 in the deferred ART group and one early infection in the ART group before VL was undetectable. Follow-up reported out to four years.	2011	Cohen M et al. [8, 9]
PARTNER	Prospective observational European study in ~900 serodifferent couples who were not using condoms.	Final results reported zero transmissions after more than 58,000 times couples had sex without condoms when viral load was undetectable <200 copies/mL.	2014 (interim). 2016 (final)	Rodgers A et al. [10, 11]
Opposites Attract	P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in 358 serodifferent gay male couples in Australia, Thailand and Brazil.	Zero transmissions when viral load was undetectable <200 copies/mL.	2017	Grulich A et al. [12]
PARTNER2	Extension of PARTNER study to collect additional follow-up in gay male couples.	Study is fully recruited and still ongoing (2014–2017).	Expected 2018.	[13]

국제적인 HIV 예방의 흐름은 U=U캠페인 / Fast-Track: Ending the AIDS Epidemic by 2030¹과 같이 빠르게 본인의 HIV 감염사실을 알고 빠르게 병원으로 찾아가 ART요법을 시작하고 본인의 상태를 꾸준히 체크하며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이라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표에서 보여주듯 관련 연구는 이미 2000년도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결과 또한 U=U캠페인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사용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 과정 위해 우리나라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

1) End AIDS of 2030 캠페인은 UN산하 에이즈 전담 기관인 UNAIDS가 전세계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2030년까지 95%의 감염인이 본인의 HIV감염상태를 확인하고 95%가 치료를 시작하며 95%가 높은 약물 순응도 (약을 얼마나 잘, 꾸준히 복용하는지)를 유지하는 것으로 신규감염인을 20만 명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소수자의 대한 차별이 없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방을 막고 있는 동성애와 에이즈, 소수자에 대한 낙인

취약그룹에 대한 조기검진? 하고 있다. 약 치료의 접근성? 우리나라는 약값에 대해 10%의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지원해준다. 문제는 HIV감염인 및 취약그룹의 HIV정보 접근성 및 치료 접근성이다. 감염인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존중하며 그것이 자발적인 치료 및 본인의 건강 체크로 이어지게 되어야 하지만 혐오와 낙인이라는 장벽으로 인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HIV는 30여년 전과 다르게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 되었다. 과거 걸리면 치사율이 50%가 넘는 질병에서 현재는 약을 복용하면 에이즈가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70세까지 살 수 있다. 콘돔 외에도 PrEP, PEP 등 여러 예방책이 생겼으며 국내에도 최근 PrEP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HIV/AIDS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비슷한 감염경로를 가지고 있는 B형 간염과는 다르게 여전히 공포, 혹은 무관심에 머물러있다. 여러 매체에서 'HIV/AIDS는 문란한 섹스를 즐겨 하는 동성애가 원인이며 동성애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심지어 국회에서까지 이러한 말이 나온다는 것을 볼 때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사회의 시선 속에서 본인이 스스로 감염인 일지도 모르는 불안감과 더불어 차별과 낙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HIV감염인이 치료를 받지 않고는 스스로를 숨기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전문의료기관, 보건기구, 다른 나라 그 어느 곳도 항문섹스가 HIV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곳은 없다. 이걸 감기가 기관지가 있는 것이 원인이라는 것, 고환암이 고환이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고려대보건과학대학 김승섭 교수는 질병의 진짜 원인을 밝혀낼 때 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진짜 질병의 원인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봤을 때 동성애자의 섹스가 문제가 아닌 동성애자의 섹스가 문란하고 더러우며 숨어서 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낙인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충분히 사회가 개입하여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방관하고 있는 모습은 한국에서 HIV감염인을 보는 시선과 성소수자를 대하는 태도가 명백한 차별과 혐오조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전파매개행위금지 - 국가가 부여한 성적 낙인

국가가 조장하는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 성소수자에 대한 성적 낙인을 찍는 것을 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균형법 92조의 6뿐만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조 전파매개행위금지 조항²이 바로 그것이다.

2)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

얼핏 들어보면 HIV감염인으로부터 비 감염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럴싸한 조항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HIV감염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전염을 시켰을 때는 처벌을 받지 않는 허점투성이의 예방 정책이다.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상황인데도 말이다!

또한, 이 조항을 악용해 감염인을 처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감염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감정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파트너 관계에 있어 복수를 하기 위해 이법으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이다. 최근 온라인 게이커뮤니티 내 게시판에 이러한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하였다.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섹스를 하였고 나중에 알고 보니 HIV감염인 이었다는 것이다.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HIV감염인이 잘못이고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서 과연 HIV예방의 의무는 HIV감염인에게 법적으로 처벌조항을 들만큼 강제적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게 한다.

앞서 계속 강조했듯 오히려 HIV감염사실을 인지하고 꾸준한 약 복용을 통해 자신의 신체상태를 체크한 감염인은 감염확률이 없을뿐더러 전파매개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 그러한 감염인의 생활을 국가가 감시하고 규제한다는 것은 예로 든 상황과 같이 HIV 취약그룹 내의 갈등과 혐오를 조장할뿐더러 HIV에 대한 사회인식 악화를 부추기는 역할을 할 뿐이다.

국내에서 실시한 UNAIDS 낙인지표조사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감염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소문이 날까 두려워한다. 내적 낙인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 수치는 같은 조사를 실시한 90여여 개 나라 중에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이며 한국사회가 HIV감염인에게 부여하는 성적문란자라는 낙인을 감염인 당사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과 동시에 언제든지 가해자 혹은 범피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자리잡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HIV감염율은 점차 높아져가고 있다. 높아져가는 신규 감염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음지에 숨어있는 잠재 감염인이 편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회에 박힌 HIV감염인=성적문란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이를 확대시키고 근거로서 자리잡고 있는 19조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토론 4

청소년의 성적 권리와 인권

주리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세계인권선언 70년

불온한 세상을 향해
인권을 외치다

세계인권선언 70년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난민인권네트워크,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재단 사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평등과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

문의 hrcomm2017@gmail.com